



2021

한 권으로
통_通하는

기업지원
제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본 자료는 '21년 연초 제작된 아래의 자료집에서 일부 내용만
발췌한 것으로 사업의 세부 내용들은 변경될 수 있으니 기관별
홈페이지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고용노동부의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 정책 -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 홈페이지 : 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II.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 홈페이지 : www.mss.go.kr
- 홈페이지 : www.bizinfo.g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III. 2021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 홈페이지 : www.gg.go.kr
- 경기도콜센터 : 120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C H A P T E R

I

고용노동부

01. 고용서비스 지원(채용·상담·정보제공)

02. 지원금, 융자 등 지원

※ 전국고용센터 연락처



고용노동부

01

고용서비스 지원 (채용·상담· 정보제공)

0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6
02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8
03	고용허가제도	9
04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11
05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13
06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14
07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17
08	고용복지+센터	18
09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21

02

지원금, 융자 등 지원

01	청년내일채움공제	24
0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25
03	직장어린이집 지원	27
0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9
05	장애인 고용장려금	30
0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31
07	사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33
0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34
0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35
1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36
1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37
1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38
13	장애인 인턴제	39
14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40
15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41
16	일자리 안정자금	42
17	고용유지지원금	44
18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46
19	고용창출장려금(총괄)	48
20	일자리함께하기지원	50

21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52
22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54
23	고용촉진장려금	56
24	고용안정장려금(총괄)	58
2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61
26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63
27	정규직 전환 지원	66
2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68
29	사회적기업 육성	70
30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72
31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73
32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74
3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76
34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79
3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80
36	근로복지기금 지원	82
37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컨설팅 지원	83
38	우리사주제도	84
39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86
40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88
41	산재예방시설 용자	89
42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90
43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93
44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95
45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96
46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98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01

고용서비스 지원 (채용·상담·정보제공)

0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사업	6
02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8
03	고용허가제도	9
04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	11
05	재입국 특례 외국인노동자 취업 제도	13
06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14
07	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17
08	고용복지+센터	18
09	대체인력지원사업(산재근로자)	2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①, 신규채용 청년 6개월 이상 고용유지^②, 기업 전체 근로자수 증가^③

①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30인 미만) 1명 이상, (30~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채용

** 사업주(법인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제외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20년 신규 성립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②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규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은 채용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단위로 산정

③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 하여,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20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신청기한

-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 (신청기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 다만, '20.1월부터 6월까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21.3월까지 신청가능

■ 사업추진체계



■ 참여(신청) 방법

-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서 신청

* 관련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 사업 규모

- '21년 신규 9만명 지원
- 신규 9만명 지원은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을 충족한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자에 대해 우선 지원

*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대체인력뱅크(수도권 ☎ 1577-0221, 지방권 ☎ 1577-8505)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 민간 대체인력뱅크 홈페이지(<http://www.대체인력뱅크.com>)

지원대상

- 출산·육아·시간선택제·병가·교육·산재 등을 사유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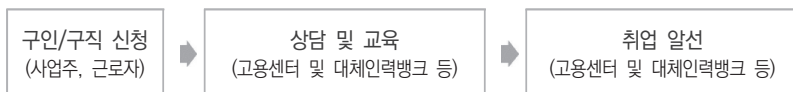
사업내용

- (지원대상) 대체인력 구인수요 사업장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서비스, 장기미채용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원인 분석 및 집중 알선 서비스 제공

종 류	지 원 내 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대체인력 인건비 80%(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지원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2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지원(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

- (구직자) 무료 직무교육 및 소양 교육 실시, 취업자를 위한 직장적응 지원 및 경력개발 상담 진행, 미취업자의 재교육 및 집중 알선과 필요 시 동행 면접 지원 등

사업추진체계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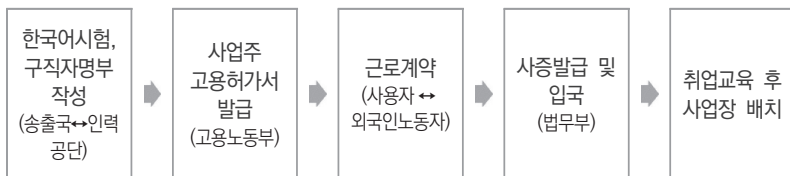
■ 사업목적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사업내용

일반 외국인노동자 도입: 고용허가제(E-9)

- 허용 기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 도입 대상: 인력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시험 합격자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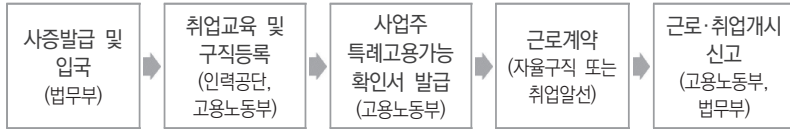


* 외국인노동자는 업종 간 이동 불가능, 사업장 간 이동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단, 휴업·폐업 등 사업주 귀책사유는 횟수 불포함)

동포 고용: 방문취업제(H-2)

- 허용 기업: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31개 업종), 중소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 도입 대상: 연고 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시험, 전산추첨)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 절차



* 동포는 입국 후 취업하며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로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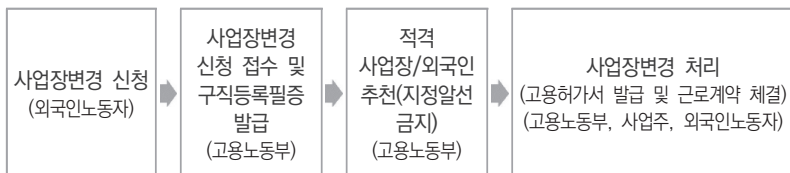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외국인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 허용
- 사업장변경 사유(다음 사유 해당 시만 사업장변경 허용)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해석상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사업장변경을 인정하여 외국인노동자를 보호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 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통령령에 “상해 등으로 해당 사업장 근무 곤란”을 규정)

- 사업장변경 횟수
 - 사업장 변경은 최초 3년의 취업기간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고용 1년 10개월의 취업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위 사업장변경 사유의 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횟수에 불포함

■ 사업추진체계



- (외국인노동자) 법상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
 -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장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법무부)를 받지 못한 경우 출국 조치
- *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사업주) 타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외국인노동자 고용절차와 동일하게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절차 진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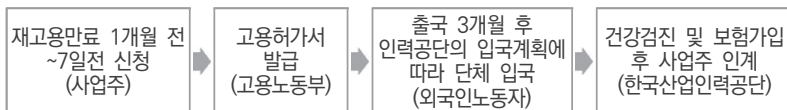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 사업내용

- (대상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 ① 취업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단, 횡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 ② 농축산업, 어업, 100인 미만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근무
 - * 냉장·냉동 창고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③ 재입국 후 근로를 시작하는 때부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주요혜택) 사용자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 면제,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 포함) 및 취업교육 의무가 면제되며, 3개월 후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 재입국 특례는 1회에 한하여 허용, 취업활동 기간은 다시 3년+1년10개월간 허용

■ 사업추진절차



■ 제도변경 사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17.11.30. 공포·시행)되어 비전문취업(E-9)이나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 미발급(고용허가서도 미발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 사업목적

-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정보화교육 등 지원
 - 외국인노동자의 국내생활 적응지원 및 원활한 취업활동 촉진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활용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
- 지원내용
 - (상담) 외국인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상담 및 갈등 중재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 (교육) 외국인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등 교육 실시
 - (문화행사)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을 마련
 - (정보제공) 생활·법률 및 직업 관련 정보제공

■ 사업추진체계



붙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황

● 거점센터 (9개소)

연번	센터명	운영기관	소재지	연락처
1	한국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특별시	02)6900- 8000
2	의정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의정부시	031)838- 9111
3	김해	인제대학교	경남 김해시	055)338- 2727
4	창원	사회복지법인통도사자비원	경남 창원시	055)253- 5270
5	인천	인천경총 및 한국노총 공동수급체	인천광역시	032)431- 4545
6	대구	대구경총 및 한국노동 공동수급체	대구광역시	053)654- 9700
7	천안	(재)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충남 천안시	041)411- 7000
8	광주	(재)한국능력개발원 및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동수급체	광주광역시	062)946-1199
9	양산	(사)희망웅상	경남 양산시	055)912-0255

● 소지역센터 (36개소)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	(사)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서울특별시	02-858-4115
2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인천광역시	032-874-3613
3	부천이주민센터	경기 부천시	032-654-0664
4	(사)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경기 김포시	031-982-7661
5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경기 오산시	031-372-9301
6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031-652-8855
7	(재)한국이주노동재단	경기 광주시	031-797-2688
8	천주교의정부교구 구리EXODUS	경기 구리시	031-566-1142
9	(사)함께하는 공동체	강원 원주시	070-7521-8097
10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충북 진천군	043-534-6009
11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남 아산시	041-541-9112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12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광역시	042-631-6242
13	(사)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포항지부	경북 포항시	054-291-0191
14	(사)외국인과 동행	경북 경주시	054-705-1828
15	꿈을 이루는 사람들	경북 구미시	054-458-0755
16	천주교마산교구 창원이주민센터	경남 창원시	055-275-8203
17	진주사랑의 집	경남 진주시	055-763-0707
18	(사)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부산광역시	051-902-2248
19	성요셉노동자의 집	전북 익산시	063-852-6949
20	(사)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광주광역시	062-943-8930
21	광주이주민지원센터	광주광역시	062-959-9335
22	로드월드비전	전남 순천시	061-724-1127
23	여수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	전남 여수시	061-644-3927
24	전남목포영암 외국인근로자문화지원센터	전남 영암군	061-462-8389
25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제주특별자치도	064-712-1141
26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수원시	031-223-0075
27	이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 이천시	031-631-2260
28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남양주시	031-594-5821
29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 파주시	031-949-9164
30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경기 시흥시	031-434-0411
31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063-243-0333
32	글로벌미션센터	경기 안산시	070-8600-8040
33	(사)울산외국인센터	울산광역시	052-291-3133
34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경기 안산시	031-495-2288
35	홍성이주민센터	충남 홍성군	070-4150-9722
36	아시아인권문화재단	광주광역시	062-224-7448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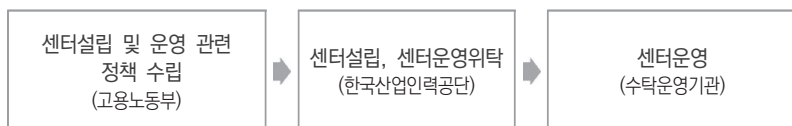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고용·채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베크,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
 - 외국인노동자의 사회적인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 기본 정보 안내

■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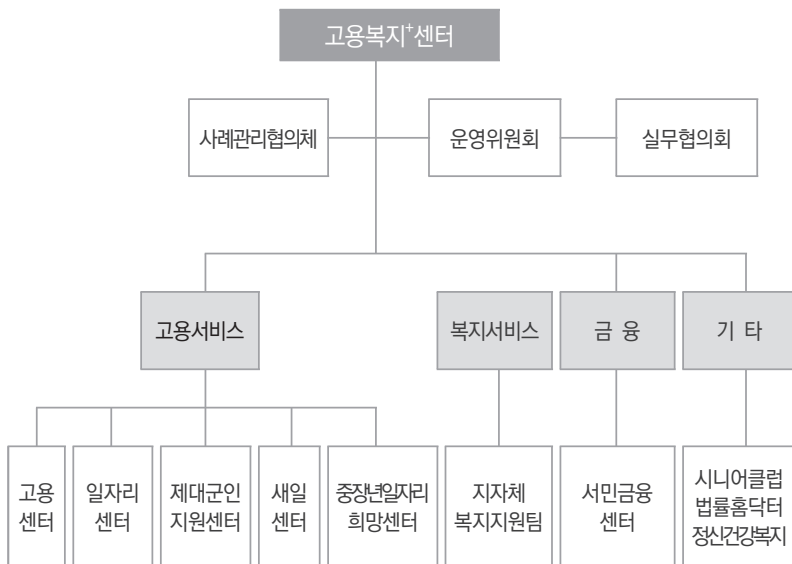


※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www.workplus.go.kr)

■ 사업개요

- (목적)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
- (업무 체계도) 각 기관의 조직·인사·예산 등의 독립성을 유지한 협의체로, 공간 등 하드웨어 통합을 바탕으로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연계·통합



■ 주요 제공 서비스

서비스 분류		참여기관	주요 서비스
고용 서비스	종합 서비스	고용센터	실직자 구직급여 및 재취업 지원,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정 사업 등 종합 고용 서비스 제공
	지역맞춤형 서비스	시·군·구 일자리센터	지역별 구직자 취업지원 및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별 특화 서비스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예정)자에게 재취업 및 창업, 생애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종합 전직서비스 제공
		제대군인 지원센터	중·장기 복무(5년 이상) 제대(예정) 군인에게 진로상담, 취·창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안착 지원
복지서비스		시·군·구 복지공무원	사회 복지 서비스 상담·신청·접수, 공공·민간 복지 자원 연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 등 상담·제공
서민금융지원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서민, 영세 상공인, 저신용·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층 저리자금,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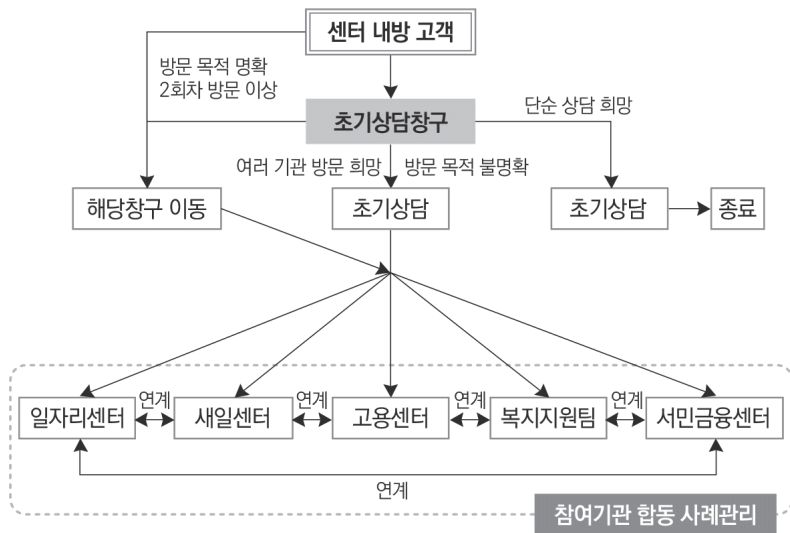
■ 운영 방향

- (통합 서비스) 한 공간에서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방문자의 편의 도모
- (원스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필요·적합한 고용·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 서비스 상담·신청·수령 가능
-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근로빈곤층의 취업장애요인 등을 조기 해소시킴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을 고용의 영역으로 끌어내어 탈수급 지원
 - 차상위계층 등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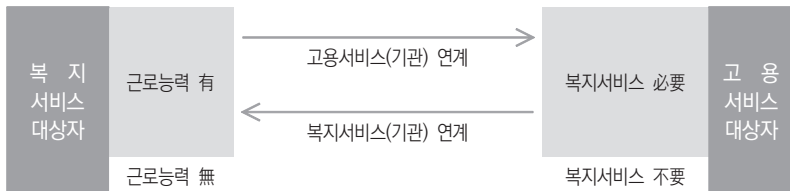
- (협업) 참여기관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해 인력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서비스 프로세스

- (프로세스)



- (서비스 연계)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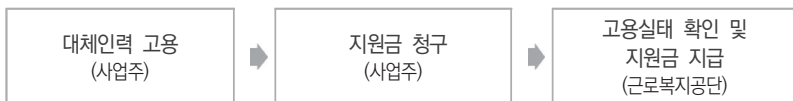
-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비 31.7억원('21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요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장해판정자 또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 지원내용: 대체인력 고용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전일까지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대체인력 임금의 50% 지원(월 최대 60만원)

■ 사업추진체계



02

지원금, 융자 등 지원

01	청년내일채움공제	24	24	고용안정장려금(총괄)	58
0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25	2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61
03	직장어린이집 지원	27	26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63
0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9	27	정규직 전환 지원	66
05	장애인 고용장려금	30	28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68
06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31	29	사회적기업 육성	70
07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33	30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72
08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34	31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73
09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	35	32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74
10	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36	3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76
11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37	34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79
12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지원	38	3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80
13	장애인 인턴제	39	36	근로복지기금 지원	82
14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40	37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컨설팅 지원	83
15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41	38	우리사주제도	84
16	일자리 안정자금	42	39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무료지원	86
17	고용유지지원금	44	40	안전인중 대상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88
18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46	41	산재예방시설 융자	89
19	고용창출장려금(총괄)	48	42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90
20	일자리함께하기지원	50	43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93
21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52	44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95
22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54	45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96
23	고용촉진장려금	56	46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大賞) 선정 지원	98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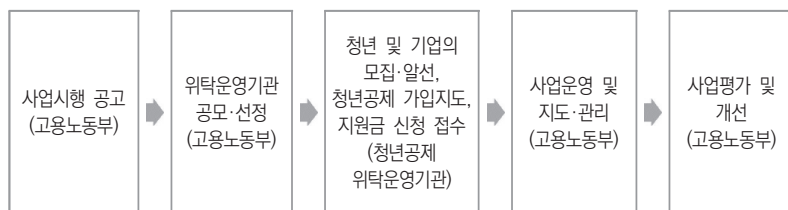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 5인 미만: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 허용
 -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지원내용)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만기금 1,200만원(청년 300 + 기업 300<정부지원> + 정부 600)
 - * 청년은 매월 12.5만원 납입, 기업은 정부 지원을 통해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분할적립

■ 사업추진체계



■ 참여(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신청 → 승인 및 선발(운영기관) → 청약신청(www.sbcplan.or.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목적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 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table><tr><th>구 분</th><th>지원대상</th><th>1개월 단위</th></tr><tr><td rowspan="2">육아휴직</td><td>우선지원 대상</td><td>30만원</td></tr><tr><td>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td><td>10만원</td></tr><tr><td rowspan="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td><td>우선지원 대상</td><td>30만원</td></tr><tr><td>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td><td>10만원</td></tr><tr><td>대규모</td><td>10만원</td></tr></table>	구 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10만원	대규모	10만원
		구 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10만원																
대규모	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부여 하고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❷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1개월 단위</th><th>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th></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 대상</td><td>80만원</td><td>120만원</td></tr> <tr> <td>대규모</td><td>30만원</td><td>30만원</td></tr> </tbody> </table> 	구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	80만원	12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구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	80만원	12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03 직장어린이집 지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2670-0411~25, 대전 ☎ 042-870-9111-6, 부산 ☎ 051-320-8182~7)

■ 사업목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 예방

■ 사업내용

-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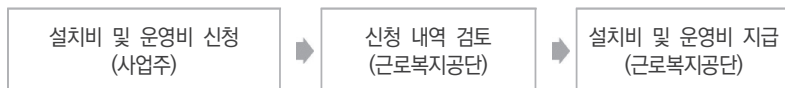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및 한도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지원	대규모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공동			6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공동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40%)
				우선지원대상기업2~4개소인사업주 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5개소 이상인사업주 단체		20억원	
				(공동)	시설개보수비	1억원	
		대규모기업			교재교구비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80%)
		우선지원대상기업				7천만원	
운영비	인건비지원	대규모기업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운영비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520만원		

-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①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영세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②직장보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에게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설치공사 자문, 인력채용 지원, 보육교사 교육 지원, 특수보육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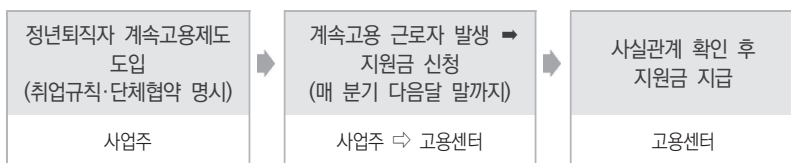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 촉진

■ 사업내용

-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20% 이상의 기업(100인 미만은 제외) 등은 제외
- 근로자요건: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근로자
 - * 단,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자, 월임금 686만원 초과자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2년간 지원 (피보험자의 20% 한도)

■ 지원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구 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에게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지급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지원내용)
 -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실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 지원(10억원 한도)
 - 중소기업과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교육청이 공동으로 표준사업장을 설립시 투자한 금액의 75% 무상지원(20억원 한도)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자금 지원 (1회, 최대 5천만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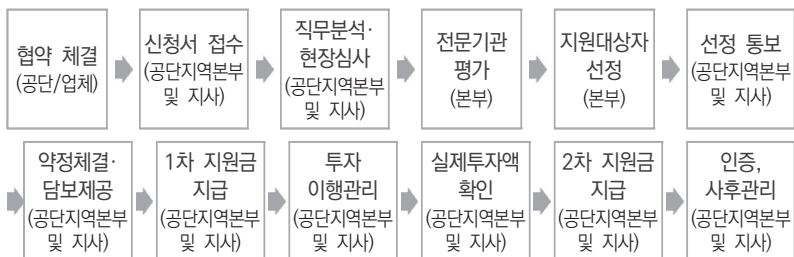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대기업에 새로운 장애인 고용모델을 제시하여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장애인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 제공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및 모회사의 고용노동부담금 감면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에서 설립한 자회사(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
- 지원내용
 -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원을 모회사의 장애인 인원으로 산입하여 부담금 감면
 - 무상지원금을 10억원 내에서 지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 혜택,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모회사가 자회사 지원 가능 특례 신설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도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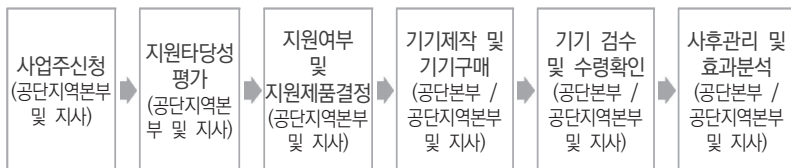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장애인근로자
- 지원내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직업생활용 작업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근로자) 출퇴근 자동차 개조 및 운전보조공학기기

구 분		지 원 한 도
장애인 고용사업주 (작업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000만원(중증 1,500만원) 한도
	무상 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00만원) 한도
장애인 근로자·사업주 (출퇴근 차량개조)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당 1,500만원 한도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 등에 대해 지원)
기기개발		장애인 적합기기 공모 제안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개발

* 고용유지조건 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이상의 기기(장애인 퇴사시 기기 반납을 조건으로 하며 반납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무상지원: 지원기준가액 100만원 미만의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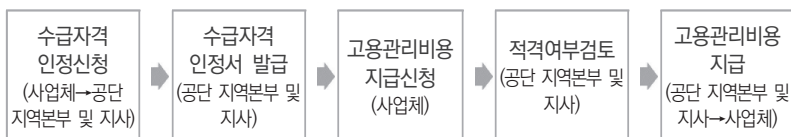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관리비용 부담완화와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력 제고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배치하여 작업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 사업주가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90일 이전에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작업지도원을 선임하여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 실시(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만원(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 지원을 통해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서류대독, 물품이동,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심리적응 등)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지원
- 지원내용
 - 지원단가: 시간당 8,720원
(수어통역,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0,464원)
 - 본인 자부담: 시간당 300원

■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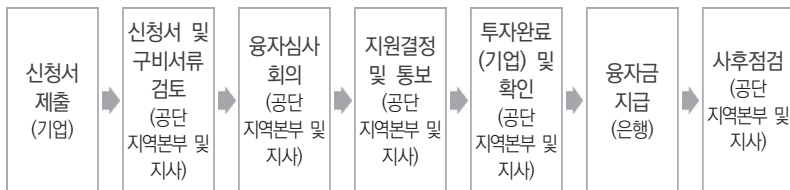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융자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 1인당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한도, 대출금리 1%, 8년 상환조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융자
 - * 고용의무 장애인의 25%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최소 1인 이상)
- 융자금 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구입·수리비용
 -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생산라인 조정비용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따른 고용비용부담 경감과 근로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직장 적응력 향상 및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한도 지원, 사업주당 3억원 한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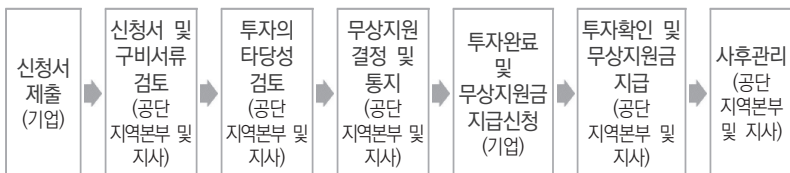
–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따른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무상지원 대상시설	지원비율
통근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4천만원 한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계·설치·구입·수리비용	소요비용이 * 1천만원 이하시: 전액지원 * 1천만원 초과시: 1천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2/3(만원이하 절사)지원
재택근무에 필요한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비	사업주당 3천만원 한도(장애인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 기존 지원되었던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사업으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내에서 신청 가능)

■ 사업추진체계



13 장애인 인턴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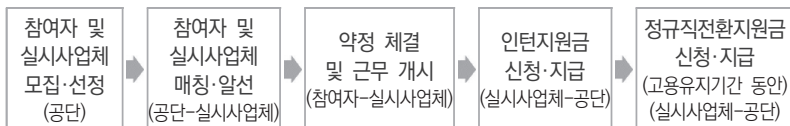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특정유형*의 중증장애인 또는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을 채용한 사업체

*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자체 총 10개 장애유형

- (지원요건)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및 가입 예정 1인 사업장
- (지원내용) 인턴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원금 지급
 - 인턴 채용 사업체에 인턴기간 동안 월 임금의 80% 지원(최대한도 월80만원, 최대 6개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유지 기간 동안추가 지원(최대 한도 65만원, 최대 6개월)

■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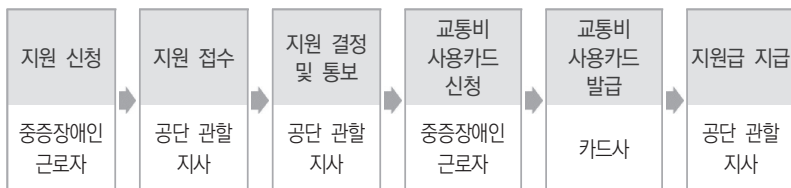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
 - * (최저임금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교통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버스,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

■ 사업추진체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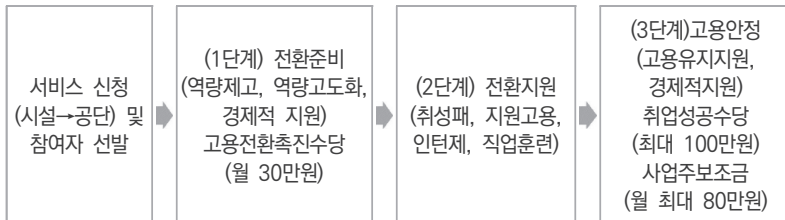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제고(기초역량강화, 사례관리 등), 역량고도화(취업코칭, 훈련센터 및 우수사업장 탐방 등),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 수당(3개월간 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제공

■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 사업목적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 원칙

(예외) ① 공동주택 경비·청소원(全 규모)
②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까지)
③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까지)
④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 (지원요건)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 기존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 유지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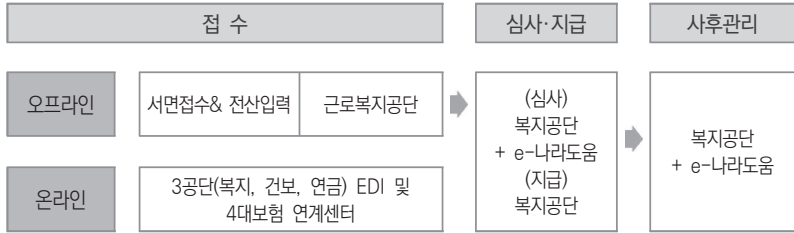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나 근로자도 지원**

**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여가의 노동자 등

- (지원금액) 지원요건 해당 노동자 1인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5만원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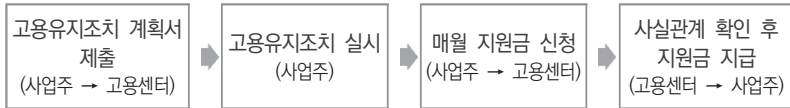
-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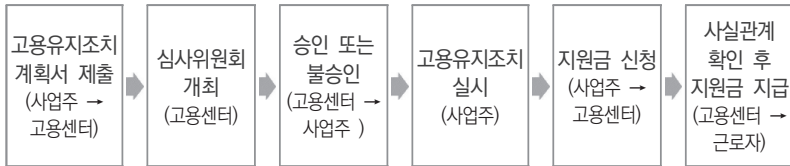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
- 지원내용
 -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 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9/10(대규모 기업 2/3~3/4)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 사업추진체계

-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



* 무급휴업의 경우 노동위원회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무급휴직은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이상이 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의 노사가 고용유지에 합의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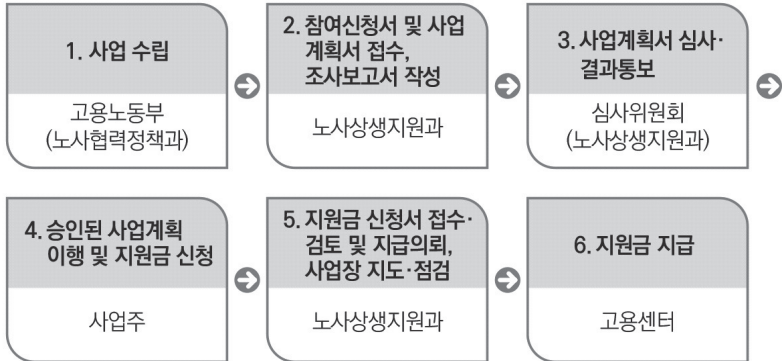
■ 지원요건

-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재고량 증가,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
- ②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 '20.1.1~'21.6.30에 노사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
 - *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 준수
- ③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는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전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
- ④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 노사합의에 의한 휴업·휴직, 노동시간 단축, 임금의 삭감·반납 등 고용유지조치 실시 결과로 임금이 감소
- ⑤ (지원금 용도) 사업주는 지원금 전액을 승인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만 사용

■ 지원내용

-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최대 6개월)
 -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다음 날부터 지원
- (지원금액) 임금감소분의 50% 범위 내(1인당 月 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원금 신청)
- (지원범위)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지원(공모사업)

■ 사업추진체계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지원금 신청서 접수는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도 수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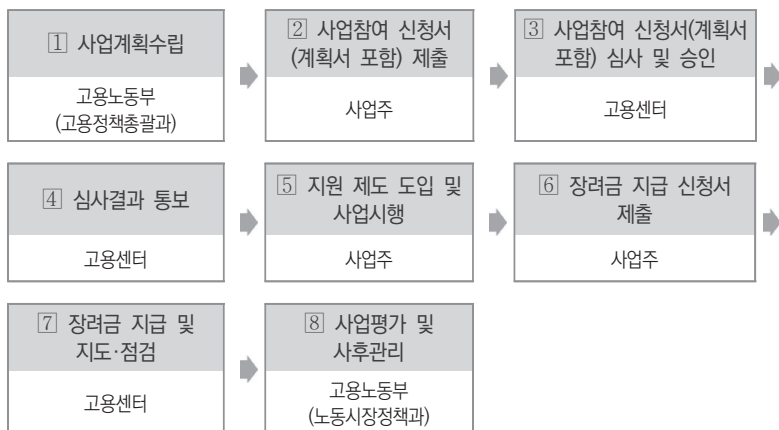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사업내용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① 교대제 도입 확대, ② 주근로시간 단축제 ③ 실근로시간단축제, ④ 일자리순환제 도입 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 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인건비]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100만원 ■ [임금감소액보전]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원~월40만원 지원 * 증가근로자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노선버스업종의 경우 1인당 20명까지)									
국내복귀 기업 지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 [인건비] 증가 근로자수 1인당, 총 2년지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th>3개월 단위</th><th>연간총액</th></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td>180만원</td><td>720만원</td></tr> <tr> <td>중견</td><td>90만원</td><td>360만원</td></tr> </tbody> </table>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180만원	720만원									
중견	90만원	36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①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②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여 ③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④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th>3개월 단위</th><th>연간총액</th></tr> </thead> <tbody> <tr> <td>우선지원</td><td>240만원</td><td>960만원</td></tr> <tr> <td>중견</td><td>120만원</td><td>480만원</td></tr> </tbody> </table>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	120만원	480만원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240만원	960만원									
중견	120만원	480만원									

지원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의 청년특례 유형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거주자 등은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수 1인당 <table><tr><th>구 분</th><th>6개월 단위</th><th>연간총액</th></tr><tr><td>우선지원</td><td>360만원</td><td>720만원</td></tr><tr><td>대규모</td><td>180만원</td><td>360만원</td></tr></table>	구 분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구 분		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360만원	720만원									
대규모	180만원	3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최저임금액 미만 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										

■ 사업추진체계



※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경우 ②~④ 생략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지원

* 주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순환제 등

지원요건

- ①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 주 노동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18년 7월)
- ②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③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노동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 ④ 일자리 순환제: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동자가 증가한 경우

지원내용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신규채용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①		조기단축기업②	노선버스업종③
	1명 당, 1개월, 지원금액, 지원기간			
500명 초과	60만원, 1년		법정시행일까지 60만원/ 이후 40만원, 2년	60만원, 1년
300~500명	제조업	80만원, 2년		
	기타업종	60만원,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80만원, 2년	법정시행일까지 100만원 /이후 80만원 (제조업 및 특례제외 업종은 최소 2년, 기타 업종은 최소 1년)	80만원, 1년
	기타업종	80만원, 1년		

- (임금감소분 보전)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보전할 경우 월 최대 40만원, 1~2년 지원
 -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의 경우 20명까지)

근로자 수	법정근로시간 적용기업①		조기단축기업②	노선버스업종③
	지원기간			
500명 초과	-			2년
300~500명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최소 2년	
	기타업종	1년		
300명 미만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2년	법정시행일이 속한 달까지 지원,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최소 2년, 기타업종은 최소 1년	
	기타업종	1년		

- ① 개정 근로기준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 ② 조기단축기업이란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
- ③ 노선버스업종이 조기단축할 경우 조기단축기업의 예에 따라 지원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 제 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 조 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 사업주 보전임금의 80% 한도
- * 임금보전은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 기업
 -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사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총 2년간 지원

유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대상 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 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 지급 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사업계획수립
사업 참여신청서(사업 계획서) 제출
심사 및 승인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
장려금 신청서 제출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신중년의 전문성·경험·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의 재취업 촉진 도모
 -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
 -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요건

- ① 신청서를 제출·승인받은 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 * 단, 신청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승인 후 소급 지원 가능
- ②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③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
- ④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⑤ 무기계약 체결*

* 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 지원(중견기업은 월 40만원)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 기업	120만원	48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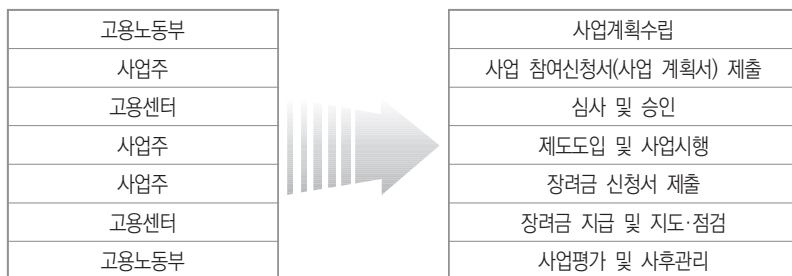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목적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II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등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 마다 지급.(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구분	1년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 기업	720만원	360만원
대규모 기업	360만원	180만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절사)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지원대상 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법무부)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고용노동부)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고용노동부)
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 (고용노동부)
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 (고용노동부)
16	40대 일자리 지원프로그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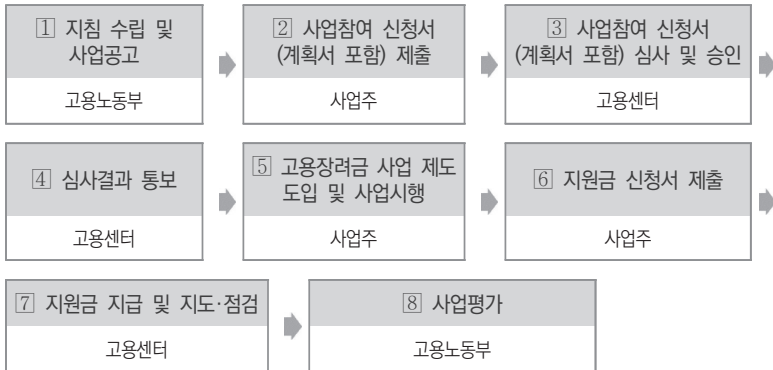
사업내용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div><div>❶ 소정근로시간 단축 필요가 있는 근로자</div><div>❷ 2주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div><div>❸ 4대보험 가입</div><div>❹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주30시간 이하)</div><div>❺ 연장근로 제한</div></div>	<div><div>■ [임금감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4~40만원</div><table><tr><th>구 분</th><th>1개월 단위</th><th>총 지원액</th></tr><tr><td>모든 기업</td><td>최대 40만원</td><td>480만원</td></tr></table><div>■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원 (1개월 단위)</div></div>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구 분	1개월 단위	총 지원액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 지원	<div><div>■ 위 요건을 만족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div></div>	<div><div>■ [대체인력인건비]</div><table><tr><th>구분</th><th>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th><th>1개월 지급액</th></tr><tr><td>우선지원 대상</td><td>60만원</td><td>60만원</td></tr><tr><td>대규모</td><td>30만원</td><td>30만원</td></tr></table></div>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6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구분	인수인계기간 중 1개월 지급액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	60만원	6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div>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가</div> <div><div>❶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 또는 확대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게 하거나,</div><div>❷ 재택·원격근무 도입·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div></div>	<div><div>■ [간접노무비] 주 3회 활용시 1주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1주 5만원을 1년간 지원</div><div>■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 최대 2천만원 지원</div></div>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정규직 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② 정규직 전환 후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③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증가 보전금] 전환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출산 육아 기 고용안정 장려금	육아 휴직 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p>※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노무비] <table><tr><th>구 분</th><th>지원대상</th><th>1개월 단위</th></tr><tr><td rowspan="2">육아휴직</td><td>우선지원 대상</td><td>30만원</td></tr><tr><td>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td><td>10만원</td></tr><tr><td rowspan="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td><td>우선지원 대상</td><td>30만원</td></tr><tr><td>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td><td>10만원</td></tr><tr><td>대규모</td><td>10만원</td></tr></table> <p>※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1호~3호 인센티브)</p>	구 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10만원	대규모	10만원
	구 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10만원																
	대규모	10만원																
	대체 인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②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인력인건비] 해당 근로자 1인당 <table><tr><th>구분</th><th>1개월 단위</th><th>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th></tr><tr><td>우선지원 대상</td><td>80만원</td><td>120만원</td></tr><tr><td>대규모</td><td>30만원</td><td>30만원</td></tr></table>	구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	80만원	12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구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	80만원	12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수준
	<p>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p> <p>※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p> <p>※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p>	

■ 사업추진체계



※ 출산육아기 근로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②~④ 과정 생략

※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의 경우, 장려금 지급 신청 제출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단축 기간만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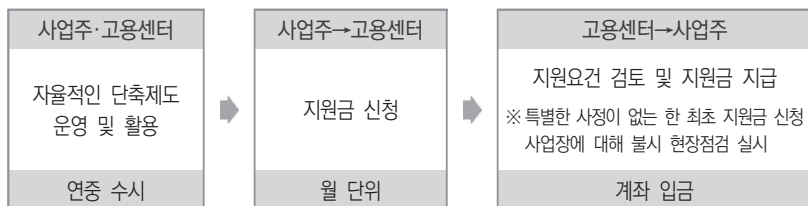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전환 지원	<p>자율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 ③ 단축기간 최소 2주 이상,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 근로시간 단축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⑥ 초과 근로일수와 근태기록 누락일수를 합산하여 월 5일 이하</p> <p>* 초과근로일: 출퇴근 기록상 출근(퇴근) 시각에서 15분 범위를 초과한 날로 간주</p> </div> <p>※ (근로자 요건) 근로시간 단축 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 (사업주 통한 근로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15~25시간: 월 최대 40만원 - 주25~35시간: 월 최대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월 최대 40만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한해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인당 월 20만원 (정액)을 최대 1년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70명 이내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임금의 80%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추가 지원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단, 대체 인력은 외국인도 가능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

■ 사업목적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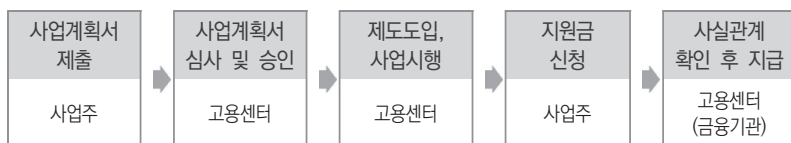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
(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및 재택근무부문 50%

■ 사업추진체계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유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 쉼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생활 지원 등)

*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참여혜택)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고용장려금 사업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휴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참여방법)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가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사업목적

-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임금증가 보전금·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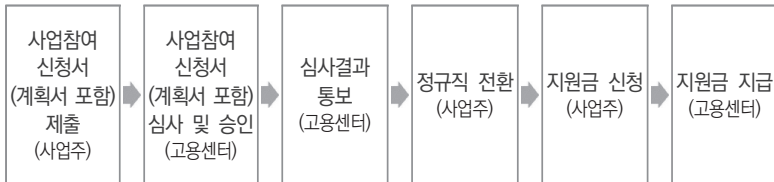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해당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함)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
- 지원 요건
 - ①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②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③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복리후생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을 것
 - ④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닐 것
 - 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닐 것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임금증가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증가 보전금)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지원
- (인원 한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사업 최초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소수점 이하 버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최대 5인)를 한도로 하며, 해당 사업장에 대한 누적 지원 인원은 이 한도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만, 직전 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중에 최초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달로부터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달까지의 월 평균 기간제 근로자 수의 120%를 한도로 함. 지원금 신청년도에 설립된 신규사업장의 경우는 회사설립일로부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제인 평균 피보험자수의 120%를 한도로 함
 - ※ 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직접 고용한 경우는 지원인원 한도 없음

■ 사업추진체계



28 I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사업목적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육아휴직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육아휴직등 부여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table><tr><th>구 분</th><th>지원대상</th><th>1개월 단위</th></tr><tr><td rowspan="2">육아휴직</td><td>우선지원 대상</td><td>30만원</td></tr><tr><td>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td><td>10만원</td></tr><tr><td rowspan="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td><td>우선지원 대상</td><td>30만원</td></tr><tr><td>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td><td>10만원</td></tr><tr><td>대규모</td><td>10만원</td></tr></table>	구 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10만원	대규모	10만원
		구 분	지원대상	1개월 단위													
		육아휴직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1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 대상	30만원													
우선지원 대상 인센티브* 적용	10만원																
대규모	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최초~세번째까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경우 각각 월 10만원 추가지원																	

구 분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내용								
대체인력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o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출산전후(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❷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table> <tr> <th>구분</th><th>1개월 단위</th><th>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th></tr> <tr> <td>우선지원 대상</td><td>80만원</td><td>120만원</td></tr> <tr> <td>대규모</td><td>30만원</td><td>30만원</td></tr> </table>	구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	80만원	120만원	대규모	30만원
구분	1개월 단위	인수인계기간 1개월 단위								
우선지원 대상	80만원	120만원								
대규모	30만원	30만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7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사업목적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 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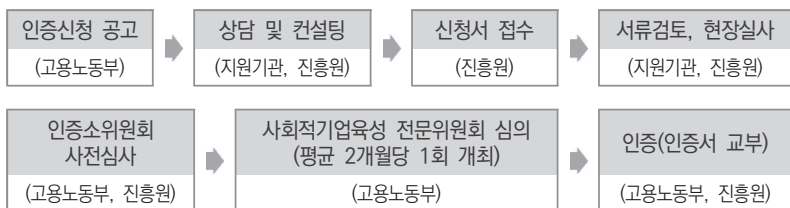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인증요건 및 절차
 - (요건) ▲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 유급근로자 고용 ▲ 사회적목적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정관 규정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동일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해당사항 없음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동일

-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은 지자체 및 각 부처에서 진행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종합계획 수립 등)	고용노동부 (종합계획 수립 등)
광역자치단체 (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각 부처 (지정 공모 및 심사·지정)
기초자치단체 (신청접수, 관리)	지원기관 (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고용노동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고용노동부 (심사 및 합동점검 등)

•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21년 지원단가 1인당 월 2,006,070원 × 지원율*) * 예비 50% / 인증 40% + 20% 추가(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1인당 월 183,590원, 4년 한도)
사업개발비	브랜드·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판로개척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금융지원	사회적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등 활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세제지원	①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2천만원) ②취득세·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③내국 법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처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044-202-7407,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사업목적

-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고용위기지역: '21.1월 현재 7개 지역

(지정기간: '18.4.5~'21.12.31) ①군산시, ②울산광역시 동구, ③거제시, ④통영시, ⑤경남 고성군, ⑥창원시 진해구

(지정기간: '18.5.4~'21.12.31) ⑦목포시·영암군(묶어서 하나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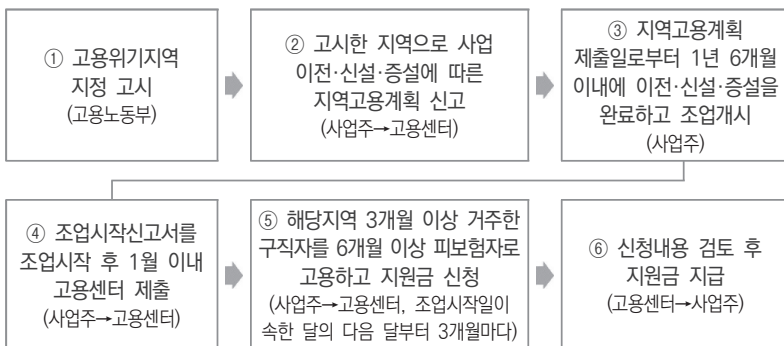
사업내용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

* 이전·신설·증설은 원칙적으로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된 1,000만원 이상의 물적 투자가 있을 때에 인정

**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정함 ('21년의 경우 1일 상한액은 6.6만원)

사업추진체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두루누리사회보험 홈페이지(www.insurancesupport.or.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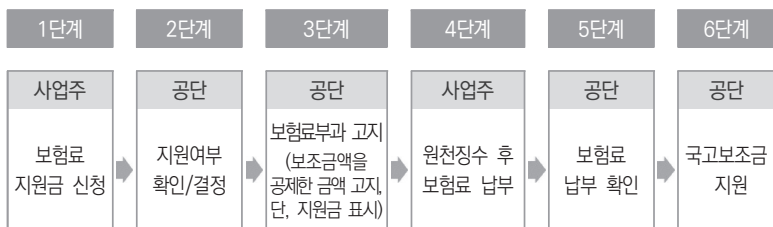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소규모사업 저임금 노동자·예술인·특고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 * 특고 고용보험료 지원은 하위법령 개정 이후 구체적인 지원내용 결정('21. 7. 1. 시행예정)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노동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로하는 월보수 220만원 미만의 노동자·예술인 및 그 사업주
 - *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상 보유한 노동자·예술인은 보험료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노동자) 사회보험 신규가입 노동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예술인) 예술인 및 계약당사자(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보험료 지원 절차





노사발전재단(☎ 02-6021-1222, 1167),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개요

- 혁신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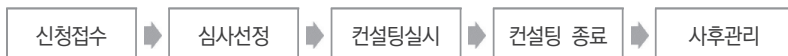
❖ 일터혁신이란?

⇒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제고하는 지속적·조직적인 혁신활동

사업내용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지원내용) 사업장 희망 분야* 컨설팅 무료지원(10주~21주)
 - * (컨설팅 분야) ①노사파트너십 ②작업조직·환경개선 ③고용문화개선 ④임금체계개선 ⑤평가체계개선 ⑥장시간근로개선 ⑦평생학습체계 구축 ⑧장년고용안정 ⑨안전한 일터 조성('21년 신설)
 - ※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컨설팅 비용 일부(30%)를 부담
- (신청·선정)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신청사이트(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www.nosa.or.kr)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사업장 선정('21년 2월~6월 중 상시접수·수시선정)
 - * '사업장 여건', '도입 의지', '수행 효과성' 등에 대해 종합심사

컨설팅 진행 절차



■ 컨설팅 수행 내용

- (진단)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사업장 개선사항 확인
- (디자인팀 구성) 노사가 참여하는 디자인팀을 구성, 해결방안 마련
- (사업장 방문) 전문컨설턴트가 주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정부 타 지원사업 연계 지원, 종료 후 3개월간 이행 관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ldlife.kr)

■ 사업목적

-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거나 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생활 균형의 고용문화 확산

■ 사업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단,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30명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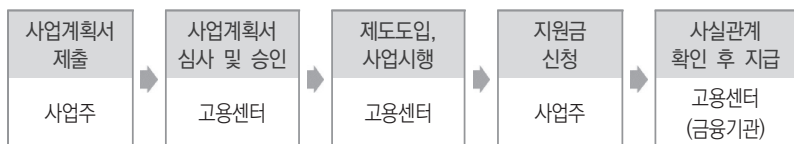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최대 3년 약정사용료 지원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비용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0%

(근무혁신 인프라) SS등급 80%, S등급 60%, A등급 및 재택근무부문 50%

■ 사업추진체계



[참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가는 캠페인

- (참여대상) 일·생활 균형 핵심 3분야·기본과제를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핵심 3분야	실천 내용
오래 일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시퇴근하기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실천하기 등) ■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카톡 자제, 퇴근 직전 업무지시 자제 등) ■ 업무집중도 향상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자제, 집중근무시간 활성화 등)
똑똑하게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똑똑한 회의·보고 (꼭 필요한 회의만 효율적으로, 회의일정·안건 사전 공유, 메모·구두·영상보고 활용 등) ■ 명확한 업무지시 (무엇을·왜·언제까지·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구체적 방향 제시 등) ■ 유연한 근무 (업무 질과 성과로 평가, 시차출퇴근, 원격·재택근무, 시간선택제 등)
제대로 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용 묻지 않기,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 등) ■ 건전한 회식문화 (회식에 대한 인식 바꾸기, 회식일정 사전공유, 문화회식 활성화 등) ■ 설 권리 지켜주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로운 사용 분위기 조성, 여가 생활 지원 등)

* 기본과제: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 (참여혜택) 캠페인 참여기업은 홈페이지 등재, 고용장려금 사업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속 근로자는 제후를 통한 할인혜택 제공
- (참여방법)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할인혜택, 참여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가능

34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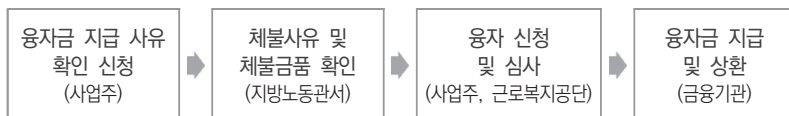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사업주)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300명 이하 가동 사업장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체불근로자 및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근로자
- 지원내용(상한):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사업장 1개소당 1억원 상한
- 융자상환: 1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담보) 2.2%, (신용보증) 3.7%

■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사업개요

-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 * '83년 근로의욕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 설치가 권장됨 → 1991.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정 → 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 * 「근로복지기본법」개정('15.7.20.)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 * (공동근로복지기금) 둘 이상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는 노사 협의에 의한 자율사항임
- (기금조성) 기업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함, 사업주가 임의로 부동산 등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기금운영)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
- (사업재원) ▲기금의 수익금,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및 파견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사용, 중소기업의 경우는 80%) 한도,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이고 일정금액(원청 노동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및 파견노동자에게 사용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의 20%
- (기금의 용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창립기념일·명절 선물비용,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비용, 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노동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 *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의 부담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세제혜택

- 사업주: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 노동자: 기금에서 지급한 금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36 근로복지기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052-704-730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 사업목적

- 대기업-중소기업(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내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증진 도모

■ 지원 대상 및 수준

구 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사내근로복지 기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업체 노동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비용의 50% (매년 2억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액의 50% (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 기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액의 100%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사내→공동기금지원으로 내역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액의 100% (매년 최대 10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액의 100%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사업추진체계



※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근로복지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사업목적

- 기업복지 컨설팅 제공으로 기업규모 간 복지격차 완화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 (사업대상)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가입한 기업회원
- (지원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쉽게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컨설팅 무상제공

컨설팅유형		
기본	심화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심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념과 필요성 설명 · 1기업 당 1회(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컨설팅 연계 또는 기업이 별도 신청 시 제도에 대하여 사업장 진단(설명, 인터뷰), 구체적인 도입 방식과 제도설계, 운영방법 등 종합 컨설팅 · 1기업 당 1회(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을 통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기금 법인 설립까지 필요한 모든 절차 지원 · 1기금법인 설립시 1회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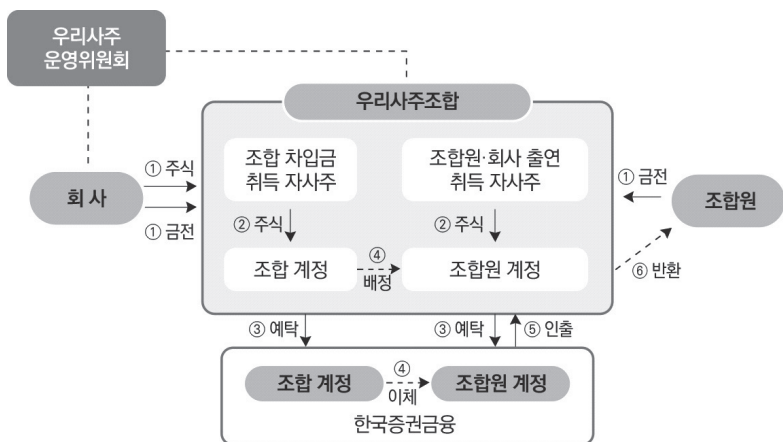
컨설팅	회원가입	컨설팅 신청	컨설턴트 배정	컨설팅 진행	만족도 평가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회원가입(기업)	① 컨설팅 유형 ② 컨설팅 분야 선택	컨설턴트가 연락 컨설팅 일정 협의	기본·심화·운영 컨설팅 실시 (회당 2시간)	컨설팅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지원센터(☎ 02-6908-8401)

사업개요

- 노동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재산 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기업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

운영체제



취 득 방 법
· 조합원출연
· 회사·대주주 등의 무상출연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배 정 방 법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우리사주 취득 즉시 조합원에게 배정 후 출연자와 협의기간(4~8년)동안 의무예탁(의결권, 배당금 개인귀속)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 계정에 배정 후 1년간 의무예탁

■ 세제혜택

- 사업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금 전액을 손비인정
- 조합원: 출연금 연간 400만원(단, 벤처기업 등의 조합원 1,500만원)을 소득공제
→ 인출시점 근로소득으로 과세
 - 과세이연: 과세인출주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의무예탁기간 종료 후)
 - 보유기간 2~4년 미만 보유: 50% 비과세
 - 4년 이상 보유: 75% 비과세
 - 6년 이상 보유: 100% 비과세(중소기업만 해당)
 -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가액 1,800만원 한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 사업목적

- 기업의 EAP 도입을 촉진하고, 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등 업무저해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 및 소속 노동자
- (지원내용) 온·오프라인 전문가 상담 무상제공

상담분야

직장	개인	가족
① 직무스트레스	⑦ 성격진단	⑬ 부부갈등
② 조직 내 소통능력	⑧ 스트레스관리	⑭ 자녀양육
③ 업무역량 강화	⑨ 정서문제	⑮ 기타
④ 불만고객응대	⑩ 건강관리	
⑤ 일가정양립	⑪ 대인관계	
⑥ 직장 내 괴롭힘	⑫ 자살	

상담방법 및 이용 가능횟수

구분			이용횟수	제공 시간	비고
개인	온라인	게시판	무제한	24시간 내 답변	근로복지넷
		카카오톡	1인당 7회 (고위험군 연장승인 후 추가 7회)	50분 이상	
		전화상담			
		영상상담			
	오프라인	근로자		장소 상호협의	
기업	오프라인	사내	100인 미만: 5회 100~200인 미만: 10회 200~300인 미만: 15회	1인당 50분 이상	사업장 방문
		집단	3회	회당 60~90분	사업장 방문

■ 사업추진절차

회원가입 > 상담신청 > 상담일정 협의 > 상담진행 > 만족도 평가					
EAP	근로복지넷 www.worldream.net 회원가입 (개인·기업)				
	① 상담유형 ② 상담분야 ③ 상담사 선택	상담사가 전화 연락 상담일정 협의	온·온프라인 상담 실시 (회당 50분)	상담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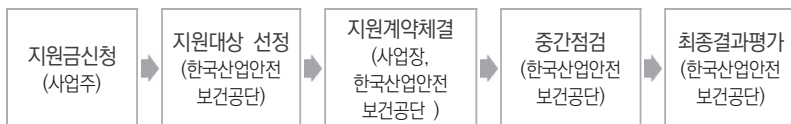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등록업체의 제품 품질 수준과 성능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자금 또는 시험장비 구매자금을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취득 또는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한 방호장치·보호구를 제조하는 국내 사업장
 - 최근 2년간 인증취소 또는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금지 또는 제품 수거·파기 사례가 없는 사업장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 적합 판정 사업장
- (지원내용)
 -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보건 성능 향상을 위한 제품설계·연구개발 등의 비용
 -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60% 한도)지원
 - 제품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
 - ※ 사업장당 5,000만원(소요비용의 50% 한도)지원

■ 사업추진체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544-308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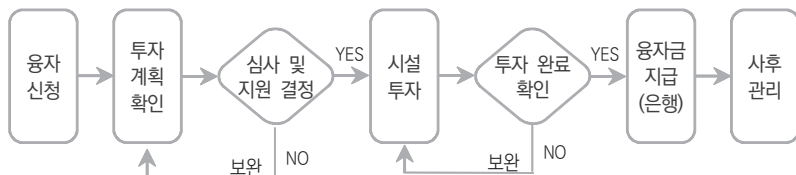
■ 사업목적

-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재해예방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여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개선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 지원 조건: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 내용
 - 융자 신청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의 타당성 확인, 투자 설비 또는 공정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 융자금 지급 대상자(우선순위)는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
 - 융자 지원 이후 융자 설비 가동 상태 확인 및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사후 기술지도 실시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만족센터(☎ 1544-308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홈페이지(clean.kosha.or.kr)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사업목적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 및 건설현장(50억원 미만) 등의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① 클린 인정(전체개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노동부·공단·민간대행기관의 감독·점검·기술지원 사업장(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50~70% 지원)
 - * 지원조건: 현장방문 컨설팅 시 제기된 작업장의 사망사고 등 유해·위험요인 및 관리적 사항 (안전보건교육, 안전검사 등) 전부개선
 - * 지원품목: 위험기계 방호장치, 작업공정개선설비, 환기설비, 직업병 예방설비 등
 - ② 추락방지 안전시설(일부개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50~65% 지원, 건설업에 한함)
 - * 지원품목: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임차 및 구입비용)
 - ③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일부개선):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 지원품목: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삭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 방호장치, 화재·폭발, 끼임, 추락 등 사망사고 예방품목 등

- ④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을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주체(산업단지 당 10억원 한도, 공단 판단금액의 50%)

* 지원품목: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자료실 및 상담실, 교육시설, 체력증진시설, 목욕·샤워·세탁시설 등)

해당 사업장의 시설개선 총 비용 중 사업주 부담금 50%, 보조금 50%(매칭펀드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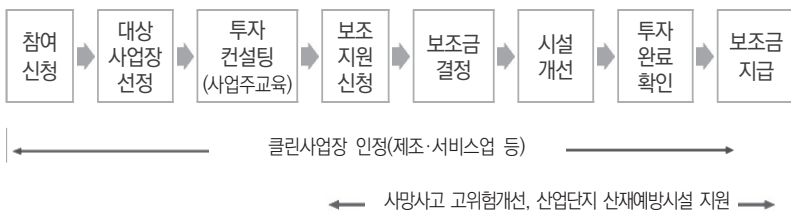
· 단, 제조·서비스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총 비용 중 보조금 70% 지원,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을 대상으로 총 비용 중 보조금 50~65% 지원, 일부품목에 대해 정액지원

• 지원내용

- 점검·감독·기술지원 등과 연계하여 사고사망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비용 지원
- 클린 인정의 경우, 보조 대상자는 보조심사위원회 “보조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 자금지원 이후 3년간 보조지원 설비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기술지원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 클린 인정(고위험개선, 산업단지 지원)



- 추락방지 안전시설



안전투자 혁신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장을 대상으로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노후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안전인증 제도 도입 이전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및 권동식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와 노후 부리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지원조건
 - (지원범위) 이동식기계 교체 및 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 (1억원 한도) 지원
 - (지원방식) 리스·할부(이동식기계, 설비공사), 보조(설비공사에 한함)
 - ※ 리스·할부는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해야 하며, 리스 보증금을 정부에서 지원, 사업주는 잔여 리스료(이자+취득원가 일부) 부담, 보조는 일시금 직접 납부
- 지원내용
 - (이동식기계 교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교체 시 리스 또는 할부의 방식으로 교체 대상 위험기계와 동일한 품목에 한하여 지원
 - (설비공사) 부리공정 개선 및 리프트 교체 시 리스·할부 또는 보조의 형태로 장비구매·설치, 해체, 관련법령 준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 사업추진체제(지원절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1644-45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목적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 사업내용

-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적용)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 10% 산재보험료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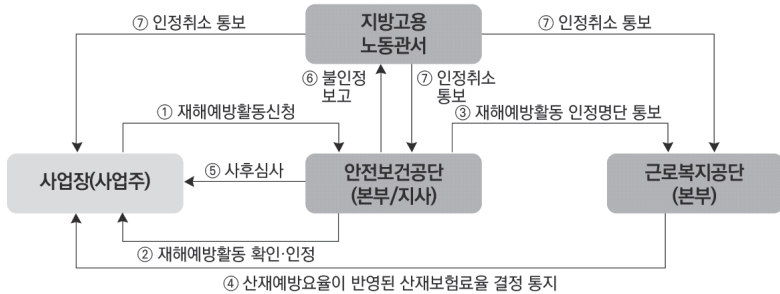
* ①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모두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복 할인 적용

- (재해예방활동 인정) 위험성 평가 3년, 사업주 교육 1년, 노동시간 조기 단축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21.6.30까지

- 산재보험료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노동시간 조기단축: 10%
- 인정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행기관

- (고용노동부) 제도 운영 총괄 및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 법·제도 운영·관리, 산재예방요율제 적용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취소 등
- (안전보건공단)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주 재해예방활동 인정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교육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및 사후심사 등
- (근로복지공단) 산재예방요율 적용된 산재보험료를 결정 및 통지
⇒ 재해예방활동 인정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할인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 사업목적

- 산재 이후 산재장해인을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직업복귀 촉진

* 사업비 31.7억원('21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 실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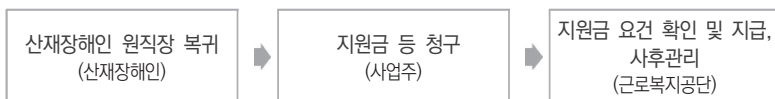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12개월을 한도로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산재장해 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산재장해인에게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4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에게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월 15만원 범위안에서 3개월 이내 실비 지급

■ 사업추진체계





노사발전재단(☎ 02-6021-1058-62),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 사업목적

-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일터 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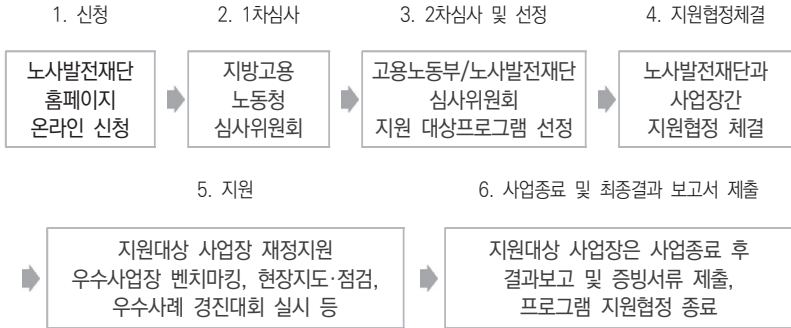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또는 사업장 및 단체 사업장
 -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하였거나, 3년 연속 지원 받은 후 1년 미경과 사업장
-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3천만원, 단체 사업장 4천만원 한도로 지원
 - * 총 프로그램 예산액의 10% 이상 자체부담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30% 이상)
- 지원대상 프로그램(2가지 이상 필수 선택)

분 야	필수 프로그램 세부내용(예시)
1. 공생발전 프로그램	1-1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1-2 원·하청기업 공생발전 프로그램
2.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증진	2-1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완화 프로그램 2-2 비정규직·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프로그램
3. (고용노동분야) 정책적·사회적 이슈 프로그램	3-1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3-2 장시간 근로개선 및 청년연장 등 함께 일하기 3-3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프로그램
4.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프로그램	4-1 비정규직·파견·하도급 근로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통해 접수

■ 사업추진체계





고용노동부(☎ 044-202-7598), 노사발전재단(☎ 02-6021-106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사업목적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저변에 확산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신청방법

구분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문화 대상(大賞)
신청기간	2021년 상반기 중	2021년 하반기 중
접 수 처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	
선정공고	6월말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11월중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공고)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사업장 단위 신청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 	▶ 2019 ~ 2021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히 되는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명단공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히 되는 사업장 ▶ 노사문화 대상 선정 후 2년 미경과 사업장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 우수노사문화 추진실적(한글파일 제출), 증빙자료(한글파일 또는 PDF 제출) ▶ 납세증명서(국세청 발급 후 스캔본 제출) 	

- 반드시 노·사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
- 복수노조 사업장은 가급적 전체노조 참여하에 공동명의로 신청
- 중소기업·대기업·공공기관을 구분해 신청

■ 선정절차



■ 선정기업 지원내용

- 유효기간: 우수기업·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 지원내용

지 원 내 용	노사문화 대 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담당기관
〈 행정상 우대 〉			
■ 정부포상	대통령·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인증서·인증패	고용노동부
■ 정기근로감독	면 제	면 제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선발 가점	2.5점 가점	2.5점 가점	
■ 상품용기 등에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우수기업 표식	
■ 소개책자 제작 및 유관기관 비치	제작·송부	제작·송부	
■ 군수물품 조달 적격 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급식분야 0.25)	0.5점 가점 (급식분야 0.25)	국방부
■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우대	0.5점 가점	0.5점 가점	
■ 세무조사 유예 (모범납세자에 한하며, 매출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총리상 이상 2년, 장관상 1년 유예	1년 유예	국세청
■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우대	1점 가점	1점 가점	중소기업벤처부
■ 산업재해예방기금에서 산재예방 시설·장비 구입자금지원	최우선 지원	우 대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 금융상 우대 〉			
■ 대출금리	우 대	우 대	농협, 수협
■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우 대	우 대	신한, 하나 제일, 국민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 대	우 대	신용보증기금

※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위 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안내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4541	02) 2231-0009
서울고용복지+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4541	02) 2004-7301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코스모빌딩	06671	02) 580-4900
서울강남지청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06278	02) 584-0009
서울강남고용복지+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06192	02) 3468-4794
서울동부지청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05717	02) 403-0009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3~5층	05717	02) 2142-8924
서울서부지청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빌딩 3층, 5층	04157	02) 713-0009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플라자 1층, 4층, 5층	04157	02) 2077-6000
서울남부지청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7262	02) 2639-2100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07262	02) 2639-2300
서울강서고용복지+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2, 3층	07526	02) 2063-6700
서울북부지청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01137	02) 950-9880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01762	02) 2171-1700
서울관악지청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2	08390	02) 3281-0009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2, 3층	08378	02) 3282-92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2~4층	22101	032) 460-4545
인천고용복지+센터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21559	032) 460-4701
인천북부지청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6	21068	032) 540-7910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2~5층	21060	032) 540-5641
인천서부고용복지+센터	인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7~10층	22726	032) 540-2001
강화고용복지센터	인천 강화읍 강화대로 395 준프라자 5층	23035	032) 540-7990
부천시청	경기 부천시 석천로 207	14537	032) 714-8700
부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 뉴월드빌딩 (중동)	14530	032) 320-8900
김포고용복지+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월드타워 3층	10083	031) 999-0900
의정부지청	경기 의정부시 충의로 143	11787	031) 877-0009
의정부고용복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 1~2층	11674	031) 828-0900
포천고용복지센터	경기 포천시 중앙로62 (신읍동65-17) 1층	11149	031) 850-7690
남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953 금마루프라자 3~4층	12237	031) 560-1919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동두천고용복지*센터	경기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11357	031) 860-1700
구리고용복지*센터	경기 구리시 권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11921	031) 560-5800
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양주시 부흥로 1533	11498	031) 849-2300
고양지청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50	10497	031) 931-2800
고양고용복지*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10364	031) 920-3937
파주고용복지*센터	경기 파주 중앙로 328 MH타워 8층	10930	031) 860-0401
경기지청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66	16324	031) 259-0204
수원고용복지+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파스텔 3층	16483	031) 231-7864
용인고용복지+센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강남애플러스빌딩	16977	031) 289-2210
화성고용복지*센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85 이원타워 7층	18302	031) 290-0800
성남지청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3627	031) 788-1505
성남고용복지*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13627	031) 739-3177
경기광주고용복지*센터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62 (경안동)	12757	031) 799-2760
양평고용복지센터	경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11, 3층	12551	031) 740-6781
이천고용복지*센터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09 (창전동)	17356	031) 644-3820
여주고용복지센터	경기 여주시 여흥로 109번길 15, 5층	12622	031) 740-6790
하남고용복지*센터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풍산동)	12919	031) 730-7000
안양지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14087	031) 463-7300
안양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세타워 3~4층	14001	031) 463-0700
군포고용복지센터	경기 군포시 군포로 522, 5층	15855	031) 463-7610
광명고용복지*센터	경기 광명시 시청로 15, 1~2층 (철산동)	14216	02) 2680-1500
의왕고용복지*센터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1~2층 (포일동)	16004	031) 463-7460
안산지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	15358	031) 412-1992
안산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	15357	031) 412-6600
시흥고용복지*센터	경기 시흥시 마우로 418번길 18, 3층 (정왕동)	15049	031) 496-1900
평택지청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17739	031) 646-1114
평택고용복지*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프라자	17739	031) 646-1205
오산고용복지*센터	경기 오산시 경기동로 51 (오산동 34-5)	18131	031) 8024-9805
안성고용복지*센터	경기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984 (도기동 100-13)	17596	031) 686-1705
강원지청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	24233	033) 269-3551
춘천고용복지*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 넥서스프라자빌딩	24415	033) 250-190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가평고용복지센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69, 1층	12413	031) 580-0901
홍천고용복지센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56 로하스빌딩 7층	25139	033) 439-1901
강릉지청	강원 강릉시 경강로 1991	25535	033) 650-2500
강릉고용복지*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 (교동)	25528	033) 610-1919
동해고용복지센터	강원 동해시 동해대로 4921 (나안동 156-7) KT북평빌딩 1층	25810	033) 539-1901
속초고용복지*센터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 (조양동)	24872	033) 630-1919
원주지청	강원 원주시 만대로 59	26387	033) 769-0800
원주고용복지*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26448	033) 769-0900
태백지청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26015	033) 552-0009
태백고용복지*센터	강원 태백시 변영로길 341	26008	033) 552-8605
삼척고용복지*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25929	033) 570-1900
영월출장소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232	033) 374-0009
영월고용복지*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6232	033) 371-626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 연제구 연제로 36	47065	051) 853-0009
부산고용복지*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47209	051) 860-1919
부산동부지청	부산 금정구 곤당서로 12	46332	051) 559-6688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광안동)	48267	051) 760-7100
부산북부지청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804 (덕포동)	46938	051) 309-1500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코스모북부산빌딩 (화명동)	46524	051) 330-9900
창원지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9번길 4 (상남동)	51430	055) 239-6500
창원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7층	51503	055) 239-0900
마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 3층 (석전동)	51316	055) 259-1500
함안고용복지센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남경길 32 함안메디컬센터 4층	52040	055) 278-9210
창녕고용복지센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18 성동빌딩 9층	50323	055) 278-9250
울산지청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 (옥동)	44664	052) 272-0009
울산고용복지*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06	44717	052) 228-1919
양산지청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석산리)	50635	055) 387-0009
김해고용복지*센터	경남 김해시 호제로 441 (부원동)	50925	055) 330-6400
밀양고용복지*센터	경남 밀양시 백민로 69, 2층, 4층	50423	055) 350-2800
양산고용복지*센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 (중부동)	50629	055) 379-2400
진주지청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 11번길 43	52629	055) 752-0009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진주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2-5층 (장대동)	52755	055) 753-9090
사천고용복지센터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9-1 (4층)	52517	055) 760-6590
하동고용복지*센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안길 61-3	52345	055) 884-8219
거창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8길 6	50143	055) 949-6589
진주지청 별관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73, 2층 (강남동 ABL)	52708	055) 753-9090
통영지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3016	055) 645-0009
통영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53016	055) 650-1800
고성고용복지센터	경남 고성군 고성을 동외로175 (양강빌딩 5층)	52942	055) 650-1841
거제고용복지*센터	경남 거제시 갈제중앙로 1925, 2층 (고현동)	53252	055) 730-1919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범어동 734)	42140	053) 667-6200
대구고용복지*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범어동)	42020	053) 667-6000
대구강북고용복지*센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태전동)	41462	053) 606-8000
대구동부고용복지*센터	대구 동구 아양로 22 (신암동)	41207	053) 667-6900
경산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산시 중앙로85 3, 4층 (중방동)	38622	053) 667-6800
영천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천시 금완로 63, 2층	38891	054) 778-2591
대구서부지청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대구지방합동청사 3층	42768	053) 605-9000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9 (내당동)	41857	053) 605-6500
칠곡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39890	054) 970-1919
대구달성고용복지*센터	대구 달성군 농곡읍 농곡중앙로34길 1	42984	053) 605-9510
포항지청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30 (대잠동)	37761	054) 271-6700
포항고용복지*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포항고용복지*센터 5층 (죽도동)	37751	054) 280-3000
경주고용복지*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38104	054) 778-2500
포항지청 지역협력과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3층	37751	054) 288-3500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2번길 8, 1층	37761	054) 271-6700
구미지청	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임수동 92-31)	39390	054) 450-3500
구미고용복지*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39281	054) 440-3300
김천고용복지*센터	경북 김천시 신양2길 46 (신음동 792-9)	39547	054) 429-8900
영주지청	경북 영주시 변영로 88	36088	054) 639-1111
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영주시 변영로 88	36088	054) 639-1111
문경고용복지*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3, 4층	36977	054) 559-8200
상주고용복지센터	경북 상주시 왕산로155 대흥빌딩 1층	37212	054) 559-8280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안동지청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6643	054) 851-8000
안동고용복지*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36643	054) 851-8061
의성고용복지센터	경북 의성읍 문소3길 102-1, 4층	37337	054) 851-8150
예천고용복지센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봉덕로 26, 2층	36827	054) 851-818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지방법청사	61011	062) 975-6200
광주고용복지*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 (북동)	61240	062) 609-8500
나주고용복지센터	전남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치타워 4층 401	58217	061) 280-0183
화순고용복지센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00, 1층	58135	061) 280-0155
광주광산고용복지*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2~3층 (월곡동)	62328	062) 960-3200
영광고용복지센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61	57036	061) 280-0158
제주근로개선지도과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법청청사 1층	63219	064) 728-6100
전주지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인후동 1가)	55014	063) 240-3400
전주고용복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54936	063) 270-9100
남원고용복지*센터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55770	063) 630-3900
정읍고용복지*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수성동 939-3)	56718	063) 530-7500
익산지청	전북 익산시 하나로 478 (어양동 626-1)	54552	063) 839-0008
익산고용복지*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남중동)	54619	063) 840-6500
김제고용복지*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김제지역자활센터 2층 (요촌동)	54392	063) 540-8400
군산지청	전북 군산시 조촌5길 44 (조촌동 852-1)	54076	063) 452-0009
군산고용복지*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조촌동 752-4)	54079	063) 450-0600
부안고용복지*센터	전북 부안읍 번영로 145, 2층 (서외리 3-1)	56308	063) 580-0501
고창고용복지센터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30 고창선운사 빌딩 1층	56431	063) 580-0540
목포지청	전남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58691	061) 280-0100
해남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59037	061) 530-2900
목포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상동)	58748	061) 280-0500
무안고용복지센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 161	58524	061) 280-0160
영암고용복지센터	전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리 125외3필지 우진레디앙스 상가동 1층	58418	061) 280-0190
여수지청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웅천동)	59691	061) 650-0108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조례동)	57966	061) 720-9114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여수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웅천동)	59691	061) 650-0155
광양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8~9층	57777	061) 798-19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둔산동)	35238	042) 480-6290
대전고용복지*센터	대전 서구 문정로 56 (탄방동)	35262	042) 480-6000
금산고용복지센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70 KT금산지점 1층	32740	041) 731-8690
공주고용복지*센터	충남 공주시 변영1로 46, 5층 (신관동)	32584	041) 851-8501
논산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내동)	32989	041) 731-8600
세종고용복지*센터	세종 조치원을 터미널안길 60	30026	044) 865-3219
청주지청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28798	043) 299-1114
청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42 월드피아오피스텔	28575	043) 230-6700
진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진천군 덕산읍 자안로9, 4층 402호, 403호	27871	043) 229-0791
옥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길 4 문화회관 별관 3층	29032	043) 730-4100
천안지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31107	041) 560-2800
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빌딩	31110	041) 620-7400
당진고용복지센터	충남 당진시 시청2로 12 제일빌딩 2층	31774	041) 620-7456
예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1길 20 더예당 2층	32435	041) 620-9511
아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아산시 시장길 29 아산시민문화복지회관	31513	041) 570-5500
충주지청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3-3	27428	043) 840-4000
충주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 (문화동)	27428	043) 850-4000
제천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27184	043) 640-9310
음성고용복지*센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13, 2층	27630	043) 880-8600
보령지청	충남 보령시 옥마로 42	33482	041) 931-6640
서산출장소	충남 서산시 쌍연남1로 37 (잠흥동)	31979	041) 661-5694
서산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석남동)	31995	041) 661-5600
태안고용복지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36 태광빌딩 2층	32147	041) 661-5691
보령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33474	041) 930-6200
부여고용복지센터	충남 부여군 부여읍 신동엽길 6, 3층 (성모크리닉센터)	33153	041) 930-6236
서천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109번길 25 1층(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33646	041) 930-6244
홍성고용복지센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7, 3층 (블란서빌딩)	32226	041) 930-6248

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대표번호
고객상담센터	울산 중구 중가로 405-3	44543	국번없이 1350
중앙노동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3,4층	30117	044) 202-82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07295	02) 3218-6070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합동청사 4층	46332	051) 559-370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율전동) SK허브블루 4층	16360	031) 259-50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2층	35208	042) 520-807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 43 광주지방법합동청사 저층부 7층	61011	062) 975-61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	42140	053) 667-650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경남 창원 의창구 창원대로 363번길 22-47, 10층	51393	055) 239-8000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법합동청사 2~4층	22101	032) 430-3100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울산 남구 두왕로 318, 4층	44740	052) 208-0001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 춘천지방법합동청사 3층	24233	033) 269-340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법합동청사 5층	28798	043) 299-126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간산로 251	55014	063) 240-1600
제주특별자치도지노위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법합동청사 5층	63219	064) 710-7990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	세종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 3층	30117	044) 202-8499
최저임금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03호	30117	044) 202-8410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411호	30117	044) 202-7912
고용보험심사관실	세종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04호	30117	044) 202-7920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C H A P T E R

II

중소벤처기업부

- 01.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 02. 신용보증 지원
- 03. 기술개발자금 지원
- 04. 인력 양성
- 05. 인력유입 촉진



중소벤처기업부

01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0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114
0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24
0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25
04	신성장기반자금	126
05	재도약지원자금	131
06	긴급경영안정자금	134
0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36

02

신용보증
지원

01	신용보증	140
02	기술보증기금	144
03	지역신용보증재단	147
04	매출채권보험	150

03

기술개발
자금지원

01	창업성장기술개발	154
02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158
0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60
0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63
05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166
06	산학연 Collabo R&D	169
07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172
08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176
09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178
10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180
11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182
12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184
13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186
14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188

15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188
16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191
17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193
18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195
19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197
20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199
21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201
2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203

04

인력 양성

01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210
0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육성)	213
03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216

05

인력유입
촉진

01	내일채움공제	220
0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22
0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24
04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226
05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229
06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31
07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233
08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235
0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37
10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239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01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0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114
02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24
0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125
04	신성장기반자금	126
05	재도약지원자금	131
06	긴급경영안정자금	134
07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36



자금지원 공통사항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용자대상 및 절차, 용자제한기업, 용자 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자원이 안되는 기업

-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의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 용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용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용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용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용자한도

● 개별기업당 용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용자잔액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의 경우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또는 수출 향상)은 1년간 0.3%p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단, 브랜드K인증기업은 수출성공 및 향상기업 기준 50% 완화

-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 지원

*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 불가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예약 및 자금상담(신청서 제출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온라인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수출 및 시설투자 기업 등은 우선 지원)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와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사항 등 멘토링 지원

용자제한기업

-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용자 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④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으로 용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 ⑤ 임직원의 자금형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⑥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
- ⑦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⑧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자금,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용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⑩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제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적용 제외)

⑪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캐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⑫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 ⑬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은 횡산정 제외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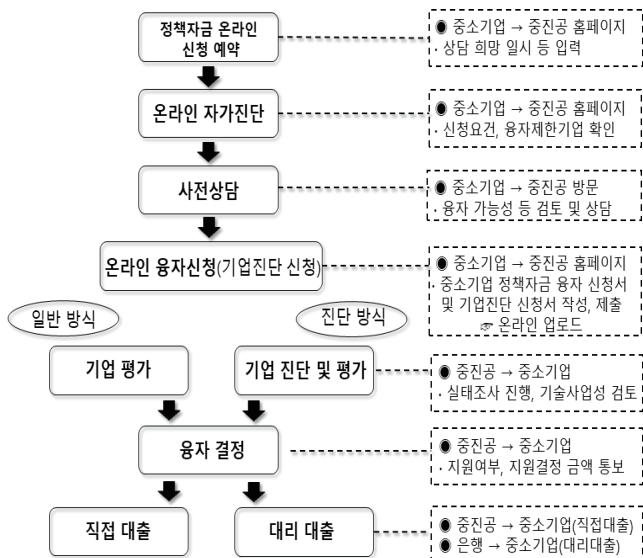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창업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중소기업 정책자금 : 5조 4,100억원

-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2,5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1,4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5,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7,7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5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5,0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 Q** 2015년 6월 창업하여 자동차 부품용 스프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생산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요?
- A** 창업하신지 7년 미만이라면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시설자금을 신청하세요, 지난해는 업체당 평균 2.2억원 정도가 지원됐고, 연간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올해 가정용 세제를 개발해 특허를 받고 미국 FDA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품 생산과 마케팅 비용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A** 특허 기술이 있으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개발제품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기계구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원자재 구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 Q** 지난 95년에 회사를 설립한 실린더 밸브 전문기업입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과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생산라인 증설이 필요합니다.
- A** 7년 이상 된 기업이 생산 시설투자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신성장기반자금'입니다, 생산성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도입, 기계구입, 사업장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시설도입 후 초기 가동비도 지원합니다.

알려줘요!



Q 고해상도 후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여 매출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업체와 50만 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제품 생산을 위한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A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나 생산비용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을 지원해 드립니다, 수출제품 사업화를 위한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됩니다,

Q 2009년부터 컴퓨터 프레스와 판금 사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오다가 2013년 이후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여 전기온풍기 업종 추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경우 업종추가, 업종전환, 품목추가 시 '사업전환자금' 을 대출해 드립니다,

Q 지난해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 정책자금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A 금융기관 대출금 상황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책 자금은 한정된 정부 재정으로 사업성·기술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을 기피하는 창업·개발기술사업화·시설투자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정책자금을 신청해 지원받은 적이 있는데 추가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총 대출잔액 기준으로 수도권 60억원, 비수도권 70억원 이내로 대출한도 관리를 합니다, 또한 동일기업당 지원횟수를 최근 5년 내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 및 타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자금 총 지원금액을 1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 신청 및 평가절차가 궁금합니다, 은행을 통해서도 용자를 받을 수 있나요?

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지역본·지부로 신청을 하시면 지원대상 및 요건 확인 후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이 이루어지며,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주거래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용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업종구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용자잔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자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용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 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진공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진공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용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비대면분야 창업자금은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응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비대면분야창업자금>

- 창업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비대면 분야 영위 기업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미래 성과 공유제 도입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 ①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 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NET, 전력신기술,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

- (미래기술육성)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 (고성장추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상시종업원 10명 이상 (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지방소재기업 15%)
-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투자자금은 혁신창업지원자금 및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만 지원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차감(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시설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30억원 이내

- * 청년전용창업자금 : 제조업종 기업당 2억원 이내, 그 외 업종 기업당 1억원 이내

- * 미래기술육성, 고성장촉진 : 기업당 10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고성장촉진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및 멘토링 실시(융자상환금 조정형)

신청·접수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한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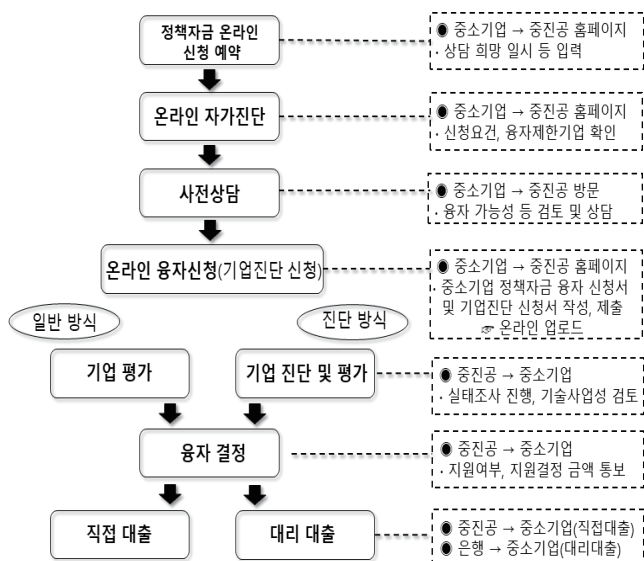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2조 2,5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12,914개사 중 10,918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2.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대상

-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대출방식

- 대출방식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증진공이 주식전환 여부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증진공 상환권 행사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5%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스케일업금융)

- 대출기간 : 3년 이내(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융자방식 : 중소기업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유통화 후 자금지원
- *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대출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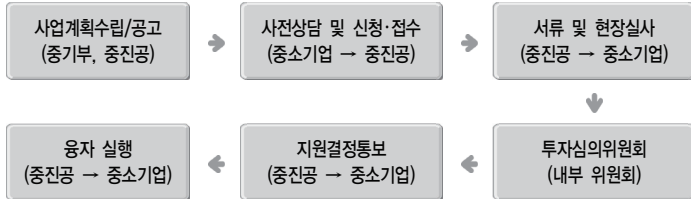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1,4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성장공유형대출 102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0.1억원
스케일업금융 9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37.7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BW:Bond with Warrant)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상환전환우선주(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 합병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대상

- 혁신성장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협동화·협업 사업 승인기업, 한중FTA에 취약 업종 영위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용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공장, 공정혁신 및 자동화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용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자금의 50% 이내)
 - * 지식서비스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용자 가능(단,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 자금과 별도 용자 불가)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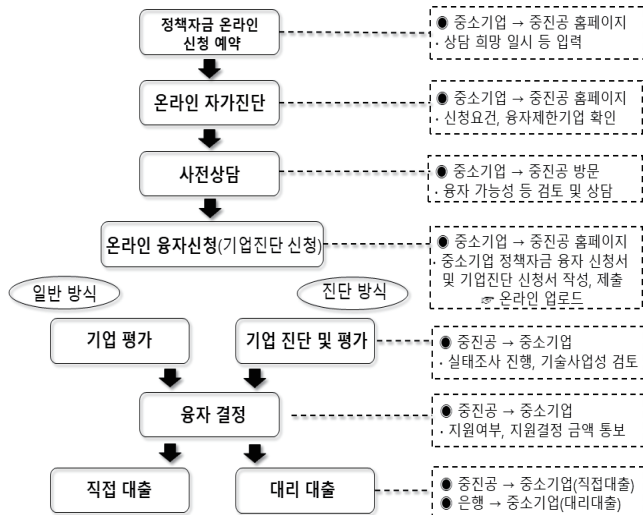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신성장기반자금 : 1조 7,7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2,765개사 중 2,447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5.6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의 재도약 성공을 지원

신사업개척과 무역피해 극복,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재창업을 통한 재기지원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자금을 지원

지원대상 ●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지 원 요 건
사업 전환 자금	①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③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④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내 기업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 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물납법인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재창업 자금	재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 중 ① 사업실패로 인한 저신용상태 혹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면책, 회생, 신용회복,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④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폐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
- ▶ (재창업)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한 기업인 등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사업 전환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10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5년 포함 ※ 무역조정자금 - 2% 고정금리
구조 개선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5년, 거치 2년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 2% 고정금리, 운전(5년, 거치 2년 포함) 및 시설자금(10년, 거치 4년 포함) 지원
재창업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 : 기업당 60억원 (운전자금 연간 5억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 운전 - 6년, 거치 3년 포함/ 시설 - 10년, 거치 4년 포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전환자금 : M&A용도의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 구조개선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 따른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
- (초기재창업자)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

제출서류

- (공통) 융자신청서
-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 (재창업) 폐업사실증명원

처리절차

- 사업전환자금

전환계획접수

계획심사·승인

자금신청

자금심사·결정

- 구조개선자금

신청접수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재창업자금

신청접수

성실경영평가

자금심사·결정

자금대출

* 초기재창업자(예비 및 업력 1년미만)는 심의위원회를 통한 별도 절차로 처리

지원규모

● 재도약지원자금 : 2,500억원

- 사업전환자금 1,000억원, 구조개선자금 500억원, 재창업자금 1,0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재도약자금 3,10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약정책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및 재도약성장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알려줘요!



Q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과 사업전환자금 신청은 별개인가요?

A 네, 별개입니다.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재창업예정자입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인데 지원이 되나요?

A 네, 예비재창업자도 신청은 가능하며 심의위원회의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여부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출은 사업자등록 후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선제적 자률구조개선 프로그램 경영위기 기업 대상 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지원을 위해, 중진공이 채권은행과 협업하여 '기업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신규자금, 채무조정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워크아웃제도보다 선제적이고 기업중심적인 구조개선·재도약을 지원하는 '21년 신규사업입니다.



경영으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 지원

재해, 경영으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응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 재해피해 기업의 경우, 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일시적 경영으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으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으로 기업의 경우, <2.공통사항> 바. 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으로)은 ①, ⑥항 추가 예외
 - *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으로) 신청 요건 〉

- **(경영으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수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15), 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환이란제제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코로나19 피해) ②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으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 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 환이란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으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으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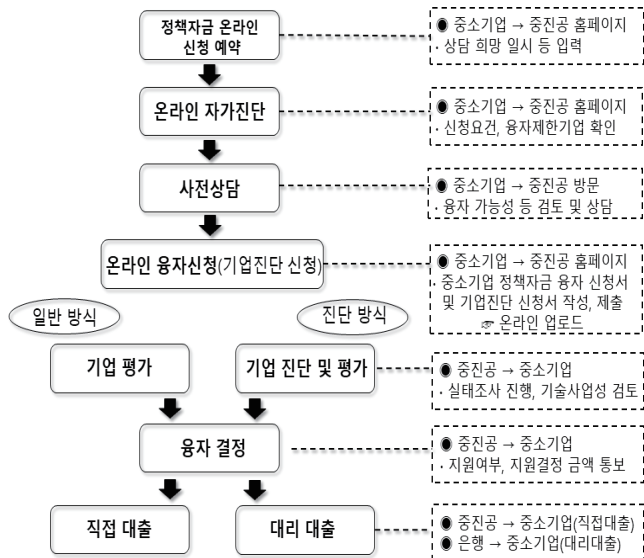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긴급경영안정자금 : 5,000억원

* 2020년 11월말 신청기업 8,045개사 중 7,533개사 선정지원, 업체당 평균 1.7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수출·글로벌 기업화 촉진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대상

- (내수기업의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해외진출 스타트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 **온라인 수출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및 중진공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참여기업
- **브랜드K 선정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B2C 제조업체가 생산한 대한민국 소재 제품으로 선정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일정 수준의 수출실적**이 발생한 기업

- (수출글로벌기업화) 수출 유망기업(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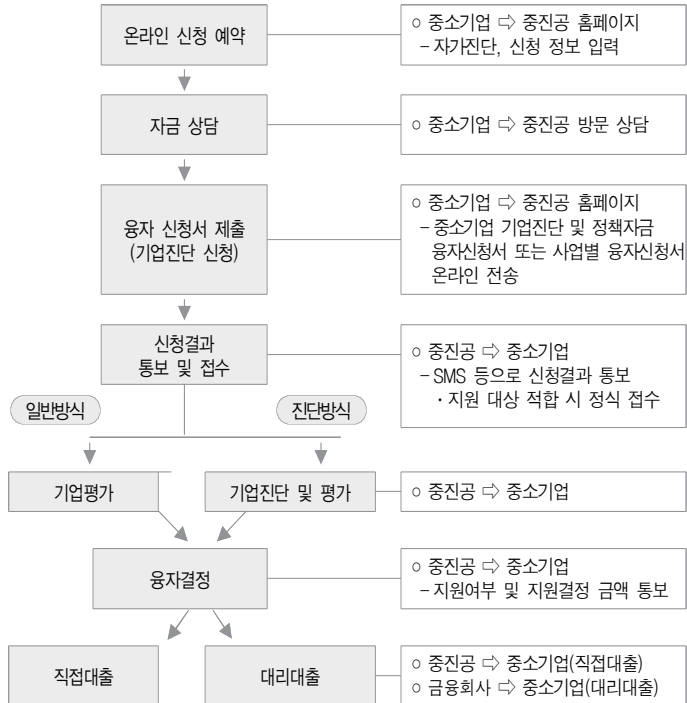
지원내용

- **융자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
-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 *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지원규모 ● 5,000억원

* '20년 지원현황 : 1,490개사 신청기업 중 1,387개사 선정지원(업체당 평균지원금액 2.2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02

신용보증 지원

01	신용보증	140
02	기술보증기금	144
03	지역신용보증재단	147
04	매출채권보험	150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 ▶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대출보증, 상거래 담보보증, 이행보증 등

보증종류	주요내용
대출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용 등
제2금융보증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 농수협,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상거래담보보증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어음보증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 ▶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보증의 보증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납세보증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보증한도 : 30억원

- *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
- *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70~100억원까지 지원가능

자 금 종 류	보증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장 혁신기업 - 혁신아이콘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 	150억원
■ 시설자금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자금용,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70억원

- 운전자금 보증한도 :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

- * 매출액한도 : 추정매출액의 1/2 ~ 1/6 이내
- * 자기자본한도 : 자기자본의 300% 이내

신청·접수

●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www.kodit.co.kr) 통한 온라인 신청
- 영업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

- 신보의 직접 수집이 불가한 자료에 한하여 고객이 제출

구 분	수집(제출)자료	자료수집 경로
신보 직접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이 법인번호, 부동산 소재지 고지 시 인터넷 등기소(대법원)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납세사실증명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보험료 납부(완납)증명 	고객 동의 시 행정정보공유 시스템(행정안전부)에서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매입처별·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재무제표 	세무대리인이 자료 전송 시 메타게이트를 통해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확인서 	고객 동의 시 전산으로 수집
고객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 주주명부 • 기업개요표 	고객이 FAX 또는 현장조사시 제출

처리절차

단 계 별	처 리 내 용
신청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상담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보증상담신청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신청 내용의 타당성 및 기본적인 신용상태 등을 사전검토
↓	
자료수집 및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 (신보 직접 수집하며, 일부자료는 기업 제출) 수집된 자료,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및 규정상 보증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검토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사업전망, 보증지원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약정 및 보증서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 약정체결: 고객의 자서날인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지원규모

- 보증잔액 57.5조원으로 운용예정

* '20년 지원현황(11월말) : 55.1조원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신보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보증제도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 분	내 용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수출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에 맞춤형 보증 지원
유망창업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창업기업에 대해 유형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 고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증 상품 지원*
유망서비스기업 보증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특별보증
시설자금특례보증	· 사업장 신축·대입 기계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에 대한 보증
지식재산보증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거래,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
SMART융합보증	· ICT, 과학기술 기반의 H/W, S/W 도입 및 생산을 위한 자금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	·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된 보증 상품 지원**
기타	· 신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 경영혁신형 인증기업 등

*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고용창출 특례보증, 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보증, 고용의질 우수기업 우대보증 등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종류 :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협동조합 희망보증, 마을기업 두레보증, 자활기업 초록보증

Q 보증료는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보증료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하여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수납하며, 보증료율은 보증심사등급별 기준요율에서 일정률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연율 0.5%부터 3.0%까지 범위에서 운용합니다.

기술력 보유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지원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가치를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해 드림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 지원내용** ● 대출보증: 금융기관 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
- 어음보증: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기업이 공사, 물품의 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시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이용
- 무역금융보증: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
- 전자상거래보증: 기업간 전자상거래 대금결제를 위한 대출금 또는 외상구매 자금에 대한 보증
- 구매자금용보증: 납품기업 중심의 공급자금용방식에서 구매기업에 직접금융을 제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토록하는 제도로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 카드대출에 대한 보증

- 신청·접수** ● '21. 1. 1 ~ 12. 31 상시 접수
-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접수

제출서류

	구분	자료명	고객협조사항	
고객 준비 서류	작성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도 가능	서식
	준비서류	▶ 주주명부 ▶ 임차계약서사본 (사업장, 거주주택)	▶ 고객이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현장조사 시 준비	-
기금 수집 서류	대법원 등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사전 고지(발급수수료는 기보가 부담)	-
	행정정보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 대표자 본인이 행정정보이용에 사전동의 ▶ 기타제공행정정보: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납세증명	사전 동의서
	금융거래	▶ 금융거래확인서	▶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대한 기업체 사전 동의	
	세무회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표준재무제표(최근3개년) ▶ 부가세자료	▶ 세무사사무실(또는 신청기업)이 사이버영업점 내 세무회계자료 제출센터에서 온라인 제출	사전 동의서

● 양식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가능

처리절차

단계별	취급자	주요 내용
보증신청	신청기업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신청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상담	영업점 평가담당자	고객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기술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계속진행 여부결정, 절차안내
↓		
기술사업계획서 제출	영업점 평가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 (여타 필요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직원이 직접 수집)
↓		
기술평가	영업점 평가담당자	신청기업으로부터 접수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하여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
↓		
심사·승인 후 보증서발급	영업점 심사 및 평가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승인 시 보증약정 후 보증서 발급

지원규모

- '21년 기술보증 잔액 26조원으로 운용(유동화회사보증 0.2조원 별도)

* '20년 11월말 현재 기술보증 잔액 : 25.3조원 (유동화회사보증 0.3조원 제외)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1120), 홈페이지 (www.kibo.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Q&A

알려줘요!



Q

기보에서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기보에서 직접 수집하는 서류의 발급 수수료는 기보가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용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채무관계자 등
- ▶ 휴업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등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
-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의 기 보증금액 포함)

분 야	내 용	보증한도
운전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한도 적용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0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0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8억원 이내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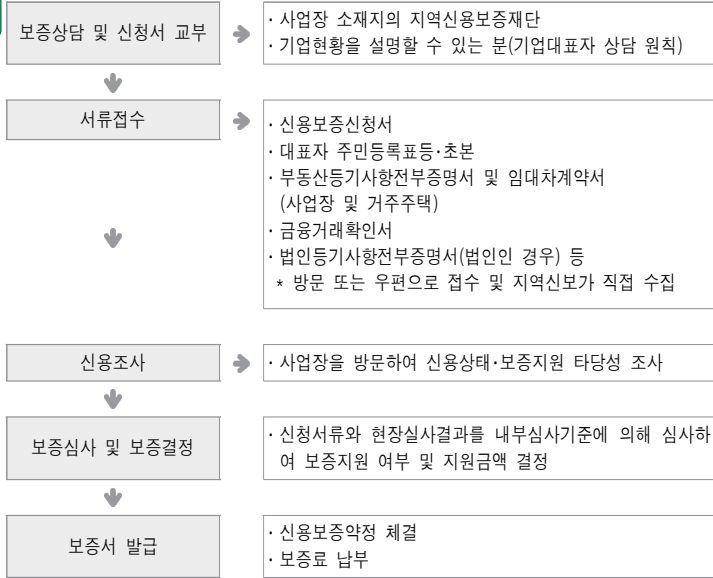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

-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보가 직접 수집

구 분	제출서류	자료수집방법
지역신보 직접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재무제표 등 • 금융거래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기소(대법원) • 행정정보공유시스템(행정자치부) • 국세청 홈택스 • 세무자료전송시스템(KED) • 금융기관 전산연계
고객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처리절차



지원규모

- 25.3조원 보증공급(보증잔액 45.9조원)

* 햇살론사업자 포함(공급 0.3조원, 잔액 0.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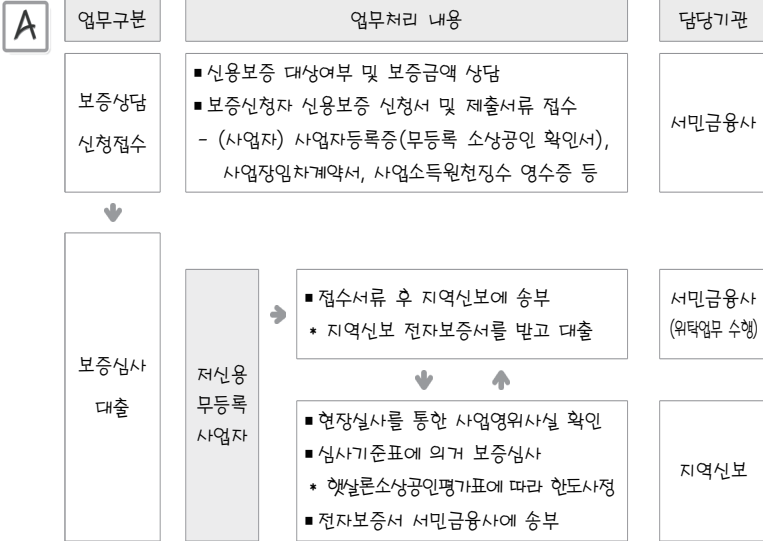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www.koreg.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햇살론 신용보증의 지원절차는?



납품대금 매일 염려 없는 거래안전망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구 분	보험계약자 기본 가입 요건		
	규 모	업 력	업 종
매출채권보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일부 부적합 업종 제외)
어음보험			

*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지원 제한 사항

- ▶ 다음과 같은 기업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부실처리한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등
- ▶ 다음과 같은 기업에 대한 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관계기업, 해외소재기업, 보험인수심사일 현재 매입 채무의 변제를 연체중인 기업, 신용도 미달 기업 등
- ▶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은 '보험계약 제외 업종'으로 운용함
 - 도박·게임, 사치·향락, 주류·담배 관련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지원내용

- 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보험인수를 통해 기업의 외상거래에 대한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구매자의 폐업, 결제지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 또는 어음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보험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 실제 상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매출채권(또는 어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예) 자금유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 실거래가 없는 가공의 매출채권

보험한도

- 매출채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0억원(어음보험 포함)
- 어음보험 : 신청기업(계약자)에 대해 최고 10억원

보험료

- 보험가입 매출채권 및 어음에 대하여 0.1% ~ 5.0%

상품종류

유형별	종류별	표준처리기간	보험대상
매출채권 보험	한사랑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다사랑보험	15일	다수의 구매처에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
	B2B PLUS+보험	8일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 판매위험 보장과 동시에 B2B+보험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
어음보험	개별어음보험	8일	개별 구매처에서 이미 취득한 어음

신청·접수

- 회사소재지와 가까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중인 기업은 거래 관할점으로 신청

심사·평가내용

- 계약자 및 구매자(어음관련인 포함)의 재무자료 등을 토대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인수금액, 구매자확정, 인수여부 등 결정
- 매출채권보험 : 매출채권보험청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4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관련자료
- 어음보험 : 어음보험청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어음 및 세금계산서 사본,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처리절차

보험가입절차	세 부 내 용
보험상담	보험가입요건, 금액 등에 대해 상담
↓	
청약접수	보험가입 청약서 접수
↓	
신용조사	신청기업 및 구매자 신용조사
↓	
보험심사	인수의 적정성 심사, 구매자별 가입금액 사정
↓	
보험료납부	보험료 납부 (일시납 또는 분납)
↓	
보험증권발급	보험증권 발급

지원규모

- 보험인수 20조원으로 운용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www.kodit.c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매출채권보험과 신용보증의 차이점은?

A	구 분	매출채권보험(신용보험)	신용보증
	특 징	신용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안전망	신용보완을 통한 추가적 신용창출
	계약성격	자기를 위하여 계약자가 체결	채권자를 위한 피보증인이 체결
	수수료성격	예상손실에 대한 분담금	보증에 따른 대가

Q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와 시기는?

- A**
- 보험금 지급청구 사유
 - 당좌부도(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될 부도사유가 발생한 때)
 - 폐업 또는 해산 등기된 때, 회생, 파산,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신청이 있는 때
 - 구매자가 외상매출금을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2월이 경과한 때
 - 보험금 청구시기
 - 상기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청구 시 필요서류는?

- A**
- 보험금지급 청구서(신보가 정하는 서식) 및 보험증권 사본
 - 매출채권의 발생 및 실제손해금액 산정 서류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인수증 또는 화물송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 매출채권이 어음상 채권인 경우 해당어음 사본
(전자어음인 경우 부도전자어음 확인서)
 - 기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용어설명

매출채권 : 상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

보험가입 매출채권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개별 구매기업 사이에서 향후 1년간 발생될 매출채권총액에 인수비율(보험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보험에 가입될 금액

보험금액 : 매출채권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신보)가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 보험가입매출채권을 매출채권회전율로 나누어 산출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03

기술개발자금 지원

01	창업성장기술개발	154
02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158
03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160
0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163
05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166
06	산학연 Collabo R&D	169
07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172
08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176
09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178
10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180
11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사업	182
12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184
13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186
14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	188
15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188
16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191
17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193
18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195
19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지원사업	197
20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199
21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201
22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203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 재창업기업
- ▶ 전략형 창업과제 : 스피노프, 벤처-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등 (과제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 TIPS 과제 : TIPS운영사(창업기획자 등)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디딤돌 창업과제(신규 399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년, 1.5억원 이내)
- 전략형 창업과제(신규 23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2년, 4억원 이내)
- TIPS과제(신규 589억원) : 창업기획자 등 팀스 운영사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 기업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2년, 5억원 이내)

* 과제별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년, 1.5억 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2년, 4억 원		품목지정
TIPS 과제	최대 2년, 5억 원		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0년 디딤돌 창업과제는 R&D 첫걸음 기업만 지원
- 제도전R&D 사업이 '20년 창업성장기술개발 내내역사업으로 개편
-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내역사업간 연계 강화, 지원 요건(매출액 20억원미만) 추가 설정

현행		→	개선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과제		TIPS 과제 (성장 단계)
창업기업과제	선도형 창업과제		▲ Scale-up / ▼ 차단
	혁신형 창업과제		전략형 창업과제 (검증 단계)
	디딤돌 창업과제		▲ Scale-up / ▼ 차단 디딤돌 창업과제 (창업 초기)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제별 공고 참조, '20.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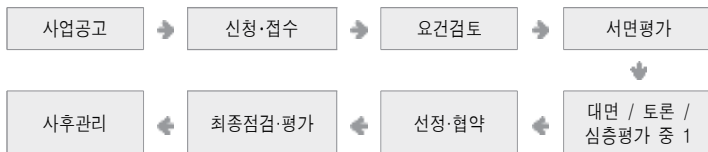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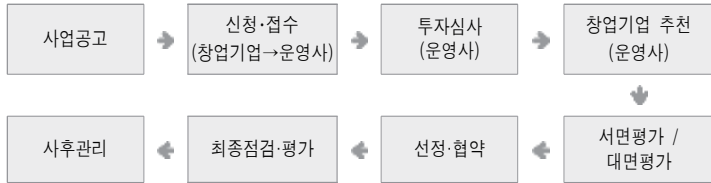
〈 디딤돌 창업과제 〉



〈 전략형 창업과제 〉



〈 TIPS 과제 〉



지원규모 ● 4,211억원(신규 1,223억원, 계속 2,988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 (내선2)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i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20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內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최대 2개)

Q

창업기업의 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입력을 산정합니다.

Q

디딤돌 창업과제 內 R&D첫걸음 기업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중소벤처기업부의 R&D사업을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의미 합니다



세계수준의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세계 수준의 기술 혁신 역량을 지닌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수출품목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이내	90% 이내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1년 신규사업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2.5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내선2번)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창업기업의 업력 산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업력을 산정합니다.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Q 기술개발과제의 품목이 지정되어 있나요?

A 아닙니다. 자유응모형 과제로 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Scale-up 성장 촉진

창업 이후 중소기업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기술개발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출수출지향형(50억원) :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307억원) : 디지털·그린, BIG3분야 등의 기술 및 민간투자 유치 실적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120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125억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기술개발과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105억원)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132억)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 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혁신역량 수준별 3개 내역으로 구분하여 최대 2~4년, 5~20억원 지원

- 수출지향형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의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전략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일반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일반회계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80% 이내	자유응모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소특회계	강소100	최대 4년, 20억		자유응모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		자유응모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		자유응모(품목지정)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내역사업 재편) 2개 회계(일반, 소특)별 혁신역량 수준에 따라 3개 내역사업으로 재편
- (내역사업 신설) 소부장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전용 R&D 신설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3,791억원(신규 839억원, 계속 2,952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지원조건에 있는 매출액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A

직전년도(2020년) 재무제표의 결산 매출액 기준입니다.(단,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중기부 내 다른 R&D사업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단독형 사업으로 단독형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시수행이 불가하며, 협력형 사업은 동시 수행이 가능합니다.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상용화 R&D 지원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자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지정공모)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자유응모)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공동투자형(구, 민관공동투자) : ('20년) 수시접수 → ('21년) 3회차 접수
 - 공공기관 다수요처 공동개발과제 : 2개 이상의 투자기업이 공동 기술개발 수요가 있는 과제를 1개 주관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원 가능

신청·접수

- 과제별 공고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구매동의서(또는 구매계약서)·투자동의서, 기타 서류 등

처리절차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구 분		지원규모 (정부 출연금)	개발비 비중			공고방식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연계형 (구매의무O)	구매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10% 이상	10% 이상	자유공모 지정공모
	구매계약서		80% 이내	20% 이상	-	
공동투자형 (구매의무X)		최대 3년, 12억원	80% 이내	20%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 (대기업 1:1, 중견기업 3:2)	자유공모 지정공모

지원규모

- 총 2,009억원(신규 421억원, 계속 1,588억원)

* '20년 지원현황 : 총 2,042억원(신규 883억원, 계속 1,159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내선 4)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알려줘요!



Q 구매연계형과 공동투자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구매연계형은 수요처의 구매의사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구매의무가 있고, 공동투자형은 투자기업의 투자의향을 기반으로 하여 구매의무가 면제됩니다.

Q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해외수요처의 경우 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 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용어설명

수요처 : (국내) 정부, 지자체,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해외)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E등급 이상)

투자기업 :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기업 출연금 : 총 사업비와 별도로 투자기업이 정부출연금에 대응하여 투자하는 금액으로 주관기관이 개발 및 사업화 자금으로 사용 가능

조달혁신 : 구매연계형 중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과제

BIG3 : 공동투자형 중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과제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과제(국내 수요처에 한함)



네트워크 협력체의 공동기술개발

3개이상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주관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3개 기업 이상)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 참여 불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재(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1단계 : 네트워크 기획)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 지원
- (2단계: R&BD) 사업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BD 자금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에 최소 필요 사항만 작성 및 30페이지로 제한

신청·접수

- 과제별 공고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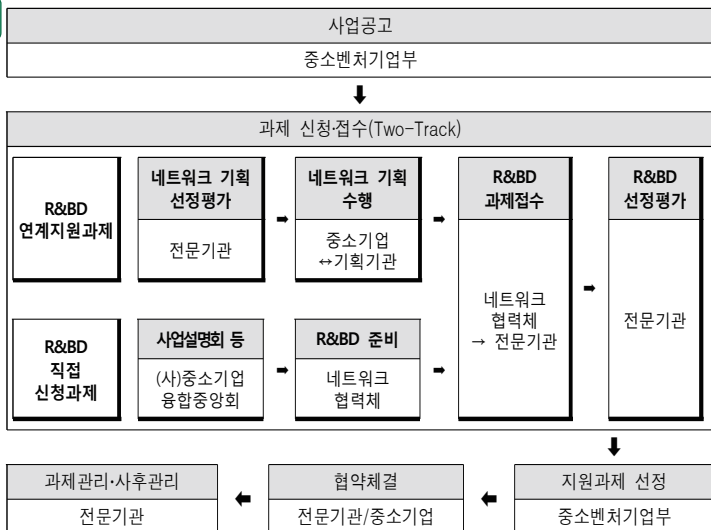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공통)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네트워크 기획)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 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R&BD) 사업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성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 (네트워크 기획) 사업계획서, 매칭요구서, 기타 서류
- (R&BD)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기타 서류

처리절차



지원규모

- 총 219억원(신규 60억원, 계속 159억원)

* '20년 지원현황 : 총 256억원(신규 120억원, 계속 136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내선 4)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알려줘요!



- Q**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 A**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 Q** 네트워크 기획(1단계) 신청 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 A**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기획 운영기관 : 네트워크 기획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여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기관

상호협력 표준계약서 : 네트워크 구성 기업들의 수행역할 및 성과물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구성 기관별 의무사항, 성과배분 방식 등을 정의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사업화 부속계약서 : 상용화를 통한 사업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상호 신뢰형성을 위해 R&BD 완료 후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역할, 비용 분담 내용 등을 포함하고, 변호사 공증을 진행하여 공신력 및 구속력을 확보한 계약서

기획연계과제 : 당해 연도 네트워크 기획을 수행하고 R&BD 과제에 신청한 과제

산학연 협력R&D를 통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확대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 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 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 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R&D
- 산학협력 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 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산연협력	(1단계) 예비연구	최대 8개월, 0.5억원		
	(2단계) 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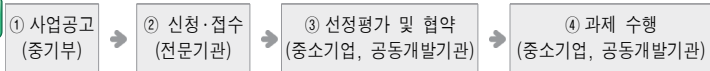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예비연구)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 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 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간 단축을 위해 평가단계 조정 가능
- (사업화 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448억원(신규 216억원, 계속 232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려줘요!



Q 1단계 예비연구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예비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0% 과제만 2단계 사업화 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신청없이 바로 2단계(사업화R&D)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예비연구) 수행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R&D를 통한 기술 검증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혁신형R&D 및 현장형R&D 지원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고도화)과 제조혁신 촉진

지원대상

- (혁신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및 공급기업
- (현장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지원내용

- 혁신형 R&D_일반과제(신규 40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최대 2억원 한도(연 1억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년
- 혁신형 R&D_고도화과제(신규 37억원) : 유타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이전이 많은 노동집약형 공정, 고위험 공정 등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능화 및 신기술 융합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 최대 2억원 한도(연 5억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년
- 현장형 R&D(신규 108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년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유타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형R&D_고도화 과제 신설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tech.go.kr)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 청·접 수	선 정 평가	협 약 체 결
혁신형 R&D	일반	'21년 1월	'21년 2월	'21년 3월~4월	'21년 4월~5월
	고도화	'21년 3월	'21년 4월	'21년 5월	'21년 5월
현장형 R&D		'21년 1월	'21년 2월, 5월 (2회 신청·접수 예정)	'21년 3월~7월	'21년 7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혁신형R&D_일반과제) 스마트화저 저변확대와 스마트 수준고도화를 위해 과제 접수 시 생산현장 확인자료를 추가 접수하여 대면평가 시 활용
- (혁신형R&D_고도화과제) 지정공모 방식으로 개선하여, 리쇼어링 목적에 부합 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5인 및 간사 1인 총 6인의 평가자가 현장 평가 진행
- (현장형R&D) 공정기술개발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과제 접수 시 생산현장 확인 자료를 추가 접수하여 서면평가 시 활용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등

처리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사업신청서류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온라인 접수, smtech)
요건검토	전문기관
서면(현장형)/대면(혁신형, 일반)평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현장평가(혁신형 R&D(고도화)만 해당)	전문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과제선정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 관리	전문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위원회)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규모

● 총 480억원(신규 220억원, 계속 243억원)

* 기획평가비 17억 포함

● 혁신형 R&D(271개 기업, 273억원)

● 현장형 R&D(548개 기업, 190억원)

* '20년 지원현황 : (혁신형 R&D) 209개 기업 신규 지원
(현장형 R&D) 431개 기업 신규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044-865-9848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042-388-0761~076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Q 자동화 장비 구매 및 설치하는 것도 본 사업으로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공정품질은 R&D사업으로 단순 장비구매, 조립은 불가능하며,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개발행위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중위기술분야 제조 경쟁력 고도화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벨류체인 (GVC) 진입 및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

지원대상 ● 중위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참고 : 중위기술 분야 현황〉

기술집약도	제조업(중분류)
중고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기업창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중소기업 적합도가 높은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Top-Down)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등이 높은 경합품목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비교 경쟁우위 확보
- (Bottom-Up)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개발을 지원하여 생산 제품의 경쟁력강화 및 신시장 창출 유도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공모방식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Top-Down	품목지정	최대 2년, 6억원	80% 이내	단독수행
Bottom-Up	자유응모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공동개발 선택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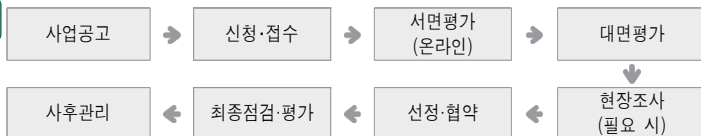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지원규모

- 57.41억원(신규 57.41억원, 35개 과제 내외)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24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중위기술(Mid-Tech)란 무엇인가요?

A

기술집약도에 따라 제조업을 4개의 그룹(고/중고/중저/저)으로 분류하고, 하이테크 및 고기술 중심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중고/중저 그룹의 중위기술 분야를 지원합니다.



공공기술 이전을 통한 수입대체 기술 조기확보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종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종인 자 등 (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자(기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일부제한)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최대 2년, 8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 기술이전 +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금융지원을 패키지로 하여 일괄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지원규모**

● 239.38억원(신규 95.75억원, 40개 과제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5, 0710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테크브릿지(Tech-Bridge)란?

A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공공기술(35만건)과 기술보증기금의 67개 영업점을 통해 발굴한 수요기술을 매칭 지원하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입니다.

Q 테크브릿지 플랫폼에 등록된 공공기술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전용예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만 가능합니다.

용어설명

KTRS 평가 기보의 대표 기술평가모형(특허권 보유)으로 '경영주역량',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33개 소항목으로 구성



한-러 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상용화로 중소기업 핵심기술 역량강화 기술 역량강화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공고된 수요·공급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의 공공기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이 전의향서 또는 제품개발 협약서 등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기술협력 수요·공급기술 품목 중 러시아 보유 핵심 기술도입을 통한 후속 기술 개발 및 현지 수요기술에 대한 판로개척 기술개발 지원

구분	지원기간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상용화기술개발	2년 이내	4억원 이내	80%이내	품목지정

신청·접수

- (상용화기술개발) '21.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양식은 사업공고에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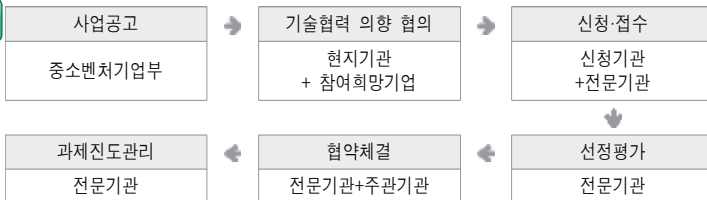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기술성(창의·도전성, 국제협력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사업성(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고용친화도), 정책부합성 등에 대한 평가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술협력의향서, 기타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36.95억원(신규11억원)

* (상용화기술개발) 6개 과제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53, 0754, 0750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기술협력의 향서' 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현지기관과 주관기관의 기술협력을 위한 사전협의 여부 등의 증빙으로 활용되므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Q 러시아 기업과의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주관기관과 현지기관 간의 기술협상, 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상용화지원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R&D 지원

의료기관 방역현장 애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방역물품 R&D를 통해 방역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K-방역의 성과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방역물품·기기분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최대 2년, 6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 (의료기관 수요발굴)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방역물품 애로 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적합품목) 중소기업 적합 방역물품·기기관련 신제품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 검토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처리절차 ● (지정공모과제)



● (자유응모과제)



지원규모 ● 89.05억원(신규 86.6억원, 기획평가관리비 2.45억원)

* '21년 신규, 50개 지원목표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114(내선 4)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알려줘요!



Q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이란 무엇인가요?

A 방역물품 중 중소기업에게 경쟁력이 있고 신속한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으로 이런 제품을 발굴·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Q 의료기관 수요발굴 R&D 지원은 무엇인가요?

A 현장 의료진, 봉사자들이 착용 또는 사용한 방역물품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R&D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장성이 유망한 해외인증 선별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예정)기업

자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 부터 재가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 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해외인증 및 규격을 선정
-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 방식
해외인증 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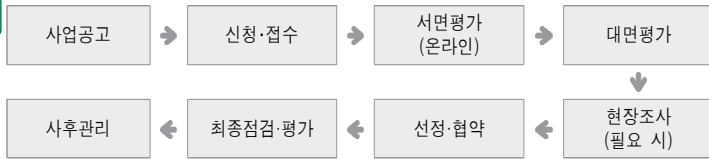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R&D 선정평가)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인증획득의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01.25억원(신규 31.5억원, 21개 과제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3, 0710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알려줘요!



Q 수출시 해외인증규격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예,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수출시 CE, UL 등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 안전, 위생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술 인증제도(국가인증, 강제인증 등)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해외규격인증의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A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품 생산 전 해외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의 신속한 제고를 통한 강소 100 후보기업군 육성

지원대상

- (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 전략품목 內 요소기술을 수행할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과제 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

지원제외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①1단계(과제기획) → ②2단계(전략협력R&D)
- 1단계 : RFP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등 사업기획 구체화 지원
- 2단계 : 1단계 지원기업 중 사업기획의 충실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2단계 지원

〈지원내용 및 한도〉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과제	1단계 과제기획	3개월, 15백만원	100%	지정공모
	2단계 협력R&D	최대 3년, 12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운영기관 운영비	기관당 3억원	100%	-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예산 및 지원과제 수에 따라 조정 가능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1단계(과제기획) 요건검토 →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 구체성,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운영기관의 RFP 적합성 검토를 통한 추천과제에 한하여 1단계 신청 가능
- (사업화R&D) 대면평가 → 최종선정
 - 기술개발의 적정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지원규모 ● 48억원(1단계 4억, 2단계 38억, 운영기관 6억)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0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42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려줘요!



Q 1단계 과제기획 선정기업은 모두 2단계 전략협력 R&D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 과제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20개 내외 과제가 2단계 전략협력 R&D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1단계 신청없이 바로 2단계(전략협력R&D)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단계(과제기획) 수행 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제조현장의 데이터 측정·처리·분석이 가능한 센서기술개발

제조현장의 데이터 측정과 전송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래공장 핵심 경쟁력 확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기술개발)과 공동개발기관(실증)이 컨소시엄 구성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최대 2년, 6억원 이내(정부지원금 비율 80% 이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조정

- 제조 현장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과 자동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센서 개발)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열화를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는 센서 개발

* (예시)고온·고압·미세 변동을 감지하는 극한환경 센서, 비전검사를 위한 영상 센서 등

- (센서의 지능화)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전처리(자동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

* (예시)데이터 전송 지연 방지기술, 센서의 데이터 분석기능 및 통신모듈 접속 등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과제별 공고 참조)

● 추진일정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21년 1월	'21년 2~3월	'21년 3월 ~ 5월	'21년 6월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 평가절차 : 서면평가(개념기술서) → 대면평가(사업계획서) → 최종선정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관련 근거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제출서류

처리절차



- (주관기관) 과제신청 중소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규모

- 106.25억원(신규 56.25억원, 계속 5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 044-865-9848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2-388-0883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스마트센서란? 기존 센서에 데이터 처리, 자동보정, 자가진단, 의사결정 기능이 결합된 고기능, 고정밀, 고편의성, 고부가가치 센서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 지원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AI공동활용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의 전문 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

* AI공동활용모델(예시) : 수요공급예측,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머신비전, 예지보전

지원대상

- 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대학교, 중소기업과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 중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파산·회생 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지원
- (솔루션 기술개발) 플랫폼 목적과 연계한 솔루션 기술개발

* 공동활용플랫폼 : AI표준모델들의 개발·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되는 기술

** 플랫폼 특징

- 범용·응용성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
- 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 가능 기술
- 통합·파생성 : 단위요소 기술이 아닌 요소 기술의 통합된 형태로서 추가적인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파생될 수 있는 기술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조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년, 24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21년 2월	'21년 2월	'21년 3월	'21년 3월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 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절차



지원규모

- 44.51억원(신규 44.51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895
- 홈페이지 : 중소기업기술폭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컨소시엄의 구성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R&D를 주관할 연구소, 대학교 또는 중소기업이 플랫폼 및 솔루션 기술개발을 수행할 중소기업, 연구소 또는 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합니다. 단, 컨소시엄 구성 시, 1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지원

국민생활 밀착공간 및 중소형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개선효과 증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② 미세먼지저감 관련한 대응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고정오염원,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및 비산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생활밀착공간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의해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음식점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총 27개 시설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략분야(미세먼지 탐지·정화·관리·저감기구)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최대 1년, 2.5억원 이내	80% 이내	자유공모 (분야지정)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처리절차**지원규모**

- 75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 ~ 0326
- 전용정보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규모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미세먼지 배출업소 규모(1종~5종)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1종(80톤 이상), 2종(20~80톤), 3종(10~20톤), 4종(2~10톤), 5종(2톤 미만)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10톤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Q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등을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상세히 표기할 예정이며, 공고문은 '20년 12월말 중소벤처기업부 R&D 통합공고문에 수록된 일자를 기준으로 www.smtech.go.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공유·확대 촉진

지원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장비활용 종합포털)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지원제외 기업

- ▶ 부모 또는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 사업공고문에 명시한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전문인력 및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의 70%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운영기관) 운영기관의 장비·사업홍보비,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 이용실적에 따라 연구기반 활용촉진비 지급
- (지원 내용) 장비 이용료 총액의 70%

내역사업명	지원비율	지원한도(정부지원) (A)	기업부담금 (B)	바우처 발행한도 (A+B)
기업선도형	70%	10,000천원	4,285천원	14,285천원
기반플러스형	70%	50,000천원	21,428천원	71,428천원

* 지원한도 내에서 장비이용에 필요한 만큼의 바우처를 분할하여 구매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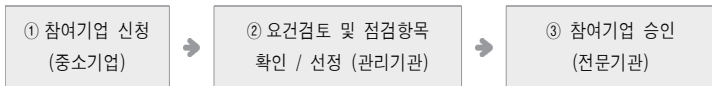
- 연구기반공유시스템(rss.auri.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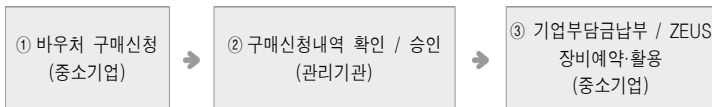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신청 완료 후 요건검토 완료까지 7일 내의 소요
- 참여기업 신청·승인



● 바우처 이용



지원규모 ● 83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6867

● 전용정보사이트 : rss.auri.go.kr(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기업선도형과 기반플러스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기업선도형은 단순 시험·분석서비스를 포함하여 장비이용료를 지원하지만 기반플러스형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첨단 연구장비 및 종합인프라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인증·납품 용도의 시험·분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운영기관의 전문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대학·연구기관 등은 각 기관의 특징점을 활용하여 종합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내용, 활용조건, 이용금액 등을 명시한 서비스 카탈로그를 구성하게 됩니다. 서비스의 종류에는 장비교육, R&D컨설팅, 장비활용결과분석서비스, 출장 서비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의 성장과 제품·공정·서비스 등 혁신이 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및 소상공인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제·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제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에 명시

지원내용 ● (BM개발과제) BM기획(3개월) + BM개발(2년)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과제) 진단·컨설팅(2개월) + 기술개발(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및 판로 확보를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BM개발	BM기획	3개월, 14.5백만원	65% 이내	자유응모
	BM개발	2년, 4억원		
생활혁신 기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75% 이내	
	기술개발	6개월, 30백만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추후 공고 참조)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등

처리절차

〈 BM개발과제 〉



〈 생활혁신개발과제 〉



지원규모

- 104개 과제 내외, 18.4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 042-481-396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 0346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tech.go.kr(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중소기업 R&D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대상

- (혁신제품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성공(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혁신제품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성공(완료) 판정 이력이 없는 기업
- ▶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 ▶ 성공(완료)판정 받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제품을 신청한 경우

지원내용

-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정부, 공공기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수익계약 가능(3년간)

- (혁신제품 시범구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 활용을 위한 구매 지원

신청·접수

- (혁신제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21.1월 중 공고 예정)

심사·평가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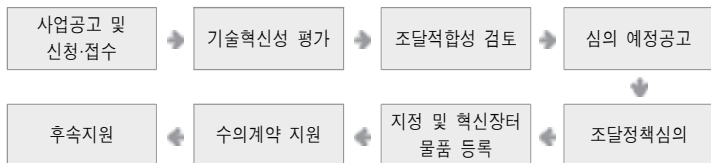
-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의
- 시범구매 적합성, 파급효과 등 수요매칭심사 및 시범구매 적정성 검토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제품소개서, 생산설비소개서, 제품규격서, 기타 관련 서류

처리절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규모

- 14.16억원 (혁신제품 지정 4억원, 혁신제품 시범구매 총 10.16억 원)

*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100개 내의 지정 예정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국번없이 1357, 042-388-0241~0242
- 홈페이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공고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나라장터를 통해 해당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스마트화를 위한 ICT솔루션 개발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 통합 분류체계' 내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업 영위 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 ▶ 국제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상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 그 외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 ▶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또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신청과제가 기 개발/기 지원된 경우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등 지원(2년간, 최대 5억 원, 총 사업비의 75% 이내)
- 비대면·연택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한 ICT 솔루션 중심으로 지원
 - * (예시) 자연어 처리(챗봇), Wifi6(고속영상통신 솔루션), 기계학습(업무 자동화), 가상·증강현실(재택 근무·온라인 서비스), 컴퓨터 비전(OCR), 블록체인(거래) 등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www.sr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1년 이상 과제인 경우, 사업수행 1년 후에 진도점검 실시

지원규모

- 35개 과제(상반기 24, 하반기 11) 내외(예산 58.75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혁신사업실) : 042-388-0114(내선 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상,하반기 모집공고 중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오,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솔루션 도입 지원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등 서비스 혁신 도모

지원대상 ● 국내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국제·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유희·향락업
- ▶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 ▶ 숙박업 및 주점업

지원내용 ● 기업혁신,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등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AI, 빅데이터, IoT,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 구축
 - *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
 - *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
 - *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이터마이닝

지나해와 달라진 내용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www.smt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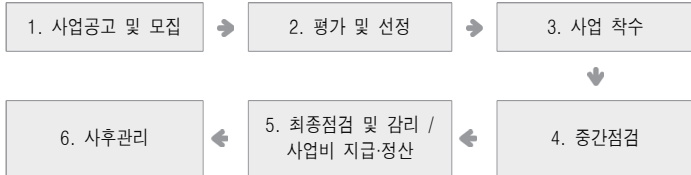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현장실사, 대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 전문가평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예산 9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혁신사업실) : 042-388-0114(내선 5)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대출금리

알려줘요!



Q

기 구축한 솔루션을 업그레이드(고도화) 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가능하지만,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이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는 사업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80개사 내외)
- 사업화 지원
 - 개발기술의 시장성 보안을 위해 기획지원,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 등 분야별 2개 이상 항목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32개사 내외)

분야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중분류	
기획 지원 (3개)	사업화 기획	기술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등을 위한 컨설팅
		경영컨설팅	경영전략, 운영, 인사, 재무, 조직 등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 규모경쟁사 조사, 제품화양산, 판로개척,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기술 지원 (2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상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제품개선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라팅 설계 등 포함)
	성능테스트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인증, 검증, 평가 * (예시)고객 사용에 맞는 품질평가, 신뢰성 평가 등
마케팅 지원 (3개)	시장 테스트	시장조사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 * (예시)시장시뮬레이션, 고객패널조사, 시장조사분석 등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판매 전략, 가격전략, 고객관리, 매장구성전략, 소비자전략, 유통전략, 제품전략 등 수립
		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및 시장(반응)조사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최대 1억원, 20개사 내외)
 -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기술이전
 -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NTB(기술은행)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신청·접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류평가 → 기술사업화 진단 * → 발표평가
 - * T(Technology) : 기술완성도 , M(Marketability) : 시장성 , C(Capability) : 사업화역량 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 사업화 지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대상기업 추천 →

신청·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기능개선 지원

지원규모

● 41.2억원 (기술사업화 진단 80개사, 1.2억원, 사업화 지원 32개사, 20억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20개사, 20억원)

* '20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202개사, 2억원), 사업화기획(40개사, 2억원), 사업화 지원
(32개사, 17억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20개사, 20억원), (총예산 41.0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진단기술처 : 055-751-98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홈페이지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참조

알려줘요!



Q

정부 R&D성공판정기술과 특허등록 모두 보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정부R&D성공 판정 기술 또는 특허 등록 둘 중 하나의 자격요건만 만
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화(양산화, 매출)가 진행되지 않은 기술만 신청 가능합니다,

Q

특허 출원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업신청기간 내 특허등록을 완료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더불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통상실시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04

인력 양성

- | | | |
|----|-------------------------|-----|
| 01 |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 210 |
| 02 |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육성) | 213 |
| 03 |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중소기업 계약학과) | 216 |



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중심교육을 통한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채용연계

산업 각 분야의 소질과 적성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해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으로 취업 연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분야의 차별화된 인력 양성이 가능한 특성화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내용

- (교육지원) 교수학습자료 개발, 프로젝트형 수업, 진로지도 프로그램 등을 Module별로 지원
- (취업지원) 중소기업 채용 협약「취업맞춤반」지원
- (산학연계지원) 기업체 CEO, 해당분야 기능장 등 외부 전문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채용 연계지원

참여방법

- '21년 1월 예정
- (학교)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계획 및 체계의 합리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평가
- (기업) 참여 희망 기업은 특성화고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통한 온라인신청)

참여기업혜택

-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 협약(학교-학생-기업)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우대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실시

추진절차

절차	내 용	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 공고 사전설명회 개최 	1월
↓		
사업신청 (학교→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학교) 당해연도 신규 참여학교 서류 신청·접수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1월
↓		
선정 및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학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기존학교) 완료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발표 평가 및 선정 	2~3월
↓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착수 (참여학교↔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사업비 확정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4~5월
↓		
사업비교부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별 총 사업비 교부 	4~5월
↓		
중간점검 (지방중기청→참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학교 사업 운영현황 중간점검 실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9월
↓		
사업비 정산 (중진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정산기관 선정 및 참여학교 사업비 정산 실시 	차년도 3월
↓		
결과보고 (중진공→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연도 특성화고인력양성 사업 결과보고 	차년도 4월

지원규모 ● 215개 특성화고('20년 예산 : 341.1 억원)

* '20년 지원현황 : 215개 특성화고, 346.3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6811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65, 9822, 9862~63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참고

Q&A

알려줘요!



Q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성화고인력양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취업 예정기업의 맞춤 교육을 수행하고 취업을 확약하는 취업맞춤반, 기업의 애로과제를 학생의 과제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1팀-1기업 프로젝트, 산학연계 전공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Q 취업맞춤반에 참여할 시 중소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A 채용 이후 추가 교육비용 없이 맞춤형 인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우선선정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 선정평가시 가점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용어설명

※ 취업맞춤반

- 특성화고생을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생, 특성화고가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구분	내 용
학교	협약체결 중소기업의 요구기술을 정밀 분석하여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협약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학생	기업 맞춤형 교육 이수 이후 졸업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 취업
기업	학교가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무 분석시 참여하고 참여학생이 취업맞춤반 수료 후 채용

- * 3자협약 : 학교-학생-중소기업이 취업약정 3자협약을 맺고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현장맞춤 교육 실시 이후 채용 연계되는 프로그램(선매칭-후교육-취업)
- * 2자협약 : 학교-중소기업이 취업약정을 통해 협약기업이 요구하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맞춤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채용연계(선교육-후매칭-취업)

02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육성)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교육과정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과정(2+2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사업단 : 전문대(1개) + 특성화고(N개) 컨소시엄 사업단
- 중소기업 :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중소기업
- 학생 : 사업단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내용

- 사업단(전문대 - 특성화고)이 현장 맞춤형 연계교육과정을 정규과정과 별개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지원
- 참여학생은 특성화고 2학년 진학 시 선발하여 대학 졸업시까지 4년간 교육을 받은 후 협약기업으로 취업하게 되며, 산업기사 취득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대체복무 가능
- 중소기업은 사업단 운영 전문대와 협의하여 기술사관 프로그램(교육과정 설계, 현장체험, CEO강의, 인력 채용)에 참여 가능

대 상	지 원 내 용
사업단	· 교육연수비, 교육과정 개발비, 강사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운영비 등
참여학생	· 직업교육, 연계대학 진학, 졸업 후 협약기업 취업 등
협약기업	· 우수 기술인력 확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등

기업참여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 사업단 중 양성분야가 일치하는 사업단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참여 및 졸업예정자 채용협약 가능
 - * 사업단 현황 :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기술사관육성사업 사업단 정보'에서 최신정보 확인 가능

참여기업혜택

- 기술사관 육성사업 참여학생과 채용조건 3자 협약(학교-학생-기업)을 맺은 후 참여기업 근무시 병역지정업체 신규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자격 요건 부여
 - * 병역지정업체 신규 지정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은 매년 6월 실시

지원규모

- 9개 전문대학('21년 예산 2,898백만원)

* '20년 지원현황 : 12개 사업단, 18개 특성화고 지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6811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 055-751-9828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 Q** 기술사관육성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어떠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나요?
- A** 기술사관육성사업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1순위 배정 혜택이 있습니다.
- Q** 중소기업에서 기술사관육성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기술사관육성사업단을 운영중인 전국 사업단 중 집중 양성 분야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단과 채용조건 3자협약을 한 후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맞춤교육, 1팀-1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Q** 참여학생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A** 기술사관 육성사업 졸업자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협약기업으로 취업할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보충역은 산업기사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기술사관 운영 현황 (2020년 기준) 〉

구분	전문대학		특성화고
	대학명	양성분야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의료정보시스템	은평메디텍고, 경민IT고
부산울산	울산과학대학교	환경화학공업	-
	동의과학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	동의공고, 해운대공고, 부산공고, 경남공고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전자통신	울산공고, 서부산공고
대구경북	영남이공대학교	기계	영남공고
광주전남	순천제일대학교	자동차기계	-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금형디자인	평촌공고, 산본공고
	두원공과대학교	기계	두원공고, 삼일공고, 이천제일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이동통신	양영디지털고, 상일미디어고
충남대전	대덕대학교	정밀기계공학	충남기계공고
	백석문화대학교	비즈니스콘텐츠	-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메카트로닉스	한림공고

12개 사업단(전문대 12개 + 특성화고 18개)



선취업-후진학 기반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 우수인재 양성

대학과 협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을 설치하고, 협약 기업의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가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직무역량 향상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대상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 단,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고등교육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 결과 ‘불인정’ 대학은 제외
-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블링 및 베테링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
- (학생) 현 근무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재교육형) 또는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채용조건형)

학생 요건

- ▶ (재교육형) 해당기업 6개월 이상(박사과정은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 ▶ (재교육형 동시채용) 입학당시 해당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학기개시일 기준,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함
- ▶ (채용조건형)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졸업수료일 기준 취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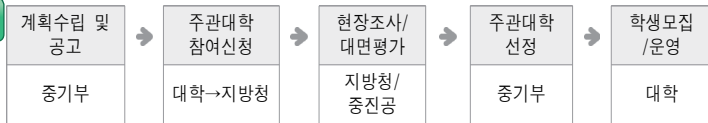
지원내용

- (학생)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지원
 - 재교육형 : 전문학사·학사과정은 등록금의 85%, 석·박사과정은 65% 이내 지원
 -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동시채용 :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 학과운영비로 학기당 3500만원 지원
- (기업) 근로자 역량 향상, 장기재직(졸업후 의무근무 1~2년)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 인재육성형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 정책자금 신청시 금리우대(1인 0.1%)
 - 성과공유 기업지정 신청시 가점 부여

신청·접수

- (대학) 신규 주관대학 모집공고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 (학생 및 기업) 봄 학기 모집기간 11~2월, 가을학기 모집기간 6~8월에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 주관대학에 신청서 제출
 - 세부 학사일정은 학교별(학과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학과로 문의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49개 주관대학 70개 계약학과 및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학과운영비 및 등록금 등 지원('21년 예산: 119억원)

* '20년 지원현황(가을학기 기준) : 47개 대학, 65개 학과, 참여학생 1,950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042-481-681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818)
- 전국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현황

* <http://sanhakin.mss.go.kr> → 정보마당 → 참여학과현황 → 계약학과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05

인력유입 촉진

01	내일채움공제	220
02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22
0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224
04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양성	226
05	지역 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229
06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231
07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233
08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235
09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237
10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239



중소·중견기업에 5년 재직한 핵심인력(근로자)에게 2천만원 이상의 성과보상금 지급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학력, 경력, 자격무관)으로 직무기여도가 높아 사업주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요건

- 가입 기간 : 5년 이상
- 공제 납입금 :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적립
 - 『핵심인력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최소 가입금액 : 5년간 2,000만원이상
- 공제 금리 : 변동금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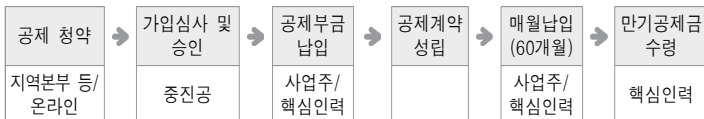
가입혜택

- 중소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알려줘요!



Q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핵심인력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상시 근로자로서 학력, 연령, 자격, 경력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자, 실질 경영주, 일용직 근로자 제외)

Q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구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가입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 가입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 방문 → 청약서 작성·접수

* 온라인 가입 : 홈페이지(www.sbcplan.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서 작성·접수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상의 목돈마련 지원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3천만원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상 지원업종 영위기업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핵심인력)
 -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15세 ~ 34세 이하) 근로자
 - 군 복무기간 만큼 추가 인정(최대 39세)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부동산업, 주점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 휴·폐업,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가입요건

- 가입 기간 : 5년
- 공제 납입금
 - (청년) 5년간 72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12만원 x 60개월)
 - (기업) 5년간 1,200만원 이상 적립 (최소 월 20만원 x 60개월)
 - (정부) 3년간 최대 1,080만원(정액) 적립(3년간 7회 분할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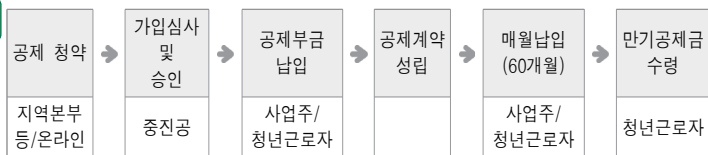
신청·접수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납입금에 대하여 손금(필요경비) 인정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납입금액의 25%)
- 핵심인력
 - 5년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납입금의 소득세 50% 감면

가입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업·신한·우리은행을 방문하여 공제계약 청약
-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공제계약 청약 신청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65
- 중소기업진흥공단 성과보상사업처 : 055-751-2972~6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www.sbcplan.or.kr
-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 1588-6259

0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인력을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이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 취업 및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개인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설립등기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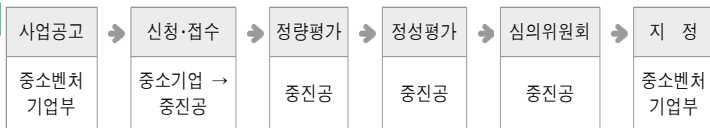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통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테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지정혜택 ●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중진공 융자잔액 한도 상향 및 매출액 한도 조건 예외 적용
- 중진공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감면
- 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 인재육성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주요 일간지 보도 등 홍보

처리절차



지정기준 ● 정량·정성지표(100점 만점)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지정

평가방법 ● 정량·정성평가 : 신청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팀이 직접 방문하여 정량·정성지표를 평가하고, 제출했던 자료를 점검

● 평가 지표

부문	평가지표	증빙서류	구분	배점
CEO의 의지 (10)	1-1. 목표 및 가치 공유 수준	방문평가	정성	5
	1-2. 우수인재 확보 노력	방문평가	정성	5
이익창출능력 (10)	2-1. 매출액 증가율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정량	5
	2-2. 매출액 영업이익률	직전 3년간 국세청 홈택스 발급 재무제표	정량	5
성과공유제도 (40)	3-1. 일자리 양 증가수준	고용영향평가지표 (별도 제출서류 없음)	정량	20
	3-2. 중소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실적	성과공유 실적	정량	15
	3-2. 미래성과공유협약	성과공유협약서 온라인 제출 (https://sanhakin.mss.go.kr)	정량	5
근무환경 (25)	4-1. 임금 수준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정량	10
	4-2. 복리후생 수준	방문평가	정성	15
교육훈련 (20)	5-1. 교육훈련비	재무제표 등 교육훈련 관련 지출 증빙서류	정량	10
	5-2. 교육훈련 인프라	방문평가	정성	10
합 계				100

* 평가 지표는 공고시 변동 될 수 있음

신청·접수 ● 중소기업창업부 공고 후 신청 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or.kr) 온라인 신청 접수

지원규모 ● '21년 250개사 내외(연 예산 1.5억원)

* '20년 지원현황 : 280개사 지정

문의처 ● 중소기업창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6814

● 중소기업창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 : 055-751-9867



기업 현장중심의 고급연구인력 양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양성 모델 구축

지원대상

- 대학원(학과)-기업(기업부설연구소)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중소기업 + 대학원으로 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총괄책임(주관기관)은 대학원에 부여
 - (연구인력) 최소 10명 이상의 대학원생 참여 조건(산학 공동 선발)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지원내용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양성 모델 구축
 - 산학 프로젝트 수행,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전 과정에 기업 참여를 보장
 - 기업수요에 따른 산학 공동 프로젝트 수행으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참여 학생의 실무 능력 향상 유도
 - 논문 부담 없이 기업이 제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학위 부여(프로젝트 학위제 운영)
 -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실습장비 및 재료비,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등 지원
 - 컨소시엄당 연간 3억원내외 최대 5년 이내 지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21년도 4개 컨소시엄 신규선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 전산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세부내용 및 신청서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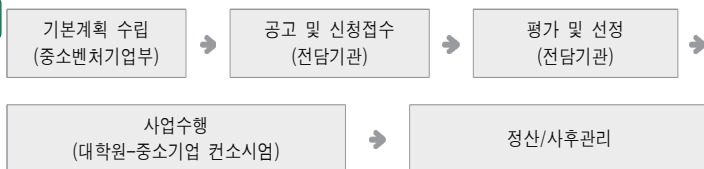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심의위원회
- * 사업목표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역량 등을 종합평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절차



지원규모

- 전국 10개 컨소시엄(중소기업-대학원 컨소시엄) (예산 30억원)
- '20년 지원현황 : 전국 10개 컨소시엄(예산 30억원)

문의처

- 중소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24
- 한국산학연합회 인력사업팀 : 042-720-3332
- 한국산학연합회 홈페이지 (plus.auri.go.kr)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Q 사업에는 학부생도 참여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동 사업은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부생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Q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되나요?

A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대학원과 공동으로 산학공동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요자 기반의 산학협력

지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대학간 교육 및 취업을 상호연계하여 산학협력 및 취업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컨소시엄 등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 공대 재학생의 기업현장 기반 R&D 실무역량 향상과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층형 R&D 전문인력 양성기반 확충 지원

- * 지원기준 : 인턴기간(4개월)동안 인턴 교육비 지원(150만원×4개월), 수료시 전공학점 12학점 내외 제공 (학교 내부기준에 따름)
- * 산업인턴 : 공과대학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ICT관련학과 제외)
- * 참여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정부 R&D사업 수행 중소·벤처기업으로 인턴에게 R&D 분야 직무 부여가 가능한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
 -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처리절차



신청·접수 ● 기업모집은 권역별 주관 대학교에서 별도 공지하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규모 ● 대학 컨소시엄 6개(예산 18.3억)

- * '20년 지원현황 : 대학 TP-컨소시엄 등, 총 6개 과제(예산 18.3억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 042-481-4424
- 한국산학연합회 인력사업팀 : 042-720-3332
- 한국산학연합회 홈페이지 (plus.auri.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 참조

알려줘요!



Q 산업인턴 참여학생 전공 제한이 있나요?

A 네, 공대소속 4학년생 및 졸업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산업인턴 현장실습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해당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 R&D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공공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 (인력)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파견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추후 변동 가능, '21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동 파견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계약 종료된 기업은 제외(단, 정부 지원종료 후 파견인력을 기업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 중인 기업은 재신청 가능)

지원내용

- 3년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기업별 1명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추가연장: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신청·접수

- 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은 변동 가능, '21년 공고문 확인 필요

심사·평가 주요내용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파견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 연구인력 130여명 내외(예산 71.7억원)

* '20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130여명(예산 71.7억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287-7388, 7386, 7382

알려줘요!



Q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인력을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파견가능한 적정 연구 인력이 없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사업에도 신청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 경우 지원 자격을 유지합니다.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채용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 추후 변동 가능, '21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최대 3년, 2명 이내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 기준연봉(정부지원액) : 학사 3,000만원(1,500만원), 석사 4,000만원(2,000만원), 박사 5,000만원(2,500만원)(변동가능, 자세한 사항은 '21년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시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21년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채용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 연구인력 693명 내외(예산 139.2억원)

* '20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768여명(예산 157.8억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 02-3460-9130, 9082, 9090, 9124, 9171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A

참여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공급

중소기업에서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경력을 보유한 연구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급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확대

지원대상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인력) 이공계 출신,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 경력자 채용지원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기업의 부도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신창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추후 변동 가능, '21년 공고문 확인 필요

유의사항 등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동 사업 지원인력은 타 정부지원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 불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지원내용

- 최대 3년, 기업별 1명,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5,000만원 한도)

신청·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공지사항 확인 후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방법 변동 가능, 자세한 사항은 '21년 공고문 참조

심사·평가 주요내용

- 신청서류 서면평가
* 기업의 재무상태 및 R&D 투자, 연구인력 활용계획, 고용영향평가점수 등을 종합하여 선정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기업현황자료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및 협약



채용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 연구인력 278명 내외('21년 예산 102.9억원)

* '20년 지원현황 : 연구인력 229여명(예산 84.4억원)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6009-3394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협력팀 : 02-3460-9123, 9167, 9172, 908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2021년 지원시책」 참조

Q&A

알려줘요!



Q 채용지원을 받은 인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자진퇴사한 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채용지원사업을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지원인력의 경우 한 번 사업에 참여한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Q 지원받는 인력이 타 정부사업 R&D에 참여가 불가능한지?

A 참여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인력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비율만큼 참여율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주택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주거생활을 안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캠핑 및 베틀업, 무도장 운영업(부동산업의 경우 '21.6.9부터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신청·접수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or.kr)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추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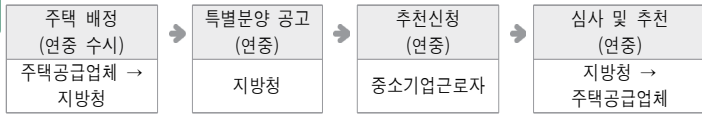
- (확인)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여부 등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여부
- (추천) 대상자 자격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기간·수상경력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업 주체에게 추천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 홈페이지 참조

처리절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1619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Q 특별공급 대상 모집공고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주택건설지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인력
지원통합시스템(<http://sanhaarin.mss.go.kr>)에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인 시스템에서는 전 지역 모집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복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운영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및 발급

지원내용

-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 상품물 등 5개 분야에 대해 제휴 기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에서 온라인 가입 신청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 이용안내 참조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 소상공인확인서 등

처리절차

가입 신청 → 가입 승인 → 전체 임직원 정보 등록 → 서비스 이용

- 중소기업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기업에서 임직원 정보를 등록하면 임직원 별로 개별 아이디를 발급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 042-481-1664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복지팀 : 02-6050-3455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 참조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C H A P T E R

III

경기도

01. 시설 및 장비지원

02. 기술개발지원

03. 바이오 기술지원

04. 사업화지원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01

시설 및 장비
지원

01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46
0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247
03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남부)	248
04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북부)	249
05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50
0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51
07	e-safe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지원	252
08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253
09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사업	254
10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	255
11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256
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57
1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지원	258
14	경기도 3D프린팅 통합 운영 센터	259
15	3D프린팅 기술지원	260
16	바이오·제약기업 전문분석·시생산지원	261

02

기술개발
지원

01	기술개발사업	264
0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265
03	소부장 대중소기업 기술교류지원	266
04	소부장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267
05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	268
06	나노 중소기업 지원	269
07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	270
08	품질경영활동 지원	271
09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사업』	272
10	부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273
11	글로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274
12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 지원사업	275
13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276
14	드론활성화 지원사업	277
15	가구 융복합 디자인지원 사업	278
16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279

03

바이오 기술
지원

01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지원	282
02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283
03	비임상 유효성 평가 및 전문 연구기술 지원	284
04	초고속대용량 기능성소재 발굴지원사업	285
05	기능성 천연물 유래 제품 전문 연구기술 지원	286
06	경기뷰티소재은행 구축사업	287

04

사업화
지원

0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290
02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291
03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292
0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293
05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294
06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295
07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296
08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297
09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	298
10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299
11	민·관 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사업	300
12	게임오디션 개최	301
13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육성	302
14	가구인증 사업 지원	303
15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304
16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305
17	섬유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306
18	원단 및 의류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307
19	반려동물용품 산업 육성	308
20	제조-서비스업 융복합사업 육성지원	309
21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	310
22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311
23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지원	312
24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	313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01

시설 및 장비 지원

01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46
02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지원사업	247
03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남부)	248
04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북부)	249
05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50
0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51
07	e-safe 환경안전기술지원단 지원	252
08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253
09	영세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사업	254
10	악취방지사설 설치 및 개선 지원사업	255
11	대기방지사설 유지관리 지원	256
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57
1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지원	258
14	경기도 3D프린팅 통합 운영 센터	259
15	3D프린팅 기술지원	260
16	바이오·제약기업 전문분석·시생산지원	261

01 I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목적

- 공장 밀집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중·소기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조업)
 - * (기반시설) 중소기업 밀집지역(참여기업 10개소 이상)
 - * (노동환경)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50억원 이하, 종업원 200명 미만
 - *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 (작업환경)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 소기업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10인 미만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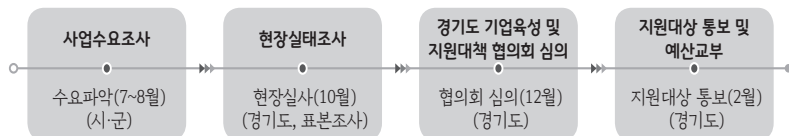
● 지원내용

구 분	지원한도(도비)	지 원 내 용	신청·접수
기반시설	(2억원이내)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시·군 기업지원과
노동환경	(15백만원이내)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식산업센터	(30백만원이내)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등	
작업환경	(10백만원이내)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개보수,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신청방법

- 시·군 기업지원 부서 접수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접수기간 : 7~8월경 (각 시·군 홈페이지 사업공고 페이지 참조)

● 지원절차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기업SOS팀장	양기석	031-8030-3031
		주무관	김병구	031-8030-3034

02 I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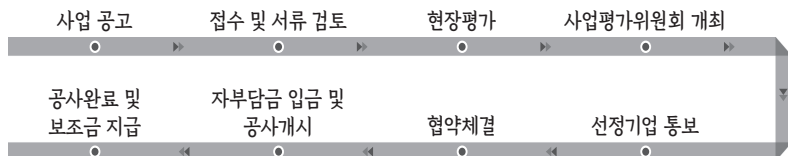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 신청방법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90% 지원, 자부담 1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문 의 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장	김경호	031-8008-3450
	환경안전관리과	주무관	장인애	031-8008-3552

03 I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남부)

● 사업목적

- 제조회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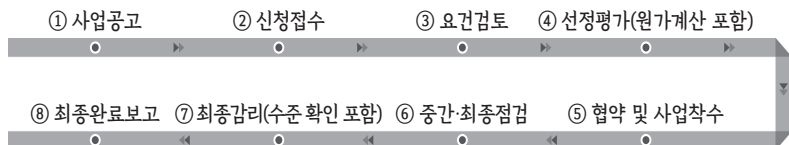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681개사(전국 3,300개사 내외) * '21년 사업공고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경기테크노파크 관할지역(경기 남부 21개 시·군*)
 - *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화성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하남시, 인천시, 시흥시, 광명시, 오산시, 광주시, 김포시, 여주시, 양평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 (<http://smart-factory.kr>)
 -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 지원절차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수준)	정부지원액 (기업당, 최대 50%)	스마트공장 스마트화 수준 정의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0.7억원	①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②중간1(실시간 모니터링), ③중간2(공정 최적화, 실시간 제어)
고도화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2억원	④고도(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 공장) 등 4 단계로 구분
고도화2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4억원	

* 2021년 세부내용은 추후 공고문 참조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과장	김재윤	031-500-3100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보급확산실			1644-1736

04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북부)

● 사업목적

- 경기북부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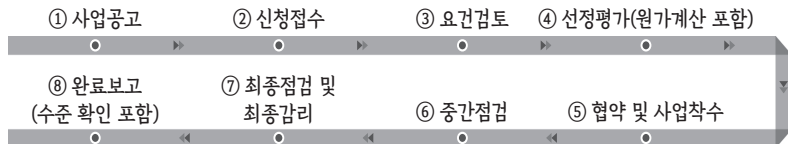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경기북부 10개 시·군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의정부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가평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 (<http://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구축) 스마트공장 미구축 또는 목표 수준이 중간1 이하이거나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현장 설비의 지원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0.7억원)
- 제품설계·생산 공정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
- (고도화1) 기구축한 기업 중 목표 수준이 중간1이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 지원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2억원)
- (고도화2) 목표 수준이 중간2가 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의 시스템의 고도화 및 현장 설비와 연계 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 지원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4억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팀장	이순근	031-539-5140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주임	한인택	1644-1736

05 I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사업목적

-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개선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소 제조기업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기간 : 1~3월경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공정자동화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
 - (솔루션 구축) 제품설계, 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장비 도입)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공장설비 및 품질향상을 위한 비전머신 등 장비도입 지원
- 컨설팅 지원
 - 전문컨설팅 기관의 컨설팅 방법론 및 도구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현장진단 및 구축과정 중 현장애로 해결 지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김홍현	031-8008-5346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주임	남도희	070-8895-7443



● 사업목적

- 대기업 주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대기업의 제조기술·성공노하우 확산 및 민간의 자발적 확산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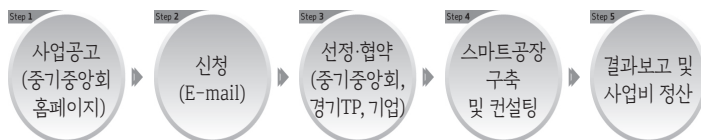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소 제조기업

●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제출
- 접수기간 : 1~3월경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제조현장 혁신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 별도 지원]
 - 기본 갖추기(제조혁신 마인드 제고, 5S3정, 품질/생산성 향상 등)
 - 물류/자재관리, 지그/대차 제작 지원 등(사업비 내 재료비 반영가능)
- 운영시스템·자동화 구축(ICT 연계)
 - 공장운영시스템(ME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 제조자동화 및 초정밀금형, 공정시뮬레이션 등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김홍현	031-8008-5346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주임	남도희	070-8895-7443

● 사업목적

- 도 내 소규모 사업장 및 중점관리업체의 안정적 환경관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환경기술지원으로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유도

● 지원대상

- 환경시설 운영·관리에 애로를 겪는 소규모 배출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 횟수가 많은 중점관리사업장

● 신청방법

- 도, 시·군, 보조사업자(방문 또는 FAX)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지원 접수 (도, 시·군 접수 시 보조사업자에게 이관)
-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선택, 기술지원 신청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사업장 신청 시 원하는 분야를 선택, 맞춤형 기술지원 실시
- 시설 보수·교체·증설 등 시설개선 필요시 자금지원사업 및 융자 안내
- 행정절차 안내, 법령 및 제도 개정사항 등 행정적 지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장	김경호	031-8008-3450
	환경안전관리과	주무관	오누리	031-8008-3556



● 사업목적

- 영세사업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을 통한 섬유, 피혁 등 오염부하량이 높은 경기 북부 주력산업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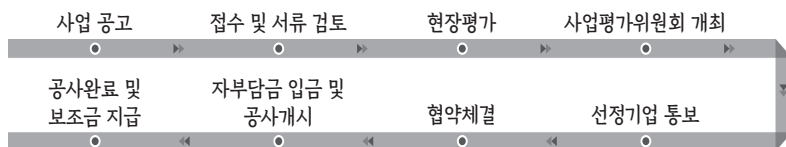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경기북부 소재 중소기업 중 환경오염 방지시설(수질)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 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 지원

● 신청방법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 1~3월경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70% 지원
 - 지원 대상 기업별 최대 30,000천원 이내 지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북부환경관리과	주무관	진근정	031-8030-4232



● 사업목적

- 대기오염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액체연료 사용시설을 청정연료(LPG, LNG, 전기 등)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등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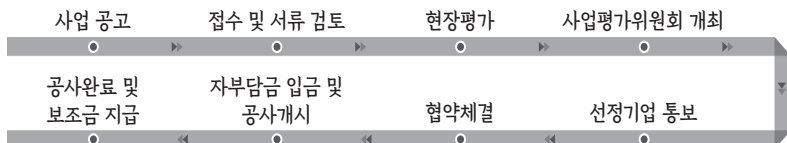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도내 액체연료 사용시설 설치사업장 중 청정연료(LPG, LNG, 전기 등) 전환을 희망하는 사업장

● 신청방법

-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 1~3월경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액체연료 사용시설 → 청정연료(LPG, LNG, 전기 등) 사용시설 전환 시 지원
 - 총 공사비용의 70%지원(최대35,000천원), 자부담 30%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북부환경관리과	주무관	진근정	031-8030-4232



● 사업목적

- 도내 악취배출시설 운영 및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지원을 통해 악취발생을 저감하여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민 생활환경 조성

● 지원대상

- 도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및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

● 신청방법

- 시·군 홈페이지 공고 확인 및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악취 오염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지시설의 신규 설치(증설 포함), 개선 비용 지원
 - 지원액(도비+시·군비) : 설치비 8천만원 이하, 개선비 4천만원 이하
 - ※ 분담비율 준수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예방 팀장	김장응	031-8008-5231
	환경안전관리과	주무관	방민주	031-8008-5233

● 사업목적

- 재정·기술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으로 산업부문 대기 오염물질(미세먼지 등) 배출저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으로 대기 4~5종 사업장 270개소
- 중점관리 사업장(민원다발, 법령위반 등), 환경자격증 소지자 미보유 사업장 등

● 신청방법

- 공모기간 중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해당 시·군(환경부서)에 신청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방지시설 성능검사(150개소)
 - 전문가 ·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방지시설 유량, 유속, 가스유출 여부 등 검사
- 방지시설 관리지원(270개소)
 - 기술 인력이 사업장을 정기적(월1~3회)으로 방문하여 방지시설 관리(컨설팅 병행)
 - ※ 관리지원 실시 사업장에 한하여 성능검사, 유지보수 실시
- 방지시설 유지보수(162개소)
 - 활성탄 · 충전물 · 여재, 후드 · 덕트, 송풍기 등 방지시설 핵심 소모품 교체(사업장 당 5백만원 한도/자부담 20%)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안전정책팀장	장미옥	031-8008-3553
		환경6급	최장영	031-8008-3454

1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사업목적

-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 질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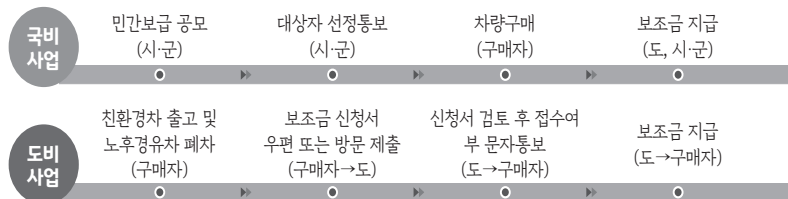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도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 신청방법

- (국비 사업)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작·판매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조·판매사에 제출
- (도비 사업) 친환경차(전기·수소) 출고 및 경유차 폐차 후 보조금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전기차 차종별 구매 보조금 차등 지원
 - (승용) 대당 최대 국비 700만원, *도비 200만원, 시·군비 400~500만원
 - (버스) 대당 최대 국비 8,000만원, 도비 2,400만원, 시·군비 2,400만원
 - (화물) 대당 최대 국비 1,600만원, 시·군비 500~900만원

경기도 도비 추가 지원 대상

- 1) 도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재직자) 중 당해 연도 친환경차(전기·수소 승용차) 신규 구매자
 - 2)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전기·수소 승용차) 신규 구매자
- ※ 상세 조건 및 규정은 도 홈페이지 내 친환경차 구매지원사업 공고 참고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	친환경차보급팀장	전정순	031-8008-4231
		주무관	김현준	031-8008-4241



● 사업목적

-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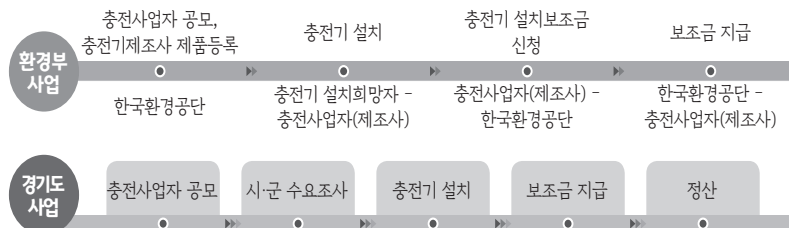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환경부사업)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운영 주체
- (경기도사업) 공공기관, 지자체

● 신청방법

- (환경부사업) 환경부통합포털(ev.or.kr)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충전기 열람 후 충전사업자 및 제조사에 설치신청
- (경기도사업) 해당 시·군 환경부서를 통하여 신청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환경부사업) 완속충전기 300만원~350만원/기
- (경기도사업) 완속충전기 300만원/기, 급속충전기 2,500만원/기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미세먼지대책과	친환경차보급팀장	전정순	031-8008-4231
		주무관	김현준	031-8008-4241

14 경기도 3D 프린팅 통합 운영 센터

● 사업목적

- 센터 보유 장비·설비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획설계·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대학 및 연구기관, 개인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3dgc.re.kr)에서 장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 통합운영 시스템(Single Window) 지원
 - 경기북부(의정부), 경기남부(수원광교, 판교)지역의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3D프린팅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3D 프린팅을 의뢰할 경우, 통합창구를 통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 출력력을 지원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고양, 양주, 남양주, 부천, 성남(이매), 의왕, 안산) 3D프린팅센터와 연계운영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	대리	이지승	031-710-8717



● 사업목적

- 3D프린팅 보급확산을 위해 상시 활용 가능한 3D 프린팅 장비실을 운영하여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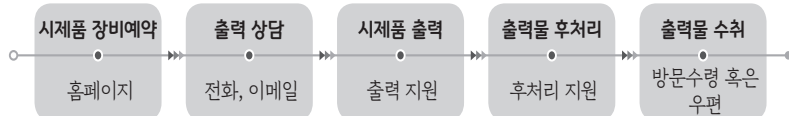
- 3D프린터 수요자(개인, 기업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 의정부 3D프린팅 센터 : 홈페이지(www.3dgc.re.kr)
 - 판교 3D프린팅 센터 : 홈페이지(www.devicelab.kr)
 - 안산 3D프린팅 센터 : 홈페이지(www.ideaall.net)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지원절차

- 장비활용



● 지원내용

- 센터 보유 장비·설비 등 인프라 활용하여 시제품 디자인, 출력서비스 지원
- 장비 현황
 - 의정부 19대(산업용 3, 보급형 16), 판교 6대(산업용 2, 보급형 4), 안산 13대(산업용 1, 보급형 12)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박주하	031-8008-534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미래기술진흥팀	대리	김명선	070-7775-9928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주임	금수연	031-500-3020

● 사업목적

- 도내 바이오·제약 산업체 지원을 위한 공공 첨단인프라(공동장비) 지원
- 전문분석시험 및 파일럿 시생산 지원으로 연구 및 제품화 지원
- 기술지도, 전문교육지원으로 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전문성 제고

● 지원대상

- 도내 바이오·제약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 신청방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www.gbsa.or.kr) 내 바이오센터 탭 → 장비사용신청/분석의뢰/연구개발지원
- 신청시기 : 상시 접수

● 지원절차



※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우 10% 감면

● 지원내용

구 분	세부내용
연구장비지원	- 공동 연구장비 직접활용 지원
전문분석지원	- 첨단인프라와 전문인력 활용 통합서비스 지원 (유효/유효성분 정성/정량분석, 단백질 특성분석, 천연물분석, 대사체, 구조분석 등)
시생산지원	- 파일럿 시생산시설활용 시제품 생산지원 (균주선별, 재조합단백질 생산 및 공정개발, 대량 분리 정제 등)
전문기술 지도	- 기업수요맞춤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주무관	김 란	031-8008-46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프라지원팀	팀장	정선호	031-888-6930

02

기술개발 지원

01	기술개발사업	264
0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265
03	소부장 대중소기업 기술교류지원	266
04	소부장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267
05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	268
06	나노 중소기업 지원	269
07	섬유분야 실용화 기술개발	270
08	품질경영활동 지원	271
09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닥터사업』	272
10	부리기업 경쟁력 강화 및 뿌리산업 육성 지원 사업	273
11	글로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274
12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 지원사업	275
13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276
14	드론활성화 지원사업	277
15	가구 융복합 디자인지원 사업	278
16	한독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	279

● 사업목적

- 기업수요자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
-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향상 및 사업화 촉진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기업·대학·연구기관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 연구 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 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 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신청방법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시스템(pms.gbsa.or.kr) 온라인 신청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 (창업분야) 업력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일반분야) 도내 중소기업의 단기 사업화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특화분야) - AI,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업 혁신 분야
 - 섬유·가구·식품 등 경기북부 특화산업 분야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주무관	이혜인	031-8008-463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팀장	정구문	031-776-4851

0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 기술 수요처에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제품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제품 구매 및 중기제품의 판로 확보

● 지원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의 구매의사를 확보한 경기도 내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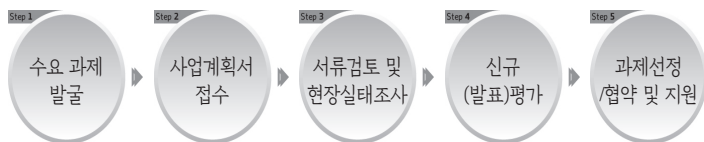
● 신청방법

- 홈페이지(pms.gbsa.or.kr) 온라인 신청 후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시기: 3월경 예정

● 지원규모

- 동반성장 기술개발 과제당 1억원 내외 도비 지원(1년 이내)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구매수요를 확보한 기술개발 과제로 도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한 과제 발굴 및 선정
- 중소기업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공정경제과	주무관	이지원	031-8008-229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과장	양경석	031-776-4853

03 I 소부장 대중소기업 기술교류 지원

● 사업목적

- 대기업의 미래 기술, 전략과 중소·중견기업의 보유기술을 공유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공급기업) 경기도에 소재한 소부장 매출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수요기업) 중소·중견기업과 기술교류를 원하는 중견·대기업
- 지원규모 : 매칭그룹 기술교류 비용 지원은 3개사 내외

● 신청방법

- 홈페이지(pms.gbsa.or.kr) 신청양식 작성 및 업로드
- 접수기간 : 2월 예정 (상세일정 pms.gbsa.or.kr에 공지)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 기술교류회 실시
 - 수요기업의 미래비전, 산업 트렌드, 신규개발계획 등 발표
 - 공급기업의 보유기술 발표와 상담을 통한 수요기업 유치
- 기술교류 비용 지원에 선정된 공급기업에 기술개발, 기술이전, 연구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총 사업비의 80%이내 지원(기업당 최대 7천만원), 기업부담금 20%(현금, 현물 포함)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신준섭	031-8030-301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과장	손충현	031-776-4855

04 I 소부장 정부사업 참여 컨설팅

● 사업목적

- 기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원시책 정보 및 제안서 작성 능력 부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기초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신청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소부장 매출이 50% 이상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홈페이지(pms.gbsa.or.kr) 신청양식 작성 및 업로드
- 접수기간 : 2월 예정 (상세일정 pms.gbsa.or.kr에 공지)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 교육(중소기업 지원 시책 동향 등), 기업진단(경영환경, 재무구조, 기술경쟁력 분석 등)
- 최적 지원사업 도출(정부사업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요 분석)
- 컨설팅(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 발표기술 연습, 심사별 대응전략 조언 등)
- 선정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선정기업 추진 지도, 미선정기업의 문제점 파악, 향후계획 제시 등)
- 기업당 최대 450만원 범위 내 컨설팅 비용 지원(자부담 없음)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박보임	031-8030-30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과장	손충현	031-776-4855

● 사업목적

- 도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공급 안전망 확보와 국산화 기술역량강화
-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기술 허브로의 도약발판 마련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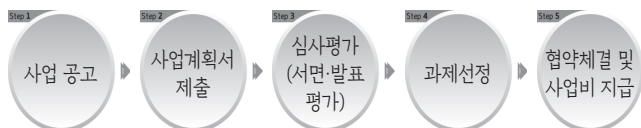
- 경기도 소재 기업·대학·연구기관 중심 지원

수행기관 구분		자 격
주관 기관	기업	경기도 소재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함)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대학/연구기관 (과제유형1에 한함)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단, 참여기관으로 경기도내 실시 기업 참여 필수
참여 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7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
	대학/연구기관	연구개발 관련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 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신청방법

- 사업공모 공고 후 사업계획서 및 제반서류 우편 제출(사업계획서는 온라인 제출)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http://aict.snu.ac.kr>) 사업공고문 게시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 도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중소기업의 수요연계형 연구개발과제 추진 지원
- 중앙분석지원실·소재부품 오픈랩 운영 및 문제해결사 제도를 통한 기술난제 해결 지원
- 「경기도소재부품장비산업상생포럼」 개최로 수요기업 기술로드맵 소개 및 수요·공급기업 연계지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주무관	임호윤	031-8008-4006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재부품장비 연구사업단	센터장	박상윤	031-888-9044

● 사업목적

- 공정·품질 기술개발(요소·부분 기술, 공정개선, 제품개선 등)
- 신뢰성인증·시험분석 지원을 통한 나노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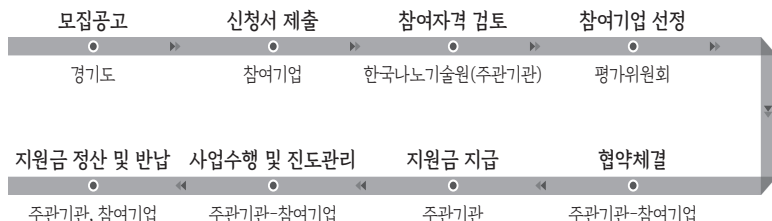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도내 나노관련 중소기업 26개소

● 신청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gg.go.kr) 또는 한국나노기술원(kanc.re.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로드 후 이메일 신청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나노소자 신뢰성시험 및 분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나노패를 활용한 수익창출형 업그레이드 기술개발 지원
 - 일반기업 15개 × 24,000천원 (기업 자부담 6,000천원/1개소)
 - 창업기업 11개 × 27,000천원 (기업 자부담 4,000천원/1개소)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주무관	노서영	031-8008-4571
한국나노기술원	기업지원실	실장	김성수	031-546-6522

● 사업목적

- 경기북부 특화산업(섬유·피혁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개발(R&D)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신소재, 고기능성 등) 실용화기술능력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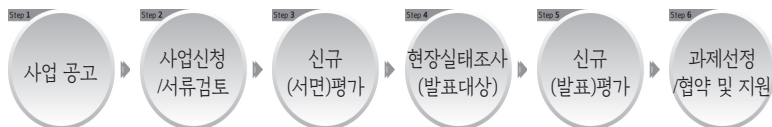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산·학 또는 산·연 등의 형태로 도내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비영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며 1개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 주관연구기관 : 도내 소재 연구기관 또는 대학, 참여기관/위탁기관 :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도내 소재 기업

● 신청방법

- 홈페이지(pms.gbsa.or.kr)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 경기도내 섬유(피혁 포함)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 자금지원
- 과제당 1억 원/년 이내(도지원금 70%), 민간부담금 30%(현금, 현물 포함)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경아	031-8008-272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과장	손충현	031-776-4855

● 사업목적

- 중소기업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정, 생산, 품질분야 혁신활동 컨설팅 및 품질관련 인증 획득 지원으로 품질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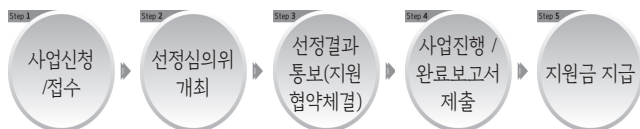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사업 시행기관* 홈페이지 공고 확인 후 이메일/우편 접수
 - 모집공고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및 사업 시행기관 홈페이지
 - * 사업 시행기관은 '21년 공모를 통해 선정 예정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품질경영 혁신지원 (전문가 컨설팅)	중소기업의 설계, 제조, 사용품질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요 혁신 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주제의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	기업당 10백만원 (자부담 총소요비용의 30% 이상)
품질인증 획득지원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기업당 5백만원 (자부담 총소요비용의 20% 이상)
품질분임조 활성화 지원	경기도 품질경영대회 개최(6월)	-
	분임조 역량강화 교육(5월, 7월)	

●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양영빈	031-8030-3044



● 사업목적

- 산·학·연의 연구자원(인력, 장비, 기술, 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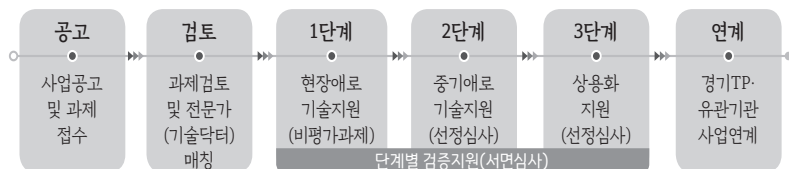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본사나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

● 신청방법

- 기술닥터사업 홈페이지(tdoctor.gtp.or.kr) 온라인 접수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단계	구 분	내 용	지원금액 (만원)	기업부담 (%)
1단계	현장애로 기술지원	기업의 기술적 애로, 제품/공정상 문제점을 기술닥터(전문가)가 최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애로기술해결	300 (이내)	없음
2단계	중기애로 기술지원	4개월 이내 현장기술지도(기술, 인력 지원)를 통한 시제품 제작이나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2,000 (이내)	총비용 의 20%
3단계	상용화 지원	1~2단계에서 도출된 성과물에 대해 6개월 동안 설계, 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전 과정에 대한 신규제품화 지원	5,000 (이내)	
단계별 검증지원	시험분석 지원 등	현장애로기술지원과 관련한 불량원인분석, 시제품 감증을 위한 시험분석지원, 설계/시뮬레이션, 목업(3D프린팅) 지원	500 (이내)	

● 문 의 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주무관	이성숙	031-8008-4616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책임연구원	천숙영	031-500-3333



● 사업목적

- 뿌리기술 개발·보급, 품질향상, 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등을 통한 영세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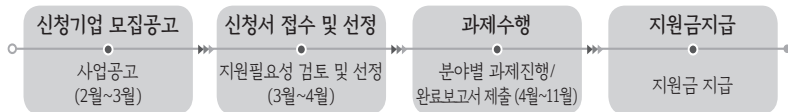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도내 31개 시군 뿌리기업(사업비 출연 7개 시군 포함)

● 신청방법

- 사업 공고문에 지정된 세부 단위사업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 / 경기테크노파크에 제출해야 함(시군보조사업 : 총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 공기관대행사업 : 자부담 없음)

● 지원절차



● 지원내용

단위사업	내 용	지원금액(천원)	지역	신청·접수
R&D기술개발	· 뿌리기업 연구개발 과제(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20,000	안산	해당 시군 (시군보조)
품질인증획득	· 국내·외 원청업체 요구로 인한 IATF 16949, ISO 45001, KS인증 등 안전 및 품질인증 획득 지원	10,000	시흥	
시험분석인증	· 제품 성능 신뢰도 및 품질관리 확인을 위한 시험인증 비용 지원	5,000	김포	
유해물질 대응지원	· 「화학물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전예방진단 및 주요 시설 개선비 지원	10,000	화성	
기업애로지원	· 경영,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투자전략, 시장조사, 애로기술, 생산관리, 재무회계 등 경영전반 컨설팅	10,000	전체 시군	경기 테크노 파크 (공기관 대행)
전시회 참가	· 국내외 부품소재 및 자동차 등 산업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뿌리산업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온라인 포함)	3,000		
정부R&D 과제지원	· 뿌리산업 정부 R&D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기획 컨설팅	3,000		
전문인력 교육	· 신사업 발굴, 신규대응기술(스마트, 3D 등 분석기술) 등 뿌리기업 수요에 맞춘 과정개설	별도 공지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경성	031-8030-3032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연구원	정은진	031-500-3071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고 글로벌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내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합작 투자유치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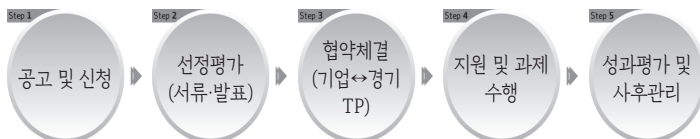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사업장(본사포함)이 도내 중소/중견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업
※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추천서, MOU, 구매계약 등을 체결한 도내기업
-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센서, 4차산업(5G, AI, IoT, 로봇 등), 바이오·제약 분야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처: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tp.or.kr 및 이지비즈 www.egbiz.or.kr 에 공고(1월 말 공고 예정)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부품개발, 시제품제작,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 등 국산화 개발 소요비용
- (부품개발·시제품제작)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 ※ 자부담 20% 이상
- (투자유치 컨설팅) 해외 투자유치 IR자료 작성 및 해외 기업설명회 참가 지원
- 피칭데이
- 도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기업/대기업의 구매담당자 대상 피칭데이 행사 추진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주무관	이수정	031-8008-2774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대리	정대호	031-500-3022

● 사업목적

- 경기러시아 기술협력센터를 통한 경기도-러시아 기업 매칭, 러시아 원천 기술 상용화 협력 및 비즈니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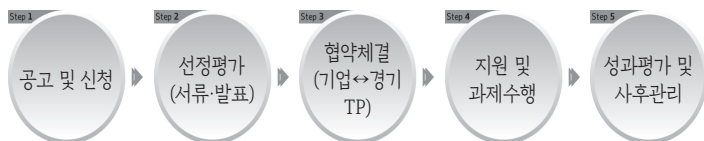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러시아 기업과 협업 중인 도내 중소/중견 제조 및 SW기업
- 도내 자동차, 신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4차 산업 분야 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처: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tp.or.kr,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 홈페이지 www.grtp.or.kr, 이지비즈 www.egbiz.or.kr 에 공고(1월 말 공고 예정)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러시아 혁신기술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도내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 혁신 기술의 상용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부품개발·시제품제작)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 ※ 자부담 20% 이상
- 러시아 혁신기술과제 발굴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3백만원)
 - (기술발굴형) 러시아 기술 발굴, 기업매칭, 마케팅 등 컨설팅
 - (과제지원형) 정부 R&D 사업 신청 및 계획서 작성 컨설팅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주무관	조은숙	031-8008-2774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연구원	강휘호	031-400-3731

13 I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 지역별 산업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전략(특화)산업 육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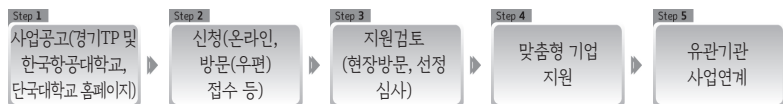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경기북서부 :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 경기남동부 :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방법

- 경기TP(www.gtp.or.kr) 및 한국항공대학교(<http://research.kau.ac.kr>, 북서부), 단국대학교(www.dankook.ac.kr 내 공지사항, 남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접수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맞춤형 기업현장 컨설팅 지원 : 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영재무관리, 인사/노무, 지적권 확보, 분쟁, 판로개척, 기술동향분석, 정부정책자금 및 과제 유치 전략 등 사업화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기업 자부담 없음)
- 지역전략(특화)산업 육성 지원 : 지역전략산업 종사기업에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을 지원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기업 자부담 30%)
- 지역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지역별 전략산업 발굴 지원 :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 시·군별 전략산업 발굴
- 기업 R&D 역량강화 교육 : 정부과제 제안서 작성 교육, 시장조사 방법 등 기업 R&D 능력 제고를 위한 실무 중심 교육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주무관	이성숙	031-8008-4616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책임연구원	이상영	031-500-3088
한국항공대학교	북서부지역사업단	연구원	박창현	02-300-0402
단국대학교	남동부지역사업단	연구원	박재천	031-8005-2269

14 드론산업 육성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내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업 경쟁력 향상과 문화의 확대발전

● 지원대상

- 도내 드론관련 중소기업 등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를 통한 모집공고 및 신청 (3월공고예정)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드론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 8개사
 - 총 사업비의 70% 이내, 기업 당 최대 1억 원 범위 내 차등지원, 기업부담금 30% 이상

지원분야		지원 세부내용
1	금형, 목업, 프레임 제작	- 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제품 컨셉 디자인, 금형설계 등 전반적 디자인/설계 포함 - 금형의 경우 외주가공 및 시작금형까지 편성이 가능하며 생산금형 불가
2	FC 제작 및 설계	- PCB 설계 및 제작비용 등 FC제작
3	SW 및 서비스 개발	- 드론 운용 SW개발 및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기반 기술개발 - 인건비 현금 편성가능(모든 조건 부합 시) · 조건 1 : 참여 연구인력은 협약기간 동안 지원기업에 상주, 4대 보험에 가입 · 조건 2 : 자체 급여기준에 따라 인건비 집행 (계획서 제출 시 월급대장 또는 월급명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조건 3 :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에서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비, 임차비 등 자산계정으로 편입 가능한 것은 편성할 수 없으며 무인항공기 SW 및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세목에 한해 인건비 편성가능

- 드론 실증도시 시범운영 : 1개사 (도심 내 드론활용 사업 운영방안 및 수행방안 제시)
- 공공 응급의료 분야 드론 앰블런스 도입을 위한 연구 추진 : 1개사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최지선	031-8008-5337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선임연구원	김소현	031-500-3019

15 가구 융복합 디자인 지원

● 사업목적

- 도내 가구 중소기업 대상으로 차별화된 제품 디자인 지원을 통해 제품 경쟁력 및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여 도내 가구 제조 기업 육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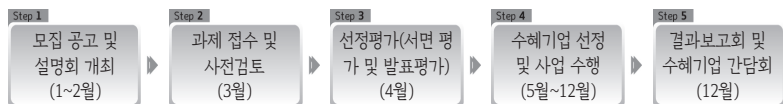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가구제조 중소기업
- 신청 자격 : 경기도 내 본사 혹은 공장이 위치한 가구제조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신청자료 이메일 제출
 - * 관련 공고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dtp.or.kr) 사업공고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사업 공고 게시 예정 유관 기관
 - * 경기도가구산업온라인플랫폼
 - * K-스타트업
 - * 중소벤처기업부-기업마당 등
- 접수기간 : 1월~2월경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신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기업과 디자인 전문 기관(대학, 기업) 연계를 통한 가구 디자인 신제품 개발 지원
 - * 신제품 디자인 개발 및 제품화를 통한 사업화 추구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신형섭	031-8030-2726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디자인융합본부	팀장	함영주	031-539-5057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디자인융합본부	대리	이준기	031-539-5056



● 사업목적

- 미래 글로벌 섬유시장을 주도할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신시장 창출 도모 및 경기도 섬유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섬유기업

-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기술을 보급하여 미래 글로벌 섬유시장을 주도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파일롯플랜트동 2층

● 기관별 역할

- (생기원) 전자섬유 부품·소재 및 설계기술 생산시스템 개발, 생산형 장비구축,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 (성균관대) 원천소재 개발(전자 섬유회로 센서, 전도성 원사 개발 등)
- (기업) 전자섬유 소재를 이용한 시작품 개발(제품개발 추진 협의체, 12개그룹)

● 지원내용

- (스마트웨어 분야) 체온조절, 생체신호, 위치인식 등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제품 원천 및 응용 기술개발
- (헬스케어 분야) 스마트 붕대, 욕창 방지 섬유소재 등 밴디지스마트 텍스트로닉스 제품생산 시스템 및 IOT 기술개발
- (홈인테리어/가구 분야) 스마트 의자, 침대, 커튼 등 생활 편의용 제품 소재 개발

● 문의처

기 관 명	부 서 명	직위(급)	성 명	전 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한동준	031-8030-272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소	센터장	임대영	031-8040-6231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기업지원제도

03

바이오 기술 지원

01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지원	282
02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283
03	비임상 유효성 평가 및 전문 연구기술 지원	284
04	초고속대용량 기능성소재 발굴지원사업	285
05	기능성 천연물 유래 제품 전문 연구기술 지원	286
06	경기뷰티소재은행 구축사업	287

01 I 경기도 바이오기업 R&DB 지원

● 사업목적

- 바이오·제약분야 제품 개발 전주기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원천기술개발 비용 절감 및 효율 극대화 도모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바이오·제약 기업

● 신청방법

- 공고 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제출 (이메일 및 우편)
※ 경기도 (www.gg.go.kr) 및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문 게시 예정
- 신청시기: 4~5월경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애로기술 실증연구
 -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바이오제품개발 지원 : 소재시험법 개발, 성분검증, 기능성소재 선정 지원
- 수요기술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 유효물질 발굴→비임상평가·인허가→제품화 중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계 지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주무관	김란	031-8008-46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재개발팀	팀장	최용문	031-888-6987

02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 사업목적

- 수입 의존률이 높은 품목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 국산화 대체 가능 품목 확보
- 신기술 융합 및 체외진단기기 품목 확보를 통한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 선진화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32개사 내외
- 신청자격 : 도내 의료기기 산업 관련 중소기업
 - * 시장진입형 : 사업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창업기업)
 - * 시장정착형 : 상기 창업기업 기준 외의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시행공고 후 과제신청서 및 계획서, 기타제반서류 전자메일 제출
※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문 게시 예정
- 신청시기 : 3월경

● 지원절차



● 지원내용

구분	지원분야	지원규모(기업당지원금, 기업수)	
시장진입형	· 시제품개발	30,000천원	4개사내외
	· (전)임상시험	16,000천원	3개사내외
	· 인허가시험분석	13,000천원	3개사내외
시장정착형	· 첨단기술전주기	59,000천원	2개사내외
	· 체외진단전주기	59,000천원	2개사내외
	· 시제품개발	30,000천원	6개사내외
	· (전)임상시험	16,000천원	5개사내외
	· 인허가시험분석	13,000천원	5개사내외
	· 사용적합성시험	12,000천원	2개사내외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연구지원팀	주무관	김 란	031-8008-46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기획팀	선임연구원	홍영주	031-888-6118

03 비임상 유효성 평가 및 전문 연구기술 지원

● 사업목적

- 신약후보물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세포 또는 동물의 유효성을 평가하여 바이오-제약분야 제품개발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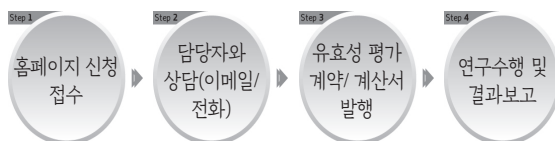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경기도 식·의약 제품 개발 기업 및 연구기관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gbsa.or.kr>),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비임상 유효성 평가를 위한 실험 설계 및 자문
- 유효성평가 서비스 지원(유료) : 11대 질환 6대 생리활성* 분야
 - * 11대 질환 : 항암, 당뇨, 간기능부전, 관절염, 항염, 비만, 알러지, 아토피, 루푸스, 당뇨병성망막증, 비알콜성지방간염
 - 6대 생리활성 : 피로회복, 면역증강, 숙취해소, 항산화, 항노화(주름개선), 미백
- 혈구·혈액생화학분석, in vivo imaging system, 동물용 m-CT 등 활용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주무관	김란	031-8008-46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효능평가팀	팀장	이재연	031-888-6163

04 초고속대용량 기능성소재 발굴지원사업

● 사업목적

- 바이오센터에 구축된 소재은행과 첨단 검색시스템 및 타겟별 시험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축·운영하여 도내 바이오·식약 기업(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바이오 기능성 소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소재검색을 통하여 유효물질을 발굴하고자 하는 산·학·연 기관
- 경기도 중소 바이오·식약 관련 기업(수수료 10% 감면)

● 신청방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bsa.or.kr>) 담당자 전화상담(031-888-6980~2)
- 소재검색조건 및 초고속대용량검색(HTS)* 실험 가능여부 협의 후 진행
* 초고속대용량검색(HTS) : 다량의 소재를 한 번에 빠르고 정확하게 활성을 확인하는 실험법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 32만개 화합물은행 (합성화합물, 천연물 추출물 등) 활용 지원
- 기업 관심분야/보유 소재의 기능성소재 발굴을 위한 초고속대용량검색 지원
- 신규 검색계 구축 상담 및 소재검색 기술 자문
※ 홈페이지 상담 [바이오센터 >> 초고속약효검색지원] 항목 참조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주무관	김란	031-8008-46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재개발팀	선임연구원	양정은	031-888-6982

● 사업목적

- 경기도 제약·식품·향장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R&D 촉진을 위해 특화된 시험분야의 전문 연구기술을 지원
- 기능성 천연물 소재의 구조 분석, 추출물 제조, 유효성분 탐색 및 분리·정제 등을 제공
-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공동연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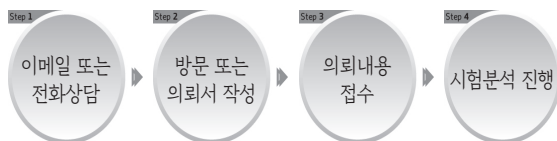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천연물 유래 식의약·향장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 지원범위 : 천연물 추출물 및 분획물 제조, 분석, 분리정제 및 구조분석 등의 천연물 연구 서비스

● 신청방법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bsa.or.kr>), 담당자 이메일(ws2009@gbsa.or.kr) 또는 전화상담 (상담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상시 접수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위탁연구·공동연구 (협의사항)
 - 기능성 천연물 소재의 지표/활성 성분규명 및 함량분석 연구
 - 기능성 천연물 소재의 최적 추출물 제조
 - 자체 천연물소재 라이브러리 활용 공동연구 (현물 및 연구비 분담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 위탁연구의 경우 위탁연구비 발생(유료)
 - 애로기술 지도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과학기술과	주무관	김란	031-8008-463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천연물연구팀	책임연구원	정원식	031-888-6148

06 I 경기도 뷰티소재은행 구축사업

● 사업목적

- 도내 지역 부존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원료 확보 및 추출물 분양, 성분규명, 기능성 평가 등의 뷰티 소재(원료) 전문DB 제공

● 지원대상

- 화장품 추출물 수요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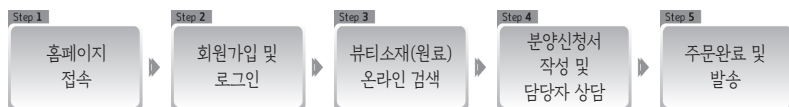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g-beauty.or.kr)를 통한 분양신청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지원내용

- 기업수요 뷰티 소재(원료)탐색, 발굴, 시험평가 및 수요별 추출물 분양
 - 경기도 소재 기업 : 분양단가(10mg 기준) 3,000원(부가세 별도)
 - 타시도 소재 기업 : 분양단가(10mg 기준) 4,000원(부가세 별도)
- 지역특화 및 기업수요 생물자원의 성분 및 기능성 정보제공
- 분양소재에 대한 전문정보(논문, 특허, 식용가능 및 화장품원료등재여부 등) 제공

● 선정(지원)절차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박주하	031-8008-534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재개발팀	책임연구원	김진규	031-888-6130

04

사업화 지원

0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290
02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291
03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292
04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293
05	경기도 우수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	294
06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295
07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296
08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297
09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	298
10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299
11	민·관 협력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사업	300
12	게임오디션 개최	301
13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육성	302
14	가구인증 사업 지원	303
15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304
16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305
17	섬유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306
18	원단 및 의류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307
19	반려동물용품 산업 육성	308
20	제조-서비스업 융복합사업 육성지원	309
21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	310
22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311
23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지원	312
24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	313

0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신지식·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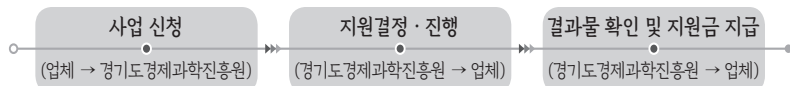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수원시 등 27개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 ※ 제외 시군 :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지원절차



● 지원내용

창업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 국내·외 규격인증 · 산업기술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금형, 목업) 개발 · 시험·분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제작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 국내 홍보·판로 · 모바일 앱 제작 · 제품포장개선 · 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 문의처

기관명	권역별	관할지역	성명	전화
경기도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본사 (9)	총괄	박준서	031-8030-3033
		광주, 군포, 의왕, 여주, 하남, 양평, 오산, 화성	정기호	031-259-6059
	북부 (10)	수원	박준식	031-259-6276
		양주, 남양주	조용택	031-850-7123
		고양, 동두천, 연천, 포천	양이나	031-850-7124
	서부 (4)	가평, 구리, 의정부, 파주	임선빈	031-850-7128
		시흥, 광명	김장식	070-7116-4811
		부천	구현애	070-7116-4814
		김포	김남수	070-7116-4816
	남부 (4)	용인	한미연	070-7726-9322
		평택	이연희	031-651-7162
		안성, 이천	양미소	070-7726-9323

02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사업목적

- 소비자의 구매동기에 제품의 디자인이 비중이 높아지는 트렌드에 맞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으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실현 및 기업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수원시 등 23개 참여 시·군 소재 중소기업

**참여
시·군**

수원, 고양, 용인, 부천,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파주,
김포,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의왕, 양평, 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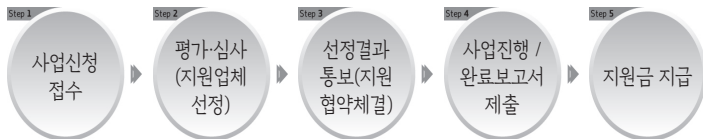
**제외
시·군**

성남, 안산, 안양, 의정부,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 (상세일정 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업로드

● 지원절차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한도	규모(개사)	기업 자부담
디자인 사전진단	디자인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1:1 디자인 사전진단	15만원	100	-
디자인 개발	디자인 전문 인력을 활용 제품 및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시각·포장)700만원 (제품)1,400만원	145	30% 이상
디자인 챌린저스	디자인전문회사 및 디자인혁신성장멘토단의 협력관계를 통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지원	기업당 디자인개발비 2,000만원이내 지원	3	-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김소영	031-8030-30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과장	양인영	031-259-649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대리	박정은	031-259-6492

03 I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

● 지원대상

- 지정규모 : 40개사
- 신청자격 : 도내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 20억 이상)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

유형	자격조건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and 선택조건 (①~④ 중 1개 이상 충족)	<p>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③ 직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p> <p>①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④ 직전년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p> <p>*지식서비스기업: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 '지식서비스업' 중 해당 기업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p>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요건은 완화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 공고문 참조

- 지원제외 : '11~'20 스타기업 육성사업,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공고문 www.egbiz.or.kr에 공지)
- 접수기간 : 1월 예정 (상세일정 www.egbiz.or.kr에 공지)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기업당 38백만원 이내 지원(총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 ※ 성당, 화성, 용인, 시흥, 평택, 이천, 김포, 군포, 여주시 기업은 76백만원 이내
- 세부 지원내용
 - 제품혁신 5개 분야(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기술사업화)
 - 시장개척 2개 분야(홍보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지선	031-8030-304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팀	과장	전유리	031-259-649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팀	대리	한영수	031-259-6493

04 I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지정규모 : 50개사 내외(전국 200개사 내외) ※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 신청자격 : 직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원 (혁신형 기업 50억 이상)
& 직간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혁신형기업 100만불 이상)
-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 인증 기업
- * 지원제외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 홈페이지에(www.exportcenter.go.kr) 신청서와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
- 접수기간 : 1월 中 예정 (상세일정 www.egbiz.or.kr에 공지)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 정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산학연콜라보)
-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기업 당 15백만원 내)
 - 시제품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디자인 개발, 홍보판로개척, R&D 기획 컨설팅, 직원역량 강화 교육
-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지선	031-8030-304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전문위원	정상철	031-201-694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과장	전유리	031-259-649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대리	한영수	031-259-6493

● 사업목적

- 도내 우수중소기업의 증시상장 지원을 통해 활발한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내외 우량기업으로 성장 토대 마련

● 지원대상

- 증시상장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 신청방법

- 홈페이지(道, 이지비즈 등) 공고 시 온라인 접수
- 신청시기 : 3~4월경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향후 2년 이내 상장(코스닥, 코넥스) 계획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 상장절차 및 준비사항, 요건 검증 등을 컨설팅
- (상장비용 지원) 상장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또는 향후 1년 내 상장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 상장비용 20,000천원 지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배경효	031-8030-304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과장	우창기	031-259-6112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융합과제를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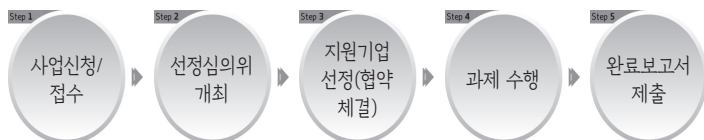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공고문 www.egbiz.or.kr에 공지)
- 신청시기 : 3~4월경

● 선정(지원)절차



● 지원내용

- 과제사업화 지원 : 융합과제에 대해 산·학 공동 또는 기업 간 사업화비용 지원
 - 융합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75% 이내 지원 (기업당 융합과제 25백만원 이내/ 자부담금 25%이상)
 - 융합 BM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기자재 및 시설비(임차-사용 경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지적 재산보호비)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김소영	031-8030-30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대리	이빛나	031-259-6479

07 I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 사업목적

- 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와 여건에 맞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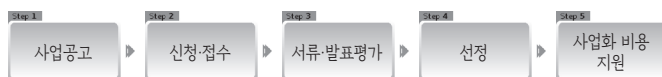
유형	자격조건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①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 소부장의 개발 제조 매출이 50% 이상 ③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기업
선 and 1 (①~③ 중 1개 이상 충족)	①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 직전년도 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2% 이상 ③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

- 지원제외 :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 스타기업 지정기업 등

● 신청방법

- 홈페이지(pms.gbsa.or.kr) 신청양식 작성 및 업로드
- 접수기간 : 2월 예정 (상세일정 pms.gbsa.or.kr에 공지)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기술·공정혁신(기술보안, 스마트화), 제품혁신(시제품개발, 지식재산권, 인증 등), 판로개척(홍보, 전시회 등)
- 선정된 기업에 필요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 (총 사업비의 80% 이내, 기업당 최대 75백만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신준섭	031-8030-301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과장	손충현	031-776-4855

08 I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 사업목적

-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성화 및 도내 혁신·융합 산업 육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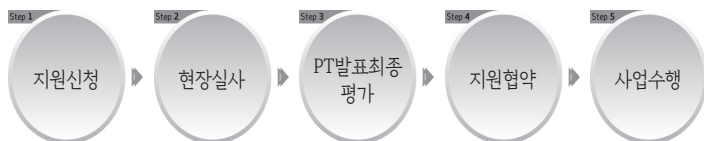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중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산업융합, ICT, 금융규제)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방문, 온라인 접수 : 상시
※ 신청서는 이지비스(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실증특례 승인기업
 - 최대 실증비용(100백만원), 책임보험료(10백만원) 초기실증컨설팅 및 사업화(5백만원)지원
 - 실증비용 및 책임보험료 총 사업비의 최대 50% 지원
- 임시허가 승인기업
 - 책임보험료 최대 10백만원 지원
 -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규제개혁담당관	주무관	박주은	031-8008-428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대리	박준식	031-259-6276

09 I 우수여성기업 선정 및 홍보 지원

● 사업목적

- 여성기업의 혁신성장 독려 및 시장을 통한 자긍심 고취, 홍보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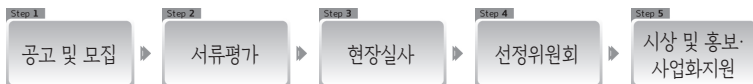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선정규모 : 5개사
- 신청자격 : 도내 소재 여성기업 중 업력 3년 이상인 기업
- 지원제외 : 우수여성기업에 기 선정되어 수상이력이 있는 기업 등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공적 조서 송부
- 접수기간 : 4월 예정(연 1회 모집)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선정기업에 상장 및 상패 수여
- 선정기업 인센티브 지원
 - 기업 당 최대 800만원 (부가세 제외 총 금액의 80% 한도 지원)

구분	단위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홍보·판로	홍보기반구축	홈페이지 / 카탈로그 / 홍보동영상 / 제품사진 촬영	최대 800 만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국내전시회박람회 참가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사업화	디자인 상품화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시각디자인	
	제품생산지원	워킹목업 / 금형	
홍보	선정기업 전원을 대상으로 언론, 미디어 매체 홍보 지원(기업부담금 없음)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김소영	031-8030-30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대리	백서현	031-259-6115

10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

● 사업목적

- 여성기업이 필요로 하는 마케팅, 사업화에 대한 맞춤형 지원

● 지원대상

- 선정규모 : 24개사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여성기업(본사 또는 공장 경기도 소재) 중 업력 2년 이상인 기업
- 지원제외 : 과거 동일사업의 지원 수혜이력이 있는 기업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사이트를 통한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2월 예정(연 1회 모집)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800만원 지원(지원금 80%, 기업부담 20%)

분야	단위사업
마케팅	홍보기반구축(홈페이지,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 제품사진촬영 등)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SNS-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제품설계 지원, 제품생산 지원(워킹목업, 금형, 간이생산, 디자인상품화), 국내·외 규격인증, 해외특허권리화 지원, 전문가 컨설팅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김소영	031-8030-304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대리	백서현	031-259-6115



● 사업목적

-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및 교육지원을 통해 민관협력 대중소 기업 상생 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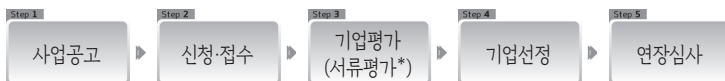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지정규모 : 520개사(지원예산 : 19억원(SK(주) C&C 현물 출자))
- 신청자격 : 도내 중소기업
 - * 사업등록증 상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기업
- 지원제외 : 과제의 내용이 법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저촉되는 경우 및 기지원 기업(중복지원) 일 경우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공고문 www.egbiz.or.kr에 공지)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 약약서, 사업아이템 소개서 및 회사소개서 등
- 접수기간 : 연중 모집 (상세일정 www.egbiz.or.kr에 공지)

● 지원절차



※ 사업계획의 현실성, 기업의 기술성, 기업 재무건전성 등 평가를 통한 기업 선발

● 지원내용

- SK(주)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Cloud Z 제공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IaaS, PaaS, SaaS) 및 MSP 사용료 월 30만원 ~ 300만원
- 세부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3,600만원 지원(360만원/1,200만원/2,400만원/3,600만원 중 택 1)
 - 연장심사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MSP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통해 지정 MSP와 별도 계약 체결로 사용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홍정은	031-8008-534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차산업진흥팀	차장	송승인	031-776-4821

12 I 게임오디션 개최

● 사업목적

- 공개 게임오디션을 통한 글로벌 예비 스타 게임을 발굴하고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게임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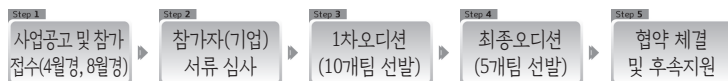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수도권(경기도, 서울, 인천) 소재지 게임 기획/개발이 가능한 기업·단체·개인 누구나
 - 참가신청일로부터 1년내 개발완료가 가능하며 빌드 제출이 가능한 단계의 게임 대상
 - *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개인/팀 : 대표자 소재지 기준, 학생팀의 경우 대표자 소재지 또는 소속학교 주소지 기준
- 연 2회 개최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최 기간 변경 및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운영 가능
 - 상반기(5월 예정) : 스피드데이팅 방식 운영, 개발/그래픽/투자/유통 플랫폼 분야별 심사위원단과 심층 면접
 - 하반기(9월 예정) : 글로벌위크와 연계 운영, 해외 전문심사위원과 일반인청중평가단 심사

● 신청방법

- 게임오디션 홈페이지(<http://audition.gcon.or.kr>) 온라인 접수
 - * 관련 공고문 경기글로벌게임센터(www.gnext.or.kr) 또는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사업공고 페이지 참조
- 접수기간 : 상반기 4월경, 하반기 8월경

● 지원절차



● 지원내용

최종오디션 선발 5개팀	후속지원 - 1차오디션 선발 10개팀
· 개발지원금 지원 : 총 1억 5천만원 ※ 1등(1팀) 5천만원, 2등(2팀) 각 3천만원, 3등(2팀) 각 2천만원 · 입주공간 신청시 가점 부여 : 경기글로벌게임센터(2층, 6층), 스타트업캠퍼스 8층	· 상용화지원(QA, 번역, 마케팅 등) · 홍보지원(홍보물, 바이럴 등) · 글로벌시장진출지원(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등) · 법률, 세무 컨설팅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주미애	031-8008-5343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	매니저	정보람	031-776-4783

13 가상·증강현실(VR/AR) 기업육성

● 사업목적

- VR/AR 분야 스타트업 전략적 육성을 통해 후속투자 및 해외진출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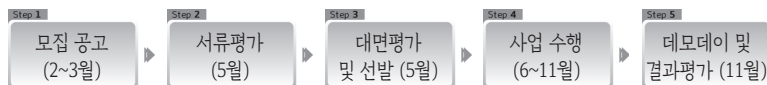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27개사 내외 (NRP* 6기)
 - * NRP(New Reality Partners) : 경기도 VR/AR 기업육성 프로그램(www.nrp-demoday.or.kr)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VR/AR 관련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 *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 必
 - * (스타트업)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법인/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 * (경기도 외 스타트업) 최종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 내 본사사업자 등록 必
- 지원분야 : VR/AR/MR 기반의 콘텐츠/플랫폼/서비스/하드웨어 등 신규 프로젝트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및 관련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
 - * 관련 공고문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 사업공고 페이지 참조
- 접수기간 : 2~3월경

● 지원절차



※ 대면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개발지원금)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육성 프로그램) 글로벌 민관협력체(64개 기관) 기반한 기술세미나/기업교류/멘토링 등 지원
- (공간/장비 지원) 사무용 입주공간 신청시 가산점 지원(수원 광고),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
- (후속투자 지원) 투자설명회 개최 및 국내외 VC 파트너사와 투자연계 지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주무관	이소현	031-8008-5327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	매니저	이상원	031-8064-1719

● 사업목적

-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가구 품질규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도내 중소 가구기업에 대한 품질·가격경쟁력 극복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가구기업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gfcc.or.kr)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도내 가구기업 가구인증 검사수수료 할인 지원
 - (역학시험)
 - 가구제품 안정성, 강도 및 내구성 시험
 - 파티클 보드, 섬유판, 책상, 수납가구, 의자 등 검사 78항목
 - (화학시험)
 - 환경유해물질 방출량 시험
 -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등 검사 3항목
 - 어린이용 가구 시험 인증 지원 15항목
- 가구제품 개발품 및 인증마크 획득 컨설팅 지원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정길훈	031-8030-2725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가구인증센터	팀장	김용국	031-539-5085

15 I 가구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지원

● 사업목적

- 도내 가구기업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중견·강소 가구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 신청시기 : 3월~4월경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가구제조기업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등 소용비용의 70%이내 지원
- 최대 2,000만원 한도

지원분야	세부지원사업
사업화	① 금형 또는 워킹목업 제작
마케팅	② 카탈로그 제작, 홍보동영상 제작, 가구전문지 광고(월간지·신문), 방송광고(TV·라디오), 포털사이트 광고
	③ 온라인쇼핑몰 구축, 홈페이지 제작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신형섭	031-8030-272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권역센터	차장	이현주	031-850-7125



● 사업목적

- 국내외 환경규제 및 유해물질 규제에 대응, 도내 섬유기업 KC인증 시험분석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섬유기업

● 신청방법

- 전화,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사업자등록증, 시험분석의뢰서 제출)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도내 섬유기업 유해물질 시험분석 비용 60~80% 지원(소상공인 : 80%, 중소기업 60% 차 등지원)
- 유해물질 검출 시, 해결방안 제시
- 유해물질 관련 세미나, 교육·홍보 진행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경아	031-8030-2724

● 사업목적

-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섬유기업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전화로 상담·접수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도내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150건, 해당 신소재 활용 시제품 제작 지원 150건
- 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비용 55~70% 지원(기업 자부담 30~45%)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경아	031-8030-2724

18 I 원단 및 의류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섬유소재 생산 중심에서 디자인 접목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 지원대상

- 경기도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섬유(원단, 피혁) 및 봉제 기업
 - ※ 국내 생산제품만 지원가능하며 국외 생산 제품은 제한함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gtc-world.or.kr) 확인 후 신청서 우편 및 방문 제출

● 지원절차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 세부내용	비고
의류 디자인	· 남성용, 여성용, 아동용 등 의복디자인	의류 샘플제작
텍스타일 디자인	· 원단 프린트 디자인 · 홈퍼니싱(커튼, 벽지, 러그) · 캐릭터 디자인	샘플용 시제품 제작지원
웹디자인실 운영	· 인터넷상 가상 디자인 매칭 프로그램	회원가입
디자인 트렌드 제공	· 국내·외 패턴 및 의류디자인 이슈, 트렌드 등 정기 제공	
상설 쇼룸 운영	· 개발된 디자인 샘플 전시(섬유센터 내)	

※ 기업당 지원한도 150만원 내외(자부담 10% 별도)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	주무관	이경아	031-8030-2724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특화산업팀	대리	고기열	031-850-3633



● 사업목적

-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반려동물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연계 지원으로 수입 대체 효과 및 일자리 창출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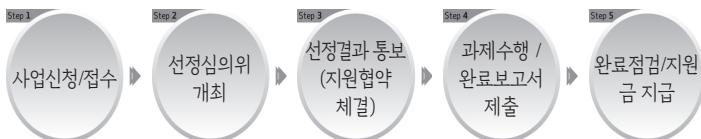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경기도내 반려동물용품 관련 중소기업
 - 관련분야 : 식품/사료, 반려동물패션, 헬스/케어용품, 미용도구, 액세서리, 동물약품 등

● 신청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서식 다운로드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추진절차



● 지원내용

- 상용화로 조기 시장진입위한 시제품제작 지원(70%이내, 최대 1,500만원 한도)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 70% 이내(국내전시회 최대 200만원 한도, 해외전시회 최대 500만원 한도)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동물보호과	주무관	김종선	031-8030-441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팀장	이정희	031-259-648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과장	박효선	031-259-6489

● 사업목적

- 우수한 '제조-서비스업' 융복합 사업화 모델을 발굴·지원하여, 도내 제조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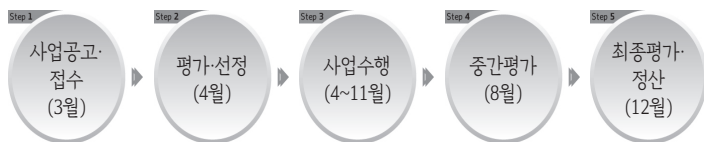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7개사(과제 선정 순위(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자격 : 도내 서비스업 기반 중소기업 단독 혹은 컨소시엄(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구성)

● 신청방법

-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업로드(이메일 제출)
* 관련 공고문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사업공고 참조
- 접수기간 : 3월 예정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을 통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기존 제품에 서비스 요소를 융합하거나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제품을 부가 또는 관련제품을 출시, 노하우 및 기술을 서비스화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부터 서비스의 연구개발, 시험분석 및 인증을 통한 사업화 등에 이용되는 자금 중심으로 지원(총 과제수행비 중 민간부담 20% 이상)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일자리경제정책과	주무관	유수운	031-8030-2817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연구원	장민제	031-500-3040

21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

● 사업목적

- 협동조합 간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향상 및 자생력 제고로 시너지효과 창출 등 공유 경제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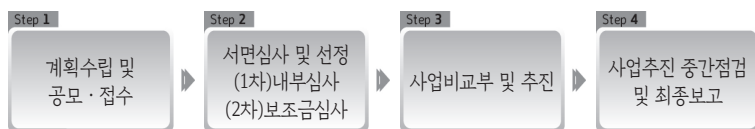
●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상 설립·등록 완료한 도내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및 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

● 신청방법

- 도 홈페이지(www.gg.go.kr) 모집공고 시 제반서류 작성 후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공유·협업분야별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당 35백만원 이내(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지원분야	세부내용
공유개발 (브랜드, R&D)	· 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 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 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 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 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 유통·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공유네트워크	·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김민아	031-8008-3593

22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 사업목적

- 산업단지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유가치의 확산을 통해 상생·협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경기도 소재)
 -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의체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후 이메일 접수
- 신청시기 : 3월~4월 예정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지역 산단별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희망 사업 지원
 - 공유 가능한 시설 및 물품 공동 임차, 공유 플랫폼 구축, 공동마케팅 등
- 사업화 지원금 지원 : 아이템 개발비 및 홍보·마케팅 등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전도담	031-8008-359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팀장	최원학	031-8039-6440

● 사업목적

- 협동조합의 프랜차이즈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실현 등 규모화를 통한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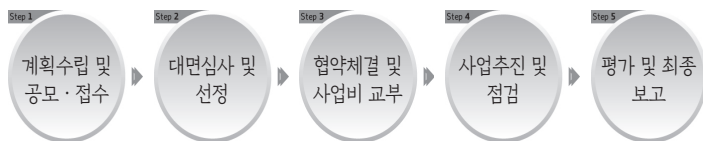
● 지원대상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 중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적합기업군

● 신청방법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홈페이지(www.gsec.or.kr)를 통한 참여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기반구축 지원
 - 전문인력 : 기업별 사업추진 담당자 1명
 - 사업모델 및 브랜드 개발,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등 컨설팅
 - 통합홍보 : 마케팅 활용교육, 영상물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가맹점 모집 사업설명회 등
 -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 가맹본부·가맹점 대상 프랜차이즈 전문교육 및 협동조합 기본 이해교육
 - ※ 평가지표에 의한 사업추진 평가 후 연장지원여부 결정(최대 3년)
-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예비기업 발굴
 -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이 적합한 아이템 및 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인큐베이팅 컨설팅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주무관	김민아	031-8008-3593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특화지원파트	파트장	김병주	032-668-8649

24 I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 사업화 지원

● 사업목적

- 우수한 업사이클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업사이클* 생태계를 이끌어 나갈 선도기업 육성

* 업사이클(Upcycle) :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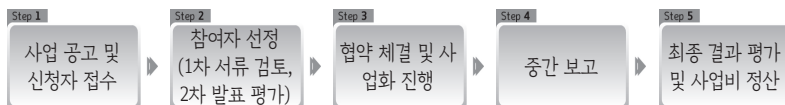
- 지정규모 : 4개사
- 신청자격

유형	자격조건
필수 자격	① 경기도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기술을 보유한 기업 ② 기술성숙도(TRL) 5~9단계 이상의 업사이클 제품·기술을 보유하여야 함 ③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www.ggupcycle.or.kr, www.egbiz.or.kr 등에 공지)
- 접수기간 : 3월 예정 (상세 일정은 공고문에 공지)

●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지급(공간 임대비용,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시험분석·인증 비용, 시제품 제작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재료 구입 비용 등)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직위(급)	성명	전화
경기도청	자원순환과	주무관	김수형	031-8008-425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센터장	지운근	031-299-79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사이클사업팀	대리	오슬기	031-299-7907

2021 한 권으로 통(通)하는 기업지원제도

발행일

2021년 5월

발행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지역협력과

☎ 031-230-7672

홈페이지

www.moel.go.kr/local/gyeonggi/index.do

인쇄처

정원기획

☎ 02-2285-4630
